

월간

재정포럼

2017. September_Vol.255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9

권두칼럼

재정혁신과 개념설계 | 하연섭

현안분석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관한 소고 | 최성은

경기 변동 주기상 제조업체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 | 우진희

특집

2018년 예산안 편성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의 시행 연기 외

CONTENTS

권두칼럼

재정혁신과 개념설계 · 하연섭 02

현안분석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관한 소고 · 최성은 06

경기 변동 주기상 제조업체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 · 우진희 26

특집 · 2018년 예산안 편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2018년도 예산안
· 최한경 58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한중석 63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의 시행
연기 외 78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세미나 & 정책 및 연구 99

정책흐름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104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116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120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본격 추진 122



재정혁신과 개념설계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정부 들어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른바 ‘핀셋 증세’라는 이름으로 일부 납세자에 대해 증세가 시도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도의 증세만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보편적인 증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보편적인 증세로 방향을 전환하건 그렇지 않건 신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높은 ‘정부 역량’과 ‘정부의 질’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의 높은 국정 지지도는 앞으로의 기대에 기초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지지는 성과에 기초한 지지로 바뀌게 된다. 이때 정교한 설계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 낭비가 없는 행정, 주어진 예산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가시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출구조 조정’과 ‘재정혁신’이다.

정부는 ‘지출구조 조정’과 ‘재정혁신’으로 국민 신뢰 끌어내야

지출구조 조정 및 재정혁신과 관련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의 4대 재정개혁의 모델이 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스웨덴은 흔히 우파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형 정부개혁을 좌파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독특한 국가이다. 스웨덴에서 좌파정부가 강력하게 정부개혁을 추진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군살을 빼고 낭비를 없애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고비용 · 고복지’라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재정개혁 혹은 재정혁신이 거의 모든 정부의 화두였지만,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재정혁신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념설계 역량의 부족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즉, 우리 정부는 재정혁신을 추구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틀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의 효율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정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운영적 성공과 전략적 성공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운영적 성공(operational success)이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doing the project right)'을 의미하는 반면, 전략적 성공(strategic success)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doing the right project)'을 의미한다. 효율성의 개념과 연관시키면, 운영적 성공은 기술적 효율성 혹은 운영적 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이며, 전략적 성공은 배분적 효율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사업이 전략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 준비단계가 철저해야 하며 국가적 우선순위와 사업을 연결시키고 특정 사업과 다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설계 역량이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운영적 성공은 관리이슈로서, 사업의 집행단계와 관련 있는 개념이다.

예산제약 상황에서 개념설계 역량 향상의 필요성

앞으로 예산제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집행 방식의 변화, 개별 사업들에 대한 순차적인 심의,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의 관행적인 재정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 다부처 사업(cross-cutting issues)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 다른 사업과의 정합성과 충돌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식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개념설계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념'이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의 제시를 의미한다. 즉,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근거(rationale)에 초점을 맞추어 쟁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이 조급하게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도출과 사업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검토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곧 재정 거버넌스가 개방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
운영적 성공이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전략적 성공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제는 기존의
미시적 재정부운용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개념설계는 재정제도의 혁신에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부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도, 재정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등 다양한 재정제도들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들 간 상호연계성이나 정합성이 기대한 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op-down 예산제도의 핵심은 사전적으로 지출한도(ceiling)를 정하는 일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예산심의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이러한 지출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때 모델로 삼았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top-down 예산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출한도가 국가재정부운용계획에서 미리 설정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상태이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시적 수준에서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부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적 우선순위가 놓인 사업에 대한 주기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하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d-Brain도 기존의 거래처리시스템(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으로부터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결정 도구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재정부운용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서 진행된 일련의 재정개혁을 통해 우리의 재정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미시적 재정부운용에서 벗어나 전략적 자원배분으로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재정부운용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정부의 개념설계 역량이 대폭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관한 소고
최성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기 변동 주기상 제조업체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
우진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관한 소고

I.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choi@kipf.re.kr)

2003년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전자담배는 제품의 빠른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후반부터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나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입량과 판매량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궐련담배와 유사하지만 연소과정이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되기 시작하여 전자담배 시장의 변화기를 맞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에 비하여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타르 등의 성분, 냄새, 간접흡연 피해가 적으며, 금연억제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고, 흡연자들이 궐련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청소년의 흡연시작에 대한 'gateway' 역할을 한다는 보고도 많다. 기화상태의 전자담배에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무색, 무향의 연기라 할지라도 간접흡연 효과가 전무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정의하고 조세정책과 담배규제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신종 담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제품의 성격과 유형이 궐련담배와 너무나도 상이한 전자담배에 대한 정책을 궐련담배정책의 틀 안에서 수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 전자담배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담배 관리정책과 조세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일련의 관리정책들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자담배 제품의 진화와 전자담배 시장의 변화

전자담배는 최근 10년 동안 상품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자담배를 둘러싼 시장환경들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1세대 전자담배는 용액을 카트리지 형태로 장착하여 쓰고 버리는 1회용 전자담배였으나, 최근까지 국내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리필 용기에 재충전하여 사용하는 2세대 충전식 전자담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무화량이나 연기 등을 조절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출력이 가능한 전자담배와 함께, 전자담배 제품은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패션을 가미한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궤련담배와 매우 유사하나 연소과정이 없는 궤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되어, 향후 전자담배 시장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담배는 액상 충전식의 경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궤련형 전자담배는 최근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가 글로(Glo)를, 필립모리스 코리아가 아이코스(IQOS)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해외 대형 담배회사들이 전자담배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전자담배 제품이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재팬 토바코(Japan Tobacco), 필립모리스, 임페리얼 토바코 그룹(영국) 등이 전자담배 시장에 진출한 대형회사들인데, 이들 회사의 전자담배 제품은 미국 전자담배 시장 점유율 1위인 BLU(카트리지형), 브랜드 로직의 브랜드 로직 파워시리트(카트리지형), NJOY 트레이디셔널 볼드의 'NJOY(카트리지형)'가 있다. 충전식 상품으로서 V2 社의 V2 PRO 시리즈 3과 인터내셔널 배이퍼그룹의 VaporFi 펄스가 있다. 궤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의 글로 상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궤련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KT&G가 궤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회용 전자담배 제품들이나 궤련형 전자담배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고, 전자담배에 다양한 향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어, 원하는 향을 골라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 카페가 생기는 등 전자담배 시장이 발달해 왔다. 제품에 따라서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와이파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전자담배도 출시되었다. 특히 궤련형 전자담배는 기존의 궤련담배를 끼워서 쓰지만 연소는 하지 않아 연기나 냄새, 타르 등의 배출이 없어, 궤련담배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애연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궤련담배

최근에는 궤련담배와 매우 유사하나 연소과정이 없는 궤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국내에서도 출시되어, 향후 전자담배 시장도 상당히 변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충전식 전자담배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니코틴
용액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용액과 기기가
따로 수입되고 있다.**

에 비해 무해하다는 인식하에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으며, 일본에서는 출시 1년 만에 담배시장 점유율의 6%를 차지할 정도로 궤련담배를 대체해 가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6월 아이코스가 출시되고, 지난 8월에는 BAT Korea의 글로가 출시되었다. 이렇듯 전자담배 시장과 제품이 빠르게 변화하고, 전자담배의 위생성과 안전성, 궤련담배와의 대체성 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관리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금연정책으로서의 전자담배 관리정책의 성격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전자담배 수입과 판매량의 증가

국내 전자담배는 액상형 충전식 전자담배가 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궤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충전식 액상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기기, 액상 니코틴, 희석제(프로필렌, 글리세린) 및 향료로 구성되어 있다. 충전식 전자담배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이 니코틴 용액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용액과 기기가 각각 수입되고 있다. 기기와 용액이 붙어서 수입되는 것은 전체 전자담배 기기 수입 중 8.6% 정도이다.

액상 전자담배 수입량은 2014년 하반기에 궤련담배 가격인상이 예고된 직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 폭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현재 충전식 전자담배는 대부분 니코틴 액상이 포함되지 않은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2015년 전자담배 수입을 보면, 90.2%가 액상용액이 포함되지 않았다(〈표 1〉). 그리고 같은 해 전자담배 액상 용액 수입의 67.5%가 니코틴 미포함 액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액상용액 또한 니코틴 원액과 별도로 수입된다고 할 수 있다(〈표 2〉). 이는 2015년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증가하면서, 니코틴 용액 부과당 부과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5년 전자담배 세금 인상 이전에는 대부분 니코틴을 포함하여 판매하였으나, 전자담배 세금 인상 이후 과세 회피를 위해 니코틴 용액과 니코틴이 포함되

지 않은 액상용액을 따로 판매하는 분리형 유통이 성행하게 되었다. 전자담배 액상용액 중 니코틴 불포함 용액의 수입량은 2012년 약 25%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체 액상용액 수입량의 약 86%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과세 회피를 위한 분리형 유통의 성행과 관련 깊다(〈표 2〉).

〈표 1〉 전자담배(용액 포함) 수입 현황

(단위: 톤, 천달러, %)

구분	중량			금액			
	합계	니코틴용액 장착	니코틴용액 미장착	합계	니코틴용액 장착	니코틴용액 미장착	
연도	2012년	13 (100.0)	0 (0.0)	13 (100.0)	1,007 (100.0)	3 (0.3)	1,004 (99.7)
	2013년	31 (100.0)	0 (0.0)	31 (100.0)	2,295 (100.0)	57 (2.5)	2,238 (97.5)
	2014년	138 (100.0)	9 (6.5)	129 (93.5)	10,144 (100.0)	875 (8.6)	9,269 (91.4)
	2015년	196 (100.0)	19 (9.7)	177 (90.3)	13,525 (100.0)	1,322 (9.8)	12,203 (90.2)
전년 대비 증감률(%)	2013년	138.5		138.5	127.9	1,800.0	122.9
	2014년	345.2		316.1	342.0	1,435.1	314.2
	2015년	42.0	111.1	37.2	33.3	51.1	31.7
2012년 대비 2015년(%)	1,407.7		1,261.5	1,243.1	43,966.7	1,115.4	

주: () 안은 비중임
출처: 관세청, 「2015 담배수입동향」, 보도자료, 2015.

2015년 이전에는
니코틴을 포함한 일체형
액상용액이
주로 판매되었으나,
2015년 전자담배 세율 인상
이후 과세 회피를 위해
니코틴 용액과 액상용액을
따로 판매하는
분리형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 전자담배 용액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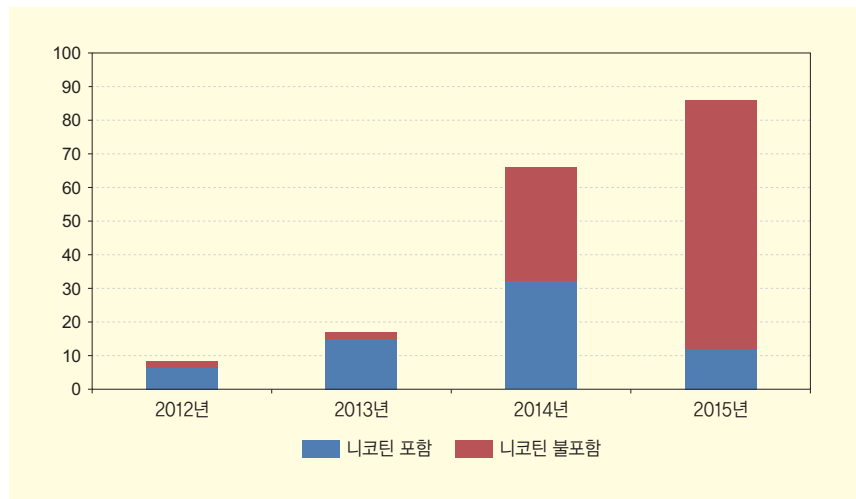
(단위: 톤, 천달러, %)

구분	중량			금액			
	합계	니코틴 포함	니코틴 불포함	합계	니코틴 포함	니코틴 불포함	
연도	2012년	8 (100.0)	6 (75.0)	2 (25.0)	460 (100.0)	446 (97.0)	14 (3.0)
	2013년	17 (100.0)	15 (88.2)	2 (11.8)	997 (100.0)	957 (96.0)	40 (4.0)
	2014년	66 (100.0)	32 (48.5)	34 (51.5)	4,433 (100.0)	2,620 (59.1)	1,813 (40.9)
	2015년	86 (100.0)	12 (14.0)	74 (86.0)	5,372 (100.0)	1,748 (32.5)	3,624 (67.5)
전년 대비 증감률(%)	2013년	112.5	150.0	0.0	116.7	114.6	185.7
	2014년	288.2	113.3	1,600.0	344.6	173.8	4,432.5
	2015년	30.3	-62.5	117.6	21.2	-33.3	99.9
2012년 대비 2015년(%)	975.0	100.0	3,600.0	1,067.8	291.9	25,785.7	

주: () 안은 비중임
출처: 관세청, 「2015 담배수입동향」, 보도자료, 2015.

[그림 1] 전자담배 액상용액 수입량의 변화

(단위: 천달러)



출처: 관세청, 「2015 담배수입동향」, 보도자료, 2015를 재구성

IV. 전자담배의 위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

전자담배는 궤련담배에 비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는 것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사용에 따라서는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등 순기능도 존재한다. 궤련담배를 끼워 쓰는 전자담배는 궤련담배와 가장 유사한 향이나 맛을 내지만,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발생이 적고, 간접흡연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순기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에는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안전성을 위한 적절한 관리가 담보되어야만 한다.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논의는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기화상태에서의 유해성분 함유문제, 무화량 조절과 흡연자의 인지 가능성, 간접흡연, 청소년 흡연의 'gateway'로 추려질 수 있다. 먼저, 일련의 연구들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충전식 전자담배의 경우,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기화과정에서 유해성분들이 검출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만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나, 전자담배가 기화되는 과정에서 주요 발암물질군 TSNAs와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궤련담배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궤련에는 없는 독성물질(ex: 프탈레이트)도 존재한다는 연구도 있다(신호상, 2013). 값싼 전자담배 기기의 경우 환경호르몬 등의 문제에도 노출될 수 있고, 전자담배 액상용액에 사용되는 향료 또한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서 소규모 업체의 제조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든 실정이다.

둘째, 궤련담배처럼 연기나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화과정에서 수증기 상태(에어로졸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물질 등이 전자담배 연기의 2차 흡연자들에게도 전달되므로, 간접흡연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수증기 상태의 에어로졸 흡입은 전자담배 연기의 간접흡연자들에게 니코틴, 미세 입자, 일부 유독물질의 흡입을 초래할 수 있는데, 수증기 상태에서는 액상상태보다 일부 유독물질 등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호상(2013) 등에 의하면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이 날숨 때 최대 10%까지 주변으로 확산되는 등 간접흡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궤련담배를 끼워쓰는 아이코스 와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기화상태에서의 유해물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궤련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해로울 수는 있지만 전자담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위해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화량 조절이 되는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궤련담배처럼 자신의 흡연량에 대한 인지나 자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이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셋째, 전자담배 무화량 조절을 할 수 있는 전자담배의 기기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무화량 조절이 어려운 기기도 많아 사용자가 한번에 다량의 니코틴을 의도하지 않은 채 흡입할 수도 있다. 즉, 전자담배 사용자의 니코틴 흡입량이 궤련담배에 비해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화량 조절이 되는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궤련담배처럼 자신의 흡연량에 대한 인지나 자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자담배의 사용이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넷째, 금연보조제로서의 전자담배는 금연 혹은 흡연욕구 저하를 위해 사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 흡연자들이 전자담배와 궤련담배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금연보다는 덜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청소년들이나 비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통해 흡연으로 입문하는 관문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담배의 품질관리 및 마케팅 판매에 대한 규제, 전자담배 성분표시 및 청소년 유해표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V. 전자담배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와 동일하게 간주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크게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관리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궤련담배의 경우 담배의 정의, 제조허가, 제품표시 및 표기, 광고제한, 판매 및 유통, 금연구역지정 등을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여 관리 및 규제하고 있다. 전자담배도 신종 담배의 일종으로 담배 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 제조허가, 제품표시 및 표기, 광고제한, 판매 및 유통, 금연구역 지정 등 궤련담배와 동일한 법령하에 관리 및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전자담배 액상용액은 식약처 고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에 대한 제반 규제와 관리에 있어서도 궤련담배와 동일한 법령과 규제 및 관리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자담배는 궤련담배와는 제조과정 및 성격, 유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표 3〉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

구분		관련법령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제조허가		「담배사업법」
제품표시 및 표기	성분표기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판매금지	「청소년보호법」
	경고문구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광고제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판매 및 유통관련	판매등록	「담배사업법」
	위변조 제품 판매 규제	「담배사업법」
	통신판매 규제	「담배사업법」
금연구역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전자담배액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2호
조세부과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주: 법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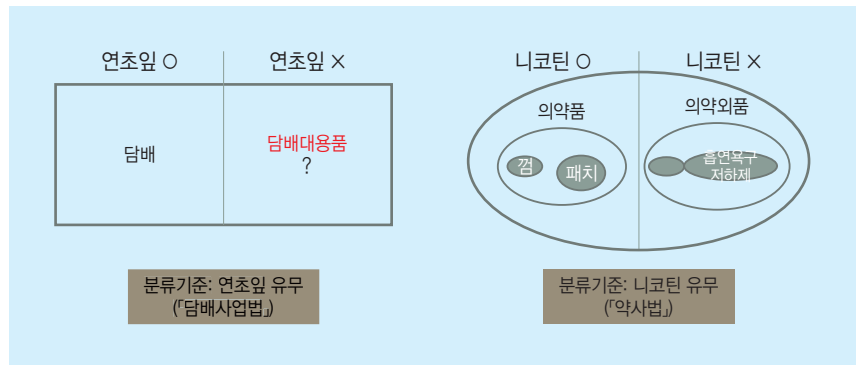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의 분류도 연초잎 추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며, 전자담배 관리에 허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연초잎을 사용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용액의 경우 전자담배는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전자담배를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고,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는 연초잎을 원료로 한다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니코틴 포함 액상용액을 사용할 경우 담배제품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담배의 제조와 관련된 「담배사업법」상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담배제조에 관련된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원론적으로는 비켜 갈 수도 있다. 한편, 2014년 9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용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담배제조에 관련된 「담배사업법」상의 규제를 원론적으로는 비켜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유사한 체제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담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였다. 정리하면, 현행 법령들하에서는 연초잎 추출 여부, 니코틴 포함 여부에 따라 전자담배가 담배제품이 될 수도 있고, 담배 대응품이 될 수도 있으며, 의약품 혹은 의약외품이 될 수도 있다.

[그림 2] 전자담배 분류의 기준



출처: 조준호 외 (2011)에서 재인용

Ⅵ.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1.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담배를 궐련담배와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유사한 체제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담배에는 종량제 형태로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폐기물부담금 등이 부과되고 있는데, 전자담배에도 궐련담배와 동일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궐련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담배 1갑당 종량제로 부과되었다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이 종량제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2011년 과세 부과 당시 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담배소비세 400원으로 총제세부담금액은 니코틴 용액 1ml당 600원이었다. 2015년 궐련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도 동일하게 인

상되어, 현재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와 276원의 지방교육세, 525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 궐련담배의 개별소비세 신설과 더불어 전자담배에도 370원의 개별소비세가 신설되었다. 또, 궐련담배 1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과 같은 24.4원이 전자담배 카트리지 20개에 부과되고 있다. 현재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에 대한 총세세부담금액은 1,799원이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의 본격적 출시를 앞두고 연초 고품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체계도 2017년 1월부터 마련되었다. 연초 고품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이전에도 일부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었으나, 연초 고품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체계는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연초 고품형 전자담배 세율에 관한 여러 입법논의와 더불어, 2017년 1월 연초 고품형 1g당 담배소비세 88원의 세율이 결정되었고, 2017년 5월부터는 73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시행되었다. 연초 고품형 전자담배 세율은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궐련담배의 평균 중량을 기준으로 궐련담배 평균 1g당 세율을 계산하여 적용한 것이다.

2017년 1월 연초 고품형 1g당 담배소비세 88원의 세율이 결정되었고, 2017년 5월 부터는 73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가 시행되었다.

〈표 4〉 전자담배 유형별 과세 구조 및 연혁

(단위: 원)

유형	구분	2011.1.	2011.12.	2015.1.	2017.1.	2017.5.
니코틴용액 (ml당)	담배소비세	400	400	628	628	628
	지방교육세	200	200	276	276	276
	건강증진부담금	-	221	525	525	525
	개별소비세	-	-	370	370	370
	폐기물부담금(20카트리지당)	7	7	24.4	24.4	24.4
	소계(폐기물부담금 제외)	600	821	1,799	1,799	1,799
연초 고품형 (g당)	담배소비세	-	-	-	88	88
	지방교육세	-	-	-	38.7	38.7
	건강증진부담금	-	-	-	-	73
	개별소비세	-	-	-	-	21 ¹⁾
	폐기물부담금	-	-	-	-	-
	소계(폐기물부담금 제외)	-	-	-	126.7	220.7

주: 2015년 1월부터 지방교육세율이 담배소비세의 0.5에서 0.4399로 변경됨

1) 연초 고품형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개정 법안이 계류 중이며, 현재 파이프담배에 같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52조, 제151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17.8.18_접속\)](http://www.law.go.kr/법령/지방세법(2017.8.18_접속))

_____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2], [http://www.law.go.kr/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17.8.18_접속\)](http://www.law.go.kr/법령/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2017.8.18_접속))

_____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http://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2017.8.18_접속\)](http://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2017.8.18_접속))

_____ 「개별소비세법」 제16조 [별표], [http://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2017.8.18_접속\)](http://www.law.go.kr/법령/개별소비세법(2017.8.18_접속))

과세 회피를 위한
전자담배 액상용액의
분리형 유통의 문제점은
니코틴 액상의
고농도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액상 전자담배 과세로 인한 분리형 유통의 성행

액상 전자담배 과세체계가 담배와 같이 종량제 구조로 니코틴 용액 ml 단위 당 부과되기 시작하자 전자담배 제품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전 제품은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과 향을 섞은 원팩(one-pack)액상만 판매가 되었으나, 과세 회피를 위해 고농축 니코틴 원액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니코틴 희석액을 따로 판매하는 형태의 분리형 유통이 성행하게 되었다.

전자담배 과세 부과 이후 2012년 중반부터 니코틴 액상에 대한 과세 회피를 위해 본격적으로 고농도 니코틴 액상과 무니코틴 향액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분리형 유통’(일명 솔루션 액상)을 시작하였다. 최초 출시된 니코틴 분리형 솔루션 액상은 (주)향센코리아의 액상나라 상품으로 무니코틴 향액 10ml와 니코틴 용액 10ml를 각각 판매하는 식이었다. 이 경우 20ml 액상용액에 대해 35,980원(2015년 세율기준)의 제세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17,990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제세부담금의 50%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말경에는 Green-sound 社가 개발하여 국내 수입상에게 공급하기 시작한 무니코틴 향액 18ml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2ml를 분리하여 시장에 내놓았다. 또 2013년부터 유통되고 있는 솔루션 액상은 무니코틴 향액 20ml 혹은 30ml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1~6ml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21ml의 니코틴 액상용액에 대해 37,779원의 제세부담금 대신 1,799원의 제세부담금만 내는 형태로 액상용액 21ml당 약 35,980원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전자담배 과세 회피를 위한 액상용액의 분리형 유통은 니코틴 액상의 고농도화와 함께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과 함께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도 1ml당 821원에서 1,799원으로 인상되어, 니코틴 용액에 대한 과세 회피를 위해 고농도 니코틴 액상의 해외직구, 밀수 등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 20ml에는 35,980원(20ml ×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고농도 니코틴 액상 1ml에 무니코틴 향액 19ml를 섞게 되면 고농도 니코틴 액상의 부과만큼만 세금이 부과되기에 1,799원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리형 유통방식의 성행은 국가 세금의 누수라는 문제를 떠나서,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판매와 섞어 쓰는 니코틴 용액의 니코틴 함량에 대한 컨트롤이 어려워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안전성과 위

해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분리형 유통은 소비자들이 직접 니코틴 액상과 솔루션을 혼합하여 사용함에 따른 위험성까지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독물질인 '니코틴'은 삼킬 경우(40mg 이상)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피부와 접촉해도 치명적인 상해를 발생시키는 등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유독물질을 소비자가 직접 혼합하여 사용하다 보니 과오용으로 인한 사고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의 임의적 희석방식에 따라 고농도의 니코틴을 전달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궐련담배보다 더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다. 전자담배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서도 원팩 니코틴 액상용액이 주로 생산,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의 손에서 혼합되는 위험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판매가 시행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드문 현상이다.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자담배 액상의 분리형 유통이 원천봉쇄될 수 있도록 전자담배 액상용액의 니코틴 농도를 규제할 필요도 있다. 현재의 유통체계가 허가된 농도 이하의 원팩 액상 유통으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과세체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전자담배 액상 21ml를 기준으로 현재 업체들의 담배세 납부세액이 1,799원에서 37,779원으로 세금이 35,980원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전자담배 가격이 현행 27,500원에서 63,480원으로 증가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궐련담배보다는 위해성이 낮고, 금연보조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전자담배의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궐련담배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흡연자의 니코틴 총량을 늘린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분리형 유통의 유인을 제공하는 현행의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개편할 필요는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과세체계 개편에 선행하여 니코틴을 일정 농도 이하로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액상용액의 농도 규제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농도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의 손에서
혼합되는 위험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판매가 시행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유례가
드문 현상이다.**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의
사용을 지향하면서도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해외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VII. 해외 전자담배 분류 유형 및 전자담배 관리

전자담배는 약 10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에 대한 시각과 분류는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고, WHO의 전자담배에 대한 입장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대체로 니코틴 함유 여부, 사용목적, 장치 구성요소에 따라 전자담배를 담배제품, 의약품, 소비재, 전자니코틴 전달장치(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 등으로 간주하는 등 전자담배에 대한 분류가 상이하다.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담배를 독극물(poison)로 간주하고 있기도 하다(Johns Hopkins University, 2015).

전자담배를 보는 시각이 국가마다 이렇듯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담배 판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규제도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Johns Hopkins 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123개국 중 55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고, 26개국에서는 전자담배를 담배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7개국에서는 전자담배를 의약품으로 간주하고, 4개국에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독극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캄보디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이고,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헝가리,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일정 기준까지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체코, 베네수엘라에서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서 판매될 때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하지만, 금연보조제처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전자담배장치의 구성요소별로 규제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외형커버와 배터리 및 무화기(atomizer)¹⁾는 소비재로 구분하고 있으나, 니코틴 카트리지와 액상은 화학제품 또는 독극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자담배 규제에 관한 협의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체로 전자담배에 대한 각국의 시각은 전자담배의 금연보조제로서의 사용을 지향하면서도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정유석(2014)에서는 전자담배 관리가 전반적으로 판매금지 혹은 니코틴 함량 축소 등의 규제방식에서 금연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1) 전자담배 액상용액을 액체 상태에서 수증기 상태로 만드는 기화 장치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화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WHO는 전자담배 규제를 권고하고 전자담배에 관한 지속적 연구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비교적 전자담배에 관하여 관대하였던 EU의 경우도 최근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을 20mg/ml 이하로 규제하고, 전자담배 용기도 이에 맞는 규격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침을 2014년 5월에 발효하였다. EU 회원국들은 2016년 2사분기까지는 자국 내에 이러한 지침을 입법화할 예정이다(Directive 2014/40/EU).

〈표 5〉 해외 주요국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현황

국가	규제		니코틴 포함 액상 규제 관련		
	기계	액상	범주	규제 여부	비고
호주	비규제	규제 (니코틴 포함 경우)	의약품	판매 금지	독극물로 간주 개인의 사적용도로 인한 수입 규제가 부재
오스트리아	규제	규제	의약품	판매시 면허필요	실질적으로 금지 (승인된 경우 없음)
벨기에	비규제	규제 (니코틴 포함 경우)	의약품	판매시 면허필요	실질적으로 금지 (승인된 경우 없음)
브라질	규제	규제	담배 제품	판매금지	
브루나이	규제	규제	담배 모조품	판매금지	적발시 1만달러 벌금 부과
캐나다	비규제	규제 (니코틴 포함 경우)	-	수입, 광고, 판매금지	논의 중이며, 니코틴 액상의 판매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즉, 캐나다 보건부에서 니코틴 용액을 판다고 해서 고발할 수 없음)
덴마크	비규제	규제 (니코틴 포함 경우)	의약품	판매금지	
EU	규제 (예정)	규제 (예정-니코틴 20mg 이상 경우)	담배	수입, 광고, 판매금지(예정)	논의 중이며, 2016년에 적용 예정
프랑스	비규제	규제 (니코틴 20mg/ml 이상)	의약품	판매시 면허필요	20mg/ml 이하의 경우 식품안전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의약품으로 간주. 실질적으로 금지
핀란드	비규제	규제 (니코틴 포함 경우)	의약품	판매시 면허필요	실질적으로 금지 (승인된 경우 없음)
독일	비규제	비규제	소비재	-	2013년 의약품이 아닌 소비재로 법원 판결
이스라엘	비규제	비규제	-	-	2014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대법원 판결
이탈리아	비규제	비규제	-	-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지만, 정부로부터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Categoria임 2015년 1월부터 액상 및 기계에 58.5%(0.37유로/ml)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5월에 기계 및 니코틴 없는 액상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판결

〈표 5〉의 계속

국가	규제		니코틴 포함 액상 규제 관련		
	기계	액상	범주	규제 여부	비고
일본	비규제	규제 (니코틴 포함 경우)	의약품	수입, 광고, 판매금지	미승인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규제	규제	의약품	판매시 면허필요	실질적으로 금지 (승인된 경우 없음)
멕시코	규제	규제	-	수입, 광고, 판매금지	디자인이 담배제품과 유사하여 금지
네덜란드	비규제	비규제	-	-	2012년 의약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
뉴질랜드	비규제	규제	의약품	판매시 면허필요	미승인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싱가포르	규제	규제	담배 모조품	수입, 광고, 판매금지	담배와 유사한 제품은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금 최대 5,000달러
대만	규제	규제	의약품	판매시 면허필요	실질적으로 금지 (승인된 경우 없음)
영국	비규제	비규제	-	-	광고제한 규제 존재 EU 입법가결을 찬성하고 있음
미국	비규제	비규제	-	-	2011년 FDA에서 담배로 포함시키려는 시도 2014년 FDA에서 연방규제안 수립 및 2016년 효력발생 예정 (18세 미만 판매금지 및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기존 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2년 내에 FDA의 승인 신청) 일부 주별로 미성년자 판매금지 및 공공장소 이용금지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고 있음 미네소타 주는 니코틴 포함 용액에 대해 과세 (도매가격의 95%를 과세)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센트/ml 과세 (vapor tax)

출처: 최성은(2016)에서 재인용

e-cigarette politics.com, <http://www.ecigarette-politics.com/electronic-cigarettes-global-legal-status.html>, 2015.5.29.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http://www.ncsl.org/research/health/alternative-nicotine-products-e-cigarettes.aspx>

tobaccotoday, <http://www.tobaccotoday.info/2015/05/06/e-cigarette-tax-bill-update/>.

VI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전자담배 소비로 인한 금연을 위한 효과적 수단의 순기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자담배 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담배 제품이 다양화되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도 전자담배 관리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시판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향후 전자담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불투명하지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도 적절한 관리가 부재한 상태다.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전자담배 액상용액의 분리형 유통으로 인한 니코틴 용액의 안전성 문제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형 유통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니코틴 용액의 농도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전자담배 액상용액이 혼합형으로 판매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전자담배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과세를 회피하여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세금이 1병(21mℓ)당 1,799원이나 혼합형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이 37,779원으로 증가하므로, 전자담배 시장 및 전자담배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과세체계 개편이 전자담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여전히 고민스러운 것은, 전자담배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흡연을 저하라는 정책목표처럼 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여전히 유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는 그 안전성과 위해성이 여전히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궐련담배의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유독물질에 비해 여전히 위해성이 낮을 수 있으며,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흡연 저감을 위한 금연보조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궐련담배와 동일한 과세체제 부과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최근 궐련담배 가격인상이 일시적인 전자담배 판매의 증가로 이어졌던 것을 보면, 전자담배가 궐련담배를 대체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전자담배의 궐련담배 대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여, 통일된 정책방향 수립이 어렵다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전자담배의 판매 증가가 흡연량과 흡연율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와 병행 사용(dual use)을 통해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

과세체계 개편이 전자담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여전히 고민스러운 것은, 전자담배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흡연을 저하라는 정책목표처럼 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자담배 과세정책은
전자담배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다.**

자담배의 확산을 꺾던담배와 동일선상에서 금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운 문제다. 유해성이 훨씬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 꺾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라 하더라도, 꺾련형 전자담배가 꺾련담배를 대체할 것인지 병행 사용으로 인해 흡연자의 니코틴 총량을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답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분리형 유통의 금지와 함께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고, 동시에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더욱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체제는 액상용액 농도규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문제가 아니라 전자담배의 안전성 관리일 것이다. 따라서 전자담배 과세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전자담배 관리정책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전자담배 과세정책은 전자담배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자담배 액상용액에 대한 농도규제를 통해 현행의 분리형 유통이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U의 최근 전자담배 관리관련 규정에서도 니코틴 액상용액은 니코틴 함량이 20mg/ml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담배 액상용액 판매시 니코틴 액상용액의 농도를 2%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담배 액상용액의 니코틴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담배사업법」상에는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불가능하여 소비자가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제품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니코틴 함량(mg)과 액상 용량(ml)을 표기하고 있으나, 표기의 정확성을 확인할 방안 또한 없다. 복지부 보도자료(2015.1.20.)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121개에 포함된 니코틴 농도는 ml당 0.012~36.15mg으로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니코틴 함량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에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함량 표기 규제 도입 및 함량 표시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담배사업법」에 니코틴 액상 1ml에 포함된 니코틴 함량(mg/ml)과 니코틴 액상의 총용량(ml)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표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반기 또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모든 제

품의 니코틴 함량 및 총 용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경우 벌칙을 주는 등의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부재할지 모르나, 기화상태에서의 전자담배 증기에도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켈런담배의 경우는 켈런 한 개비의 기체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담배는 국제기구에 의해 권고되는 유독물질 성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성분의 표기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 기체에 대해서도 켈런과 동일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만, 전자담배의 경우 ISO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자담배 기체 성분 측정법이 없어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전자담배에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기하도록 규제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기 상태의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서도 표준화된 측정법의 구축과 성분표기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니코틴 액상용액에 대한 품질 및 안전의 사전적, 사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유통경로가 불명확하다 보니 순도가 낮은 니코틴 사용, 갈변현상 발생 등 화학적으로 안전성이 낮은 액상들이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전자담배 기기 또한 품질 및 안전 기준을 두고 적절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니코틴을 지속적인 방식(consistent delivery)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기기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담배 기기가 액상 니코틴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달할 경우 과농도의 니코틴이 한번에 흡입될 수 있다. EU의 최근 지침에는 니코틴을 지속적인 방식으로(consistent delivery) 전달하지 못하는 전자담배 기기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담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입, 판매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안전수준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자담배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입 및 판매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단계에서부터 품질 및
안전수준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관세청, 「최근 담배 수입 동향: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및 용액은 수입 급증, 궐련담배는 감소」, 보도자료, 2015.1.19.
- 보건복지부,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존재: 전자담배 액상 유해성 연구 결과 발암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검출」, 보도자료, 2015.1.20.
- 신호상,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 액체상 중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 및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5.
- _____, 「전자담배 액상 및 기체상 중 유해물질 고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39권 6호, 2013.
- 조준호·문상식·백남원·정애숙·정다위, 『전자담배 관련 현황분석 및 정책의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2011.
- 최성은,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Institute for Global Tobacco Control, “Country Laws Regulating E-cigarettes: A Policy Scan,”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2015.
- Kim, H., Shin H., “Determination of tobacco-specific nitrosamines in replacement liquids of electronic cigarettes by liquid chromatography-tandem mass spectrometry,” *Journal of Chromatography A* 1291, 2013, pp. 48-55.
- World Health Organization,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FCTC), 2014.

〈부표〉 주요국가 전자담배 규제 현황

국가	판매		생산, 유통, 마케팅 금지 여부				세금	사용 금지 여부			분류	규제 ¹⁾
	만~세 미만 판매금지	전면 판매금지	마케팅 금지	유통 금지	수입 금지	생산 금지	세금 부과	전면 금지	폐쇄된 공공장소 사용금지	대중교통 내 사용금지		
한국	19		○				○		△	△	T	E
브라질	-	○	○	○	○				○	○	TE	N
브루나이	-	○			○				△	△	TP	E
멕시코	-	○	○	○		○					T	E
뉴질랜드	18	△	○	△	△						MTC	E
싱가포르	-	○		○	○						T	E
호주	-	△	○		△						CP	E
오스트리아	-	△	△	△	△	△					MC	E
벨기에	-	△	△	△	△	△			○	○	MC	E
캐나다	-	△	△		△	△					CE	E
체코	18	△	△	△	△						ME	E
프랑스	18	△	△								MC	AE
독일	-										C	E
이스라엘	-										C	E
이탈리아	18						○				C	A
일본	-	△	△	△	△	△					M	NE
네덜란드	-		○								CE	NE
UAE	-	○	○					○			E	N
포르투갈	-	△	△	△	△	△	○	△			MC	E
영국	-		△								CE	NE

주: △ 표시는 제한적/조건부 금지를 의미함

1) 규제 column은 각국의 규제 메커니즘을 나타낸 것으로서, N은 신설 법률을 통한 규제, E는 기존에 있던 법률을 통한 규제, A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개정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최성은(2016)에서 재인용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at Johns Hopkins University (2015), "Country Laws Regulating E-cigarettes: A Policy Scan," pp. 17~18, 재인용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 <http://www.ncsl.org/research/health/alternative-nicotine-products-e-cigarettes.aspx>
 tobaccotoday, <http://www.tobaccotoday.info/2015/05/06/e-cigarette-tax-bill-update/>.

경기 변동 주기상 제조업체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

I. 서론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jhwoo@kipf.re.kr)

기업의 자본스톡 조정과정은 두 가지의 중요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자본조정 과정에서 자본스톡 조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치러야 하는 고정 비용이 존재한다. 투자에 따른 고정비용은 예컨대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동안에 생산이 지연됨으로써 산출량이 줄어들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체의 고용자들이 새로운 설비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과 교육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성(lemon problem), 자본재의 특정성(capital specificity) 등의 이유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수량·성질의 자본재라고 하더라도 자본재를 되파는 경우에는 구매 가격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본재 투자에 수반되는 이와 같은 제약하에서 기업들의 최적 투자 행위는, 수익성 변화에 대응해서 매년 조금씩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투자순환 주기를 따라서 몇 년에 한 번씩 높은 비율로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재를 되파는 경우에 가격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기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더라도, 자본재를 되파는 대신 좋은 수익성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두 가지 제약 조건하에서는 투자순환 주기상 최적 투자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개별 기업들이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투자지원금 혹은 세액공제)에 반응해서 투자 시점을 다소 앞당기는 식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총투자유발효과는 결국 투자순환 주기상 최적 투자시점에 임박해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스톡 조정과 관련된 위의 제약조건들은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게 된다.

첫 번째는, 경제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투자지원 정책의 투자유발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다수의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투자순환 주기상 최적 투자시점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로 불황일 때는 많은 수의 기업들이 최적 투자시점을 뒤로 늦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가 호황기일 때는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이 집행되는 시기에 실제로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만약 단기에 투자 유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인 경우에 한해서 모든 기업들에 동일하게 투자지원 정책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관찰 가능한 기업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최적 투자시점과 거리가 멀지 않은 기업들을 식별한 다음 이들 기업군에 투자지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상의 시사점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유의한 논의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II절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광업·제조업 조사」의 연도별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국 제조업체들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의 특징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III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별 기업 자본스톡 조정과 관련된 두 가지 제약조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질적 다기업 모형(heterogenous firm model)의 구축을 통해서 한국 제조업체 횡단면 분포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약조건들의 크기를 측정한다. 제IV절에서는 제III절에서 구축한 모형경제를 경기변동적인 요소와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호황과 불황일 때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의 단기 투자유발효과가 정량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충격반응함수를 통해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모든 기업들에 동일하게 투자지원 정책을 제공할 때와 고용 규모가 작은 기업 혹은 큰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지원 정책을 제공할 때 단기 투자유발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가 호황기일 때는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이 집행되는 시기에
실제로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한국 제조업체의
자본스톡에 대한
디플레이터의
공식적인 통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각 자본재 항목별
투자 디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자본스톡 및 투자액을
실질화하였다.

II. 제조업체 투자율 분포 현황

1. 데이터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에 속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의 사업체¹⁾들의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용광로’, ‘차량·선박·운반구’의 연초 잔액과 해당 항목들의 연간 증가액(gross purchase) 및 감소액(gross sales)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변수들은 모두 명목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디플레이터를 사용해서 실질 변수로 전환해 사용해야 하는데 한국 제조업체의 자본스톡에 대한 디플레이터의 공식적인 통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택으로 각 자본재 항목별 투자 디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자본스톡 및 투자액을 실질화하였다.²⁾³⁾ 개별 사업장의 투자율은 실질화된 증가액과 감소액의 차이를 실질화된 연초 자본스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다.

제조업체 투자율 횡단면 분포의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시기별로 분포의 형태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0년~2006년, 2007년~2009년, 2011년~2014년 세 시기를 샘플별로 합산(pooling)하여 횡단면 분포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제조업체 사업장 중 고용규모, 부가가치, 자본스톡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투자율 변수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변수들이 음(-)의 값을 가지는 사업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의 샘플 선택 과정 후 남아 있는 사업장 중 매해 투자율 상·하위 1%에 속하는 사업장을 제거한 뒤에 세 시기별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경제 전체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미시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제조업체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횡단면 분포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2011~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이 전 산업의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이고 특히 설비투자 부분에서는 전 산업의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제 전체의 투자에서 제조업이 유의미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2006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공
2) 개별 사업체에 대한 패널 데이터가 있다면 사업체별로 연도별 투자액을 이용해서 영구 재고 정리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 본고의 분석에서는 「광업·제조업 조사」의 연도별 횡단면 자료만 이용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3)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국민계정상의 자본재 형태별(비주거용 건물, 운송장비, 기계류) 총자본형성의 명목값과 실질값의 비율을 투자 디플레이터로 이용하였다.

〈표 II-1〉 2011~2014년 제조업이 차지하는 투자 비중

(단위: %)

항목	제조업 비중
총고정자본형성	34
설비투자	48
설비투자-기계류	61
건설투자	17
지식재생산물투자	57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자본재형태별 총고정자본형성」.

투자율 집단별로
제조업 안에서 차지하는
사업장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사업장의 비중과 감소시키는
사업장의 비중 사이에
비대칭성이 관찰된다.

2. 제조업체 투자율 분포현황

〈표 II-2〉에 2011년~2014년 시기에 투자율 집단별로 제조업 안에서 차지하는 사업장 수, 투자, 자본스톡, 부가가치, 고용의 비중을 제시하였다. 투자율 집단별로 제조업 안에서 차지하는 사업장 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관찰된다.

첫째, 투자율이 10% 이상을 보이는 사업체의 비중은 47%에 달하는 반면 투자율 -10%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3.6% 정도에 불과해서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사업장의 비중과 감소시키는 사업장의 비중 사이에 비대칭성이 관찰된다. 자본조정비용 문헌에서는 이런 식으로 투자율의 분포에서 비대칭성이 관찰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partial irreversibility)을 들고 있다. 자본재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lemon problem), 자본재의 특정성(capital specificity) 등의 이유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수량·성질의 자본재라고 하더라도 자본재를 되파는 경우에는 구매 가격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본조정비용 문헌에서는 이를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partial irreversibility)이라고 지칭한다. 거시경제 및 개별 기업의 수익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자본재의 구매 가격과 재판매 가격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기업들은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더라도 자본재를 되팔아서 손해를 보기보다는 좋은 수익성이 실현될 때까지 자본재를 보유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에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를 되파는(투자율이 음(-)의 값을 가지는) 사업체의 비중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2011~2014년 기간에
제조업 사업체의 투자율
횡단면 분포에서 관찰되는
세 가지 특징은
결국 사업체가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과
고정비용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II-2〉 2011~2014년 투자율 그룹별 제조업에서의 비중

(단위: %)

투자율	변수	사업장 비중	투자 비중	자본스톡 비중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20% 이하		2.4	-2.1	2.4	2.3	2.4
-10~-20%		1.2	-0.7	1.5	1.3	1.3
-10~10%		49.6	10.0	50.0	46.1	46.4
10~20%		10.2	12.7	14.8	14.5	12.7
20~30%		5.9	10.7	8.4	8.4	7.5
30~40%		4.0	8.8	5.6	5.8	4.9
40~50%		2.7	6.3	3.3	3.6	3.1
50% 이상		24.0	54.3	14.0	18.2	21.7

출처: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둘째, 적지 않은 수의(전체의 24%) 사업체들이 투자율 5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체들이 매기 자본스톡의 양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에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체들의 자본조정 과정에 있어서 자본스톡 조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치러야 하는 고정비용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투자에 따른 고정비용은 예컨대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동안에 생산이 지연되어 산출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체의 고용자들이 새로운 설비의 사용법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과 교육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최적 투자행위는 매기 조금씩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비용의 지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은 유의한 수준의 자본스톡 조정 없이 있다가 일단 조정할 때 대규모의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50% 이상의 투자율을 보이는 사업체의 비중이 24%에 달한다는 것으로부터 제조업 사업체들의 투자 과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고정비용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분석에 사용된 샘플의 50%에 달하는 사업장들이 투자율 -10~10% 구간에 속하고 있다. 특히 이들 그룹의 평균 투자율은 1.7%로 이는 제조업체의 자본재별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해서 계산한 제조업 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⁴⁾ 12%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세부 업종별로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자본재의 감가상각률에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으나 -10~10%의 투자율 구간에 속하는 사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자본스톡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4) 조태형(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률 3.5%와 기계장치와 선박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률 17.9%를 이용해서 계산

있을 것이다.⁵⁾ 자본스톡의 양을 조정하지 않는 사업체의 존재는 위에서 언급했던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과 고정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 단위 자본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기대되는 기업 가치의 변화량(marginal q)이 자본재의 구입가격보다는 낮고 자본재를 되 팔때의 가격보다는 높은 구간에서 기업은 자본스톡을 조정하지 않게 된다.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스톡 조정에 따른 기업 가치 변화량이 자본조정의 고정비용보다 작을 경우에 자본스톡을 조정하지 않게 된다.

2011~2014년 기간에 제조업 사업체의 투자율 횡단면 분포에서 관찰되는 세 가지 특징은 결국 사업체가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과 고정비용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투자율에 따른 집단별 제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본스톡, 고용, 부가가치의 비중을 살펴보면 투자율 50% 이상 사업체들은 자본스톡의 비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성 혹은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적은 생산요소인 노동으로 자본재를 대체하다가 최적 자본재 수준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본재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커지면 그때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1]은 2000~2006년, 2007~2009년, 2011~2014년 시기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본스톡을 조정하지 않는 사업체들의 비중, 자본스톡을 늘리는 사업체와 줄이는 사업체 비중의 비대칭성, 높은 비중의 사업체들이 50% 이상의 투자율을 보여주는 특징들은 어느 특정 시기에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걸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이후로 오면서 자본스톡을 조정하지 않는 사업체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에 50% 이상의 투자율을 보이는 사업체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투자의 고정비용과 투자의 비가역성의 정도가 시기에 따라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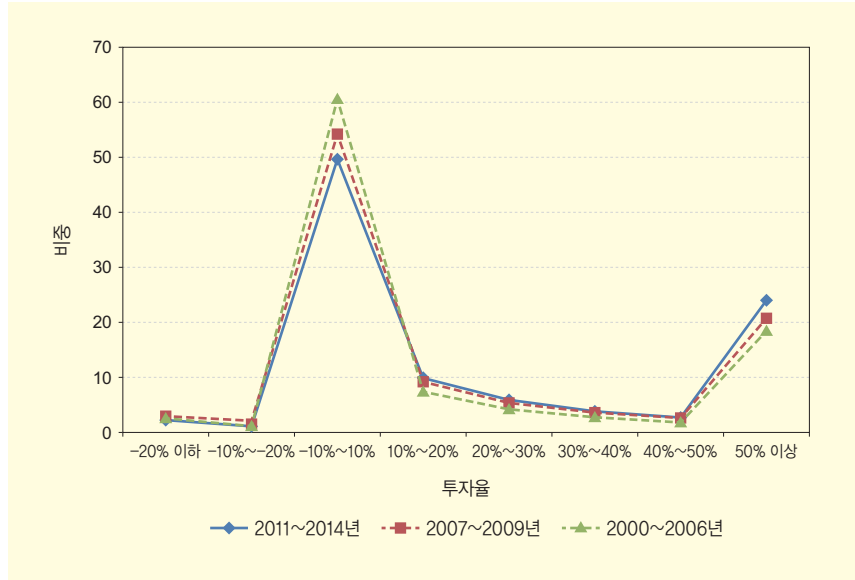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스톡 조정에 따른 기업 가치 변화량이 자본조정의 고정비용보다 작을 경우에 자본스톡을 조정하지 않게 된다.

5) 자본조정비용 문헌에서는 이와 같이 유의하게 자본스톡의 양을 조정하지 않는 사업장들을 inaction 상태에 있다고 지칭한다.

제III절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
개별 기업단위에서의
최적 투자행위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하는
이질적 다기업 모형을
묘사하고자 한다.

[그림 II-1] 제조업체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

(단위: %)



출처: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제III절에서는 자본스톡을 조정할 때의 고정비용과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질적 다기업 모형(heterogenous firm model)을 이용해서 2011~2014년 한국 제조업체의 횡단면 투자율 분포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각 요소들의 크기를 계산하고자 한다.

III. 모형경제

제III절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 개별 기업단위에서의 최적 투자행위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하는 이질적 다기업 모형(heterogenous firm model)을 묘사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모형의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후 모형 내에서 기업들의 최적 투자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겠다.

1. 모형 구성

경제는 크게 기업⁶⁾과 가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들은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로 활용해서 소비와 투자에 이용될 수 있는 최종재를 생산한다. 또한 기업들은 주주들의 상태 및 시간 할인율에 따라서 계산된 기업 이윤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한 투자와 생산과정에 투입할 노동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 특히 본고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 제조업체 사업장들의 투자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장들은 투자의 비가역성과 고정비용하에서 최적 투자 행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가계는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기 소비, 노동 공급,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를 결정하게 된다.

가. 기업

경제는 서로 다른 자본스톡과 생산성 수준을 가지고 있는 충분히 많은 수의 (특정 기업 하나의 결정이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미)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기업의 목적함수는 기업의 주주(경제 내의 대표 가구)에게 귀속되는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현금 흐름의 기대 현재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은 규모 체감하는 생산함수⁷⁾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주어진 이자율과 임금하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본재에 대한 투자와 고용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매기 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개별 기업 단위의 변수들은(상태변수, state variables), 전기의 투자 결정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기업의 자본스톡 수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기업의 생산성,⁸⁾ 자본스톡 조정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수준⁹⁾등이 있다. 자본스톡을 증가시킬 때와 감소시킬 때의 고정비용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자본재의 구매 가격은 소비재 한 단위로 고정되어 있고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은 기업이 사용하던 자본재를 되팔 때는 소비재 한 단위보다 작은 p_s 단위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제약조건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각 고정비용의 크기 및 투자의 비가역성의 정도(p_s 의 정확한 크기)는 모형경제의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는 기업들의 투자율 분포가 실제 한국 제조업에서 관찰되는 투자율 분포와 유사하게 되도록 결정할 것이다.

모든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역시 어느 정도 지

본고의 주요 관심사인 한국 제조업체 사업장들의 투자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 사업장들은 투자의 비가역성과 고정비용하에서 최적 투자 행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6) 모형 안에서는 기업과 사업장 모두 하나의 생산 단위(production unit)를 지칭하는 용어로 동일하게 해석된다.

7)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이 모두 2배가 되었을 때 산출량은 2배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과 달리 규모 불변하는 생산함수를 가정한다면 이 경제에서는 결국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만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8) 기업의 생산성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전 기에 생산성이 높았던 기업이 이번 기에도 생산성이 높다는 지속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9) 데이터에서 비슷한 수준의 자본스톡과 생산성을 가진 기업들 간에도 투자 행태에 차이가 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투자에 필요한 고정비용은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표가계는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을 공급한다. 매기 대표가계에는 한 단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안에서 노동 공급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속성을 가지는 확률 과정으로 모형화했는데 일단 모형경제에서 고정비용 및 투자자의 비가역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모수 설정(calibration) 단계에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확률과정이 취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제IV절에서 기업들의 투자율 분포의 횡단면 분포가 경기변동에 대해서 가지는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의 변화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기업의 최적화 문제

$$\max_{i_{t+l}} E_t \left[\sum_{l=0}^{\infty} \left(\beta^l \frac{u'(c_{t+l})}{u'(c_t)} e^{(k_{jt+l}, i_{jt+l}, x_{jt+l}, z_{t+l})} \right) \right]$$

$$e(k_{jt}, i_{jt}, x_{jt}, z_t) = \pi(k_{jt}, x_{jt}, z_t) - C(k_{jt}, i_{jt})$$

$$i_{jt} = k_{jt+1} - (1 - \delta)k_{jt}$$

$$\pi_{jt} = \exp(z_t + x_{jt}) (k_{jt}^\alpha n_{jt}^\nu) - w_t n_{jt}$$

$$= \left[\left(\frac{v}{w_t} \right)^{\frac{v}{1-v}} - w_t \left(\frac{v}{w_t} \right)^{\frac{1}{1-v}} \right] \exp(z_t + x_{jt}) k_{jt}^{\frac{\alpha}{1-v}}$$

$$C(k_{jt}, i_{jt}) = \begin{cases} F^+ + i_{jt} & , \text{ if } i_{jt} > 0 \\ F^- + p_s i_{jt} & , \text{ if } i_{jt} < 0 \end{cases}$$

$$\alpha + v < 1, p_s < 1$$

$$z_t = \rho_z z_{t-1} + \epsilon_z, \epsilon_z \sim N(0, \sigma_z^2)$$

$$x_{jt} = \rho_x x_{jt-1} + \epsilon_x, \epsilon_x \sim N(0, \sigma_x^2)$$

$$F^+ \sim U(0, \bar{F}^+)$$

$$F^- \sim U(0, \bar{F}^-)$$

나. 가계

대표가계(representative household)는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고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을 공급한다. 매기 대표가계에는 한 단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안에서 노동 공급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단위 노동 공급당 시장 균형 임금을 받게 되는 대신에 노동 공급으로 인한 비효용이 발생하게 된다. 대표가계는 경제 내 기업들의 주식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미래 발생 가능한 이윤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 대표가계의 시점 간 소비의 한계효용 비율을 이용한다.

가계의 최적화 문제

$$\max \sum_{t=0}^{\infty} \beta^t [\log(c_t) - \theta n_t]$$

$$s.t. c_t + \int_0^1 p_{t+1j} \psi_{t+1j} dj = w_t n_t + \int_0^1 p_{tj} \psi_{tj} dj$$

p_{tj} : 기업 j의 배당부(cum dividends) 주식 가격, ψ_{tj} : 기업 j의 주식 수

다. 균형

대표가계의 소비, 기업들의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 기업들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구성되는 최종재의 수요와, 기업들의 생산활동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최종재의 공급을 일치시키는 이자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임금 수준이 최종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의 청산 조건을 통해서 결정된다. 개별 기업들이 최종재화시장 균형을 만족시키는 대표가계의 소비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확률 할인가(stochastic discount factor)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cash flow)의 기대 현재 가치를 결정하는 한, 균형에서 개별 기업의 투자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기업들의 자본스톡과 생산성의 분포와 대표가계가 보유하는 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의 분포는 일치하게 된다.

최종재화시장 청산 조건

$$\int_0^1 y_{tj} dj = c_t + \int_0^1 i_{tj} dj + \int_0^1 AC_{tj} dj$$

노동시장 청산 조건

$$n_t^s = \int_0^1 n_{tj}^d dj$$

2. 기업의 최적 투자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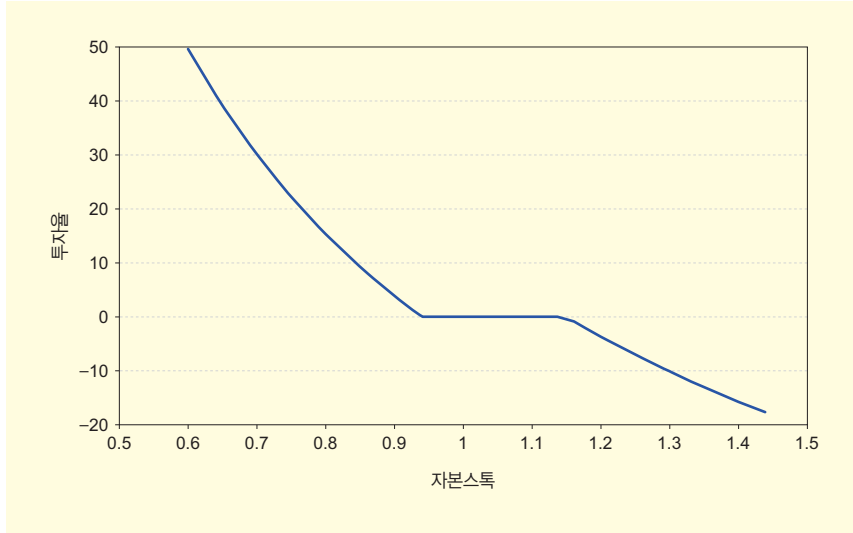
모형경제를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자본 조정의 고정비용과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이 존재하는 상황하에서 기업의 최적 투자행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모형경제에서 도출되는 기업들의 최적 투자행위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업의 투자행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최종재의 공급을 일치시키는 이자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임금 수준이 최종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의 청산 조건을 통해서 결정된다.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실제로 목표 투자량만큼 자본스톡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그림 III-1] 자본스톡 수준에 따른 기업의 목표 투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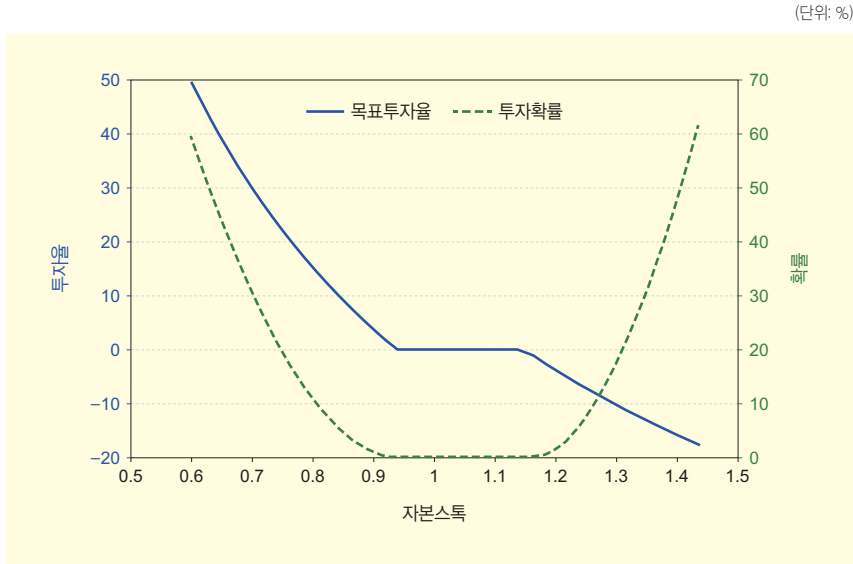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그림 III-1]은 전체 기업들 중에서 중위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기업이 현재의 자본스톡 수준(x 축)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투자율(y 축)을 나타내고 있다.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실제로 목표 투자량만큼 자본스톡을 조정하지는 않는다. 자본의 구입 가격과 처분 가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 때문에 자본조정에 따른 기업 가치의 한계 변화량이 자본의 구입 가격과 처분 가격 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자본조정의 고정비용 유무와 상관없이 목표 투자율 자체가 0이 된다.

[그림 III-2] 기업의 목표 투자율과 투자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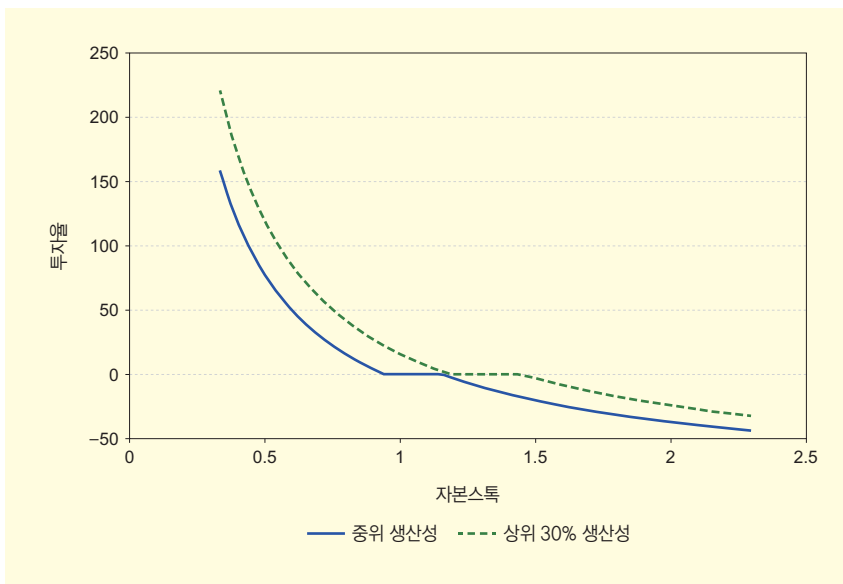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그림 III-2]는 주어진 생산성과 자본스톡 수준에서 기업의 목표 투자율과 함께 실제로 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본스톡 조정에 따른 기업 가치의 증가분보다 작은 값의 고정비용이 실현될 확률이 목표 투자량만큼 자본스톡을 조정할 확률이 된다. 목표 투자율의 절댓값이 작은 구간에서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낮고 목표 투자율의 절댓값이 높은 구간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존재할 때는 경제의 균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기업들의 투자율 분포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투자율을 나타내는 기업들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자본조정의 고정비용이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자본스톡 조정에 따른 기업 가치의 증가분보다 작은 값의 고정비용이 실현될 확률이 목표 투자량만큼 자본스톡을 조정할 확률이 된다.

[그림 III-3] 기업의 생산성에 따른 목표 투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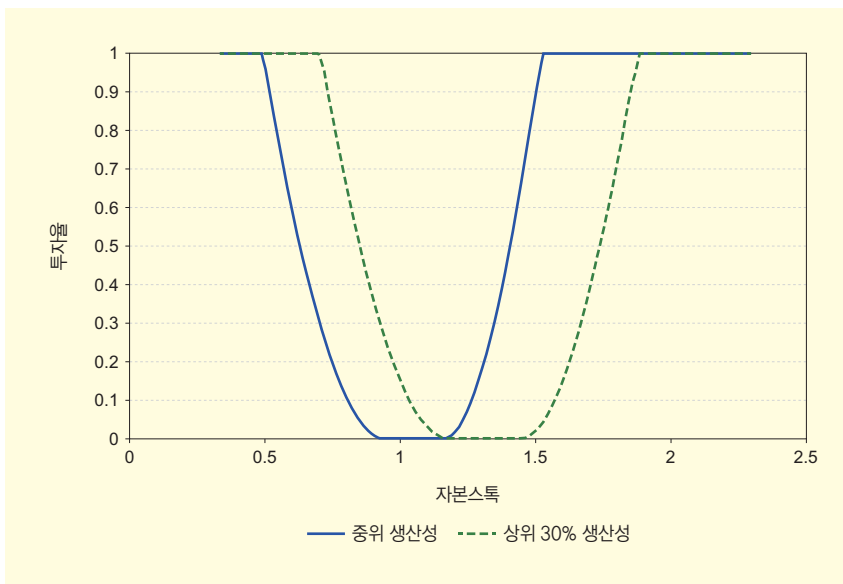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그림 III-4] 기업의 생산성에 따른 투자확률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서 최적 투자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그림 III-3]과 [그림 III-4]에서는 각각 중위(median) 생산성과 상위 30% 수준의 생산성을 가진 기업의 자본스톡에 따른 목표 투자율과 투자확률을 보여 주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스톡 수준에서 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목표 투자율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본스톡을 증가시킬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자본스톡을 낮출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3. 투자의 비가역성 정도와 자본조정비용의 크기¹⁰⁾

본고의 목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모수들인 투자에 따른 고정비용과 투자의 비가역성의 정도는 모형경제에서 균형으로 도출되는 기업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가 한국 제조업체들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데이터상에서 기업이 유의하게 자본을 조정하지 않는 임계 투자율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상 자본조정비용 문헌에서는 조정비용 관련 모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투자율 분포의 양쪽 극단에 얼마나 많은 비중의 사업체들이 위치해 있는지와 함께 양(+)의 투자율과 음(-)의 투자율 사이에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¹¹⁾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Cooper and Haltiwanger(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체의 투자율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2011~2014년 기간 한국 제조업체에서 관찰되는 투자율 분포는 극단적인 투자율 값을 가지는 기업들의 비중이나 양(+)의 투자율과 음(-)의 투자율 사이의 비대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률 일치(moment matching) 과정에 포함되는 투자율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횡단면 분포상에서 투자율 -20% 이하, -10~-20%, 30~50%, 50% 이상인 사업체들의 비중을 선택하였다.

자본조정 고정비용과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의 크기가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로부터 어떻게 식별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모형(모형경제와 데이터에서의 투자율 분포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모수값을 사용한 모형)과 기본 모형에서 임의로 투자의 비가역성을 제거하거나 자본 구매 시의 고정비용을 제거한 모형들과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를 [그림 III-5]과 [그림 III-6]에서 각각 비교

대부분의 자본스톡 수준에서 생산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목표 투자율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자본스톡을 증가시킬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에 자본스톡을 낮출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10) 기업의 생산함수, 투자 조정비용, 기업의 생산성 및 경제 전체의 생산성의 확률과정, 대표가계의 효용함수 등과 같은 모형의 구체적인 모수 설정 과정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관심 있는 독자는 Cooper and Haltiwanger(2006)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투자의 비가역성을 제거한 경우 분포상에서 자본스톡을 줄이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양(+)¹의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의 비중과 음(-)²의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대칭성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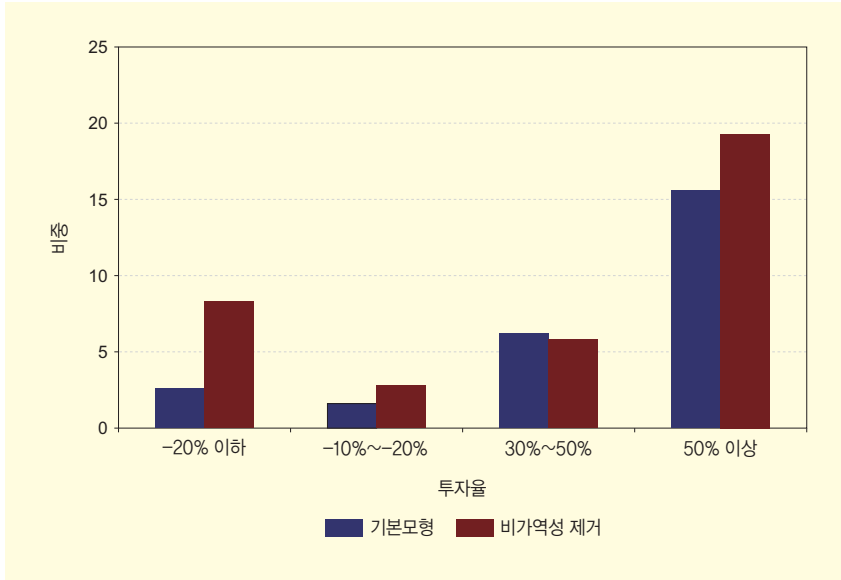
해 보았다.

[그림 III-5]를 살펴보면 투자의 비가역성을 제거한 경우에 기업이 자본스톡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높아지면서 횡단면 분포상에서 자본스톡을 줄이는(음(-)¹) 투자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양(+)²의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의 비중과 음(-)¹의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대칭성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비가역성이 사라지게 되면 기업들이 새로 자본을 구입할 때 장래에 자본을 되팔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0% 이상의 높은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의 비중도 증가하게 된다.

[그림 III-6]에서는 자본스톡을 감소시킬 때의 고정비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자본을 증가시킬 때의 고정비용을 제거했을 때의 투자율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의 최적 투자행위는 작은 투자율로 보다 자주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에서 50% 이상의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30~50%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의 비중은 증가한다. 자본을 증가시킬 때의 고정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이 자본스톡을 감소시킬 때 추후에 자본스톡을 다시 증가시킬 때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율 -20% 이하를 보이는 기업의 비중 역시 증가하게 된다. 개별 기업의 생산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을 증가시킬 때의 고정비용이 자본을 감소시키는 기업의 최적 투자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5] 투자의 비가역성 제거 시 모형의 투자율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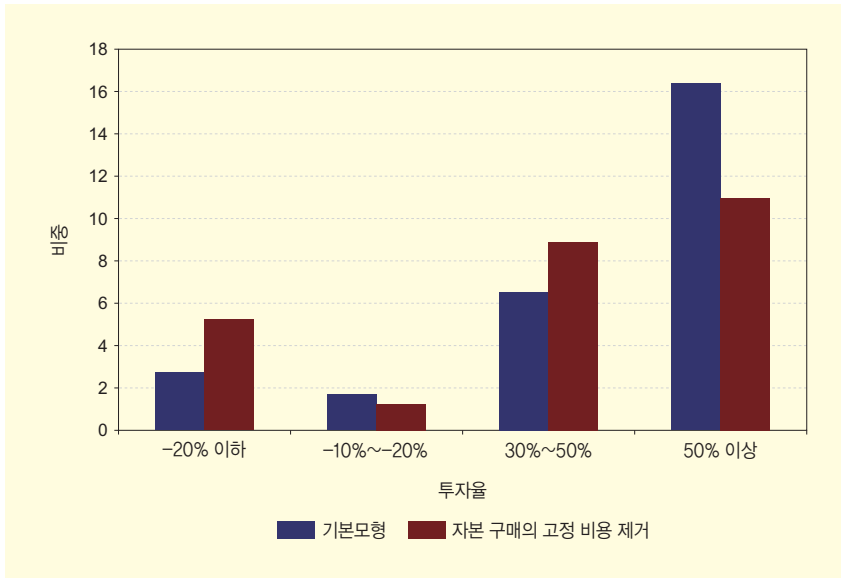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그림 Ⅲ-6] 자본증가 때의 고정비용 제거 시 모형의 투자율 분포 변화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 정도가
미국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비가역성 정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률 일치(moment matching) 과정에서 선택된 자본조정비용을 이용해 계산된 모형경제의 균계상태 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에서 실제로 지불되는 자본조정 고정비용은 경제 전체의 최종재와 산출량의 0.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 정도를 나타내는 자본재를 되팔 때 가격의 할인율은 3.3%로 나타났는데 이는 Cooper and Haltiwanger(2006)에서 미국 제조업체의 투자율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인 1.9%의 할인율보다 큰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 정도가 미국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비가역성 정도보다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II-1〉은 모수 추정 결과 선택된 자본조정비용의 모수값을 이용한 모형경제의 균계상태 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에서의 사업체들의 투자율 분포와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투자율 분포의 모멘트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정량적인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모형경제가 우리나라 제조업체 사업체들의 투자율 횡단면 분포의 중요한 특징인 양(+)의 투자율과 음(-)의 투자율 사이의 비대칭성, 높은 비중의 사업체들이 대규모로 자본스톡을 조정하는 현상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다른 구간은 모형경제와 데이터가 일치하지만 투자율 50% 이상을 보이는 사업체의 비중은 모형경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수준의 양(+)의 투자율과 음(-)의 투자율 사이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투자의 비가역성하에서 기업들이 새로 자본을 구입할 때에 장래에 자본을 되팔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손실에 대해 우려하게 되면서 투자율 50% 이상의 기업 비중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모형과 데이터에서의 모멘트 값들

(단위: %)

모멘트	모형	데이터
투자율 -20% 이하 사업체 비중	2.7	2.4
투자율 -20~-10% 사업체 비중	1.7	1.2
투자율 30~50% 사업체 비중	6.5	6.7
투자율 50% 이상 사업체 비중	16.4	24.0

출처: "모형"은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데이터"는 통계청의 「공업·제조업 조사」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표 III-2〉 모형경제의 모수값들

모수	symbol	값
시간 할인율	β	0.969
자본의 감가상각률	δ	12%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	$\frac{\alpha}{\alpha+v}$	30%
자본 구매의 고정비용	\bar{F}^+	0.0256
자본 처분의 고정비용	\bar{F}^-	0.0135
투자의 비가역성	p_s	0.967
노동 공급의 비효용의 크기	θ	1.912
생산함수의 규모 제감 정도	$\alpha+v$	0.753
개별 기업 충격의 지속성	ρ_x	0.69
개별 기업 충격의 크기	σ_x	0.13
총생산성 충격의 지속성	ρ_z	0.86
총생산성 충격의 크기	σ_z	0.014

IV. 투자율 횡단면 분포가 경기 변동 시점별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최종적인 관심사는 제조업체 기업들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가 경기 변동 주기상의 제조업체 전체의 투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이다. 바뀌서 얘기하자면 개별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이나 고정비용을 직접 고려하는 것이 제조업체 전체 투자의 경기순환주기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특히 경기순환주기상에서 호황과 불황에 투자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유발하게 되는 투자의 크기가 같은가 하는 점을 탐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자본조정비용 문헌의 연구 결과들은 미국과 같이 내수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큰 경제에서는 경제 내 최종재화시장 청산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균형 이자율의 움직임이 기업들의 투자율 횡단면 분포가 경제 전체의 투자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시켜 준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¹²⁾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로 경기순환주기상 단계에는 이자율 국내시장 최종재화시장 청산조건에 대한 반응성이 낮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제조업 전체의 투자의 움직임에 기업들의 투자율 횡단면 분포 형태가 영향을 미칠 가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 개방경제로 경기순환주기상 단계에는 이자율 국내시장 최종재화시장 청산조건에 대한 반응성이 낮을 수 있다.

12) 자세한 논의는 Bachman et al. (2013), Khan and Thomas (2008), House(2014)를 참고하 기 바란다.

기업들이 실제로 자본스톡을 조정할 확률은 다음 기에 희망하는 자본스톡의 수량과 이번 기 말에 감가상각되고 남은 자본스톡의 수량 사이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같은 크기의 투자지원 정책에 대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하게 되는 기업들의 비중이 경기 변동 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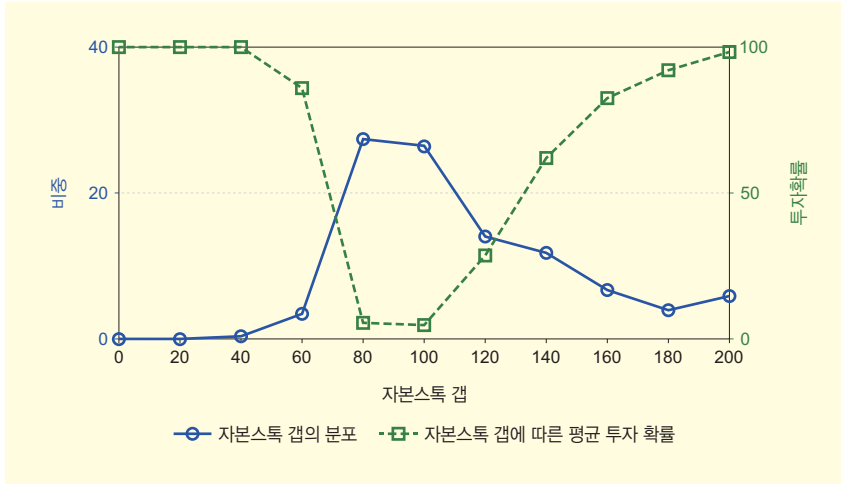
이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 장에서는 경제 전체 총생산성의 변동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기 변동에 있어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제III절에서 제시한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투자지원금 정책에 대한 효과가 경기변동 주기별로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개별 기업별로 투자확률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고용 규모로 분류했을 때 어떤 크기의 기업들에 투자지원금을 집중했을 때 추가적인 투자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다.

1. 경기 변동에 따른 자본스톡 갭의 분포의 변화

기업들이 실제로 자본스톡을 조정할 확률은 다음 기에 희망하는 자본스톡의 수량과 이번 기 말에 감가상각되고 남은 자본스톡의 수량 사이의 비율(자본스톡 갭)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III절에서 봤던 것처럼 균계상태에서 기업들의 투자율 횡단면 분포는 양(+)의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의 비중과 음(-)의 투자율을 보이는 기업들의 비중 사이에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자본스톡 갭의 분포와 연결하면, 자본스톡 갭이 100% 이상인 기업(필요로 하는 자본스톡이 현재 자본스톡보다 큰 기업)과 100% 미만인 기업(필요로 하는 자본스톡이 현재 자본스톡보다 작은 기업) 사이의 비중에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V-1] 균제상태에서 자본스톡 갭의 분포와 투자확률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자본스톡의 분포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충격과 감소시키는 충격이 기업들의 자본스톡 갭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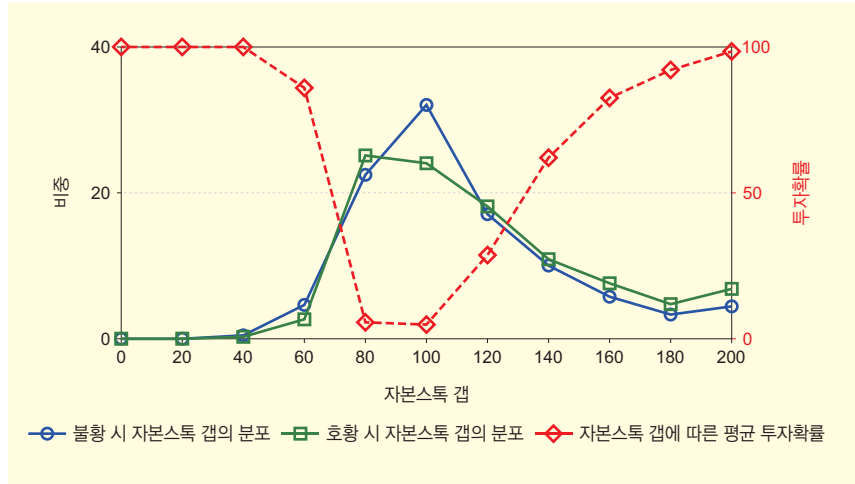
자본스톡의 분포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충격과 감소시키는 충격이 기업들의 자본스톡 갭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림 IV-2]는 경기 순환 주기에는 생산요소 가격들이 균제상태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경제 내 총생산성이 한 단위 표준편차가 증가하거나(호황) 감소하였을(불황) 때에 경제 내 기업들의 자본스톡 갭의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호황기와 불황기에 자본스톡 갭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불황기에는 투자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투자확률 증가의 기울기가 낮은 자본스톡 갭 100% 근처 부분에 보다 많은 비중의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투자지원 정책의 총효과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시점의 횡단면 분포상에서 투자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자본스톡 갭 140% 이상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서 투자확률 증가의 기울기가 높아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지원(subsidy)에 대한 총효과가 호황기에 비해서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호황기와 불황기의 자본스톡 갭 분포의 차이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서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의
투자지원금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IV-2] 총생산성 충격에 따른 자본스톡 갭 분포의 변화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2.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호황과 불황의 정책 효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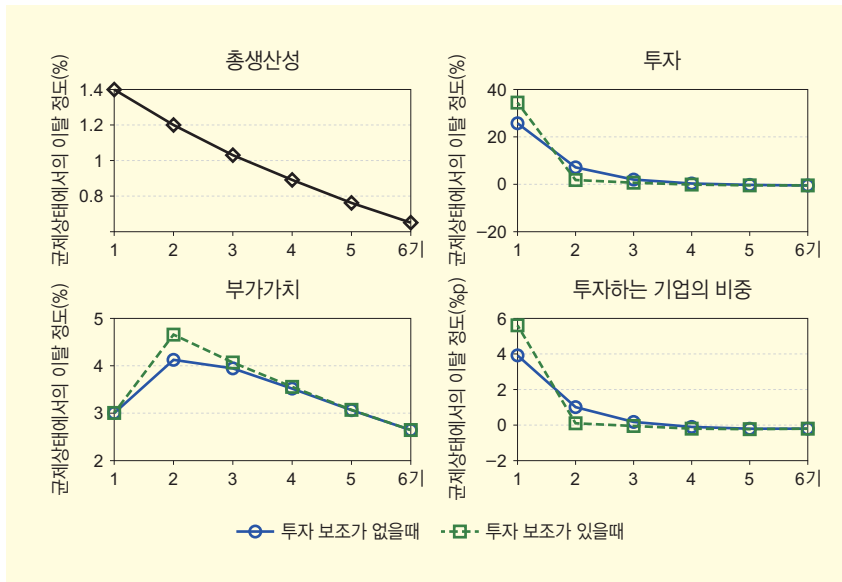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해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와 줄어드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같은 크기의 투자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총 투자 유발 효과가 유의하게 다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 충격이 발생하기 전인 0기에 기업들은 경제의 균제상태의 자본스톡과 개별 생산성 분포에 위치하고 있다. 1기에 총생산성이 한 단위 표준편차만큼 증가 혹은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 수준은 AR(1) 계수를 따라서 균제상태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총생산성 충격이 온 1기에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한해서 투자금액의 0.2%만큼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실행될 경우 경제 전체 투자의 충격반응함수가 정책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다. 특히 총생산성이 증가했을 때(호황)와 감소했을 때(불황) 정책 효과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해서 총생산성 충격에 따른 단기의 경기 변동에서 이자율은 균제상태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균형임금 수준 역시 균제상태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IV-3]은 총생산성이 증가했을 때(호황), [그림 IV-4]는 총생산성이 감소했을 때(호황)의 충격반응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그림에서 실선(투자보조가 없을 때)은 총생산성 충격만 있을 때 해당 변수의 동태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점선(투자보조가 있을 때)은 총생산성 충격과 함께 1기에 투자지원 정책이 함께 실시되었을 때 변수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IV-3] 총생산성 증가 충격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단위: %, %p)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전체 투자의 동태적 반응과 경제 내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비중(extensive margin)의 반응을 살펴보면 자본조정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 투자 움직임의 많은 부분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면 투자에 대한 보조가 실시되는 해당 기에는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가 증가하지만 투자보조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2기 혹은 3기에는 오히려 투자하는 기업의 비중과 함께 전체 투자는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원래 2기 혹은 3기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보조가 실시되는 해당 기에는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투자가 증가하지만 투자보조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2기 혹은 3기에는 오히려 투자하는 기업의 비중과 함께 전체 투자는 감소하는 것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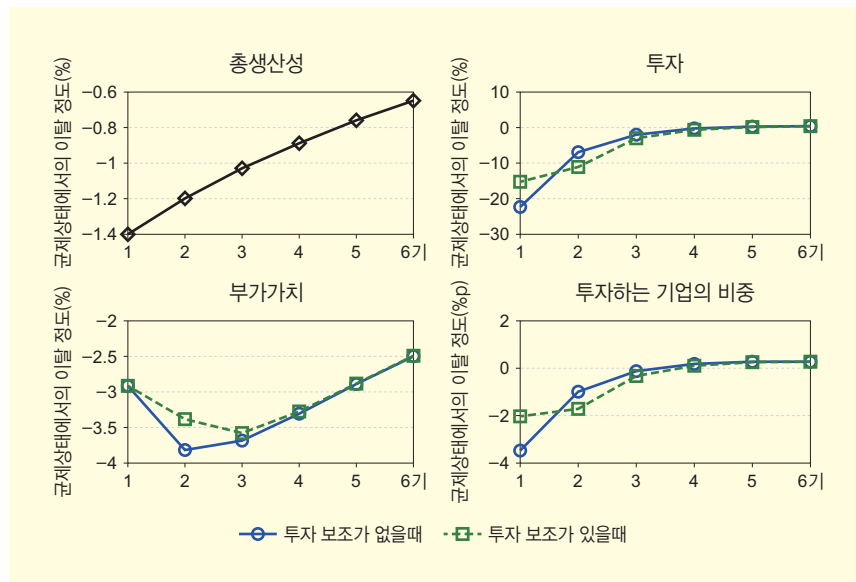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
경제 내 자본스톡 갭 분포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투자보조 정책의
총효과는 경제의 경기순환
국면의 위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보조로 인해 1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시점을 변경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투자보조 정책의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그림 IV-5]에서는 총생산성이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 각각 투자보조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와 시행되지 않았을 때 해당 변수들의 경로 차이를 비교해서 보여 주고 있다. 정책 효과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투자보조 정책이 시행된 1기에 호황일 때 정책으로 인한 전체 투자의 증가량이 불황일 때에 비해 21.3% 높게 나타나고 정책 시행 1년 후까지의 누적 투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9.7% 높게 나타난다. 부가가치의 경우 투자보조가 시행되고 1년 후부터 기업들의 자본스톡의 변화로 인한 생산규모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 시행 1년 후와 2년 후까지의 누적효과를 비교해 보면 호황일 때 투자보조 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가량이 각각 20.4%, 19.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충격반응함수 분석결과는 경제 내 자본스톡 갭 분포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투자보조 정책의 총효과는 경제의 경기순환 국면의 위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IV-4] 총생산성 감소 충격에 따른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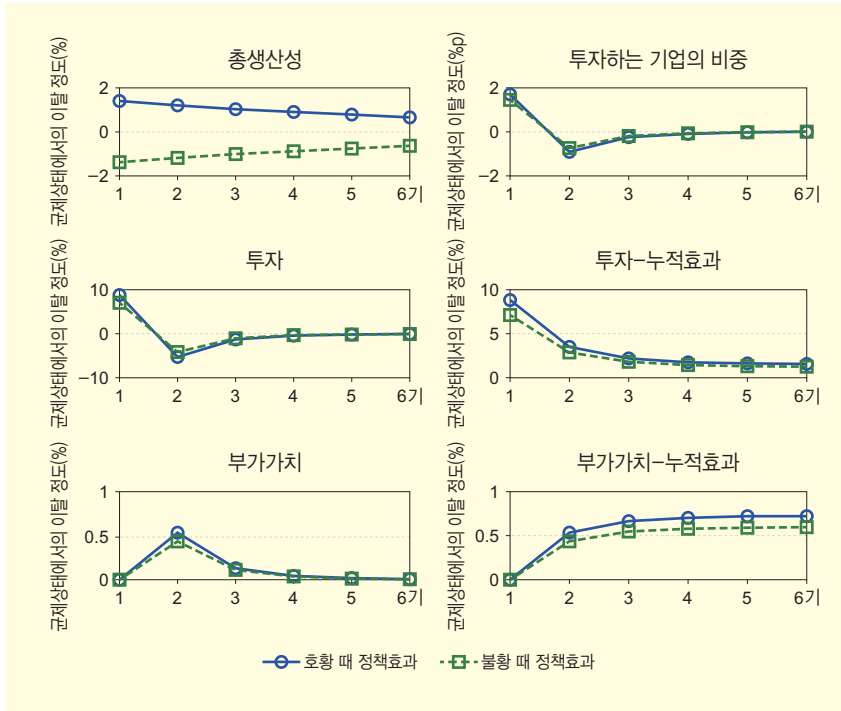
(단위: %, %p)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그림 IV-5] 호황과 불황에서의 정책효과

(단위: %, %p)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고용규모별로 어느 정도 크기의 기업들에 투자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투자지원금에 의한 추가적인 투자유발효과를 가장 키울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3. 기업의 고용규모에 따른 투자보조 정책의 효과

개별 기업별로 현재 자본스톡 갭 수준에 따라서 같은 규모의 투자지원금에도 투자확률 증가 수준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고용규모별로 어느 정도 크기의 기업들에 투자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투자지원금에 의한 추가적인 투자유발효과를 가장 키울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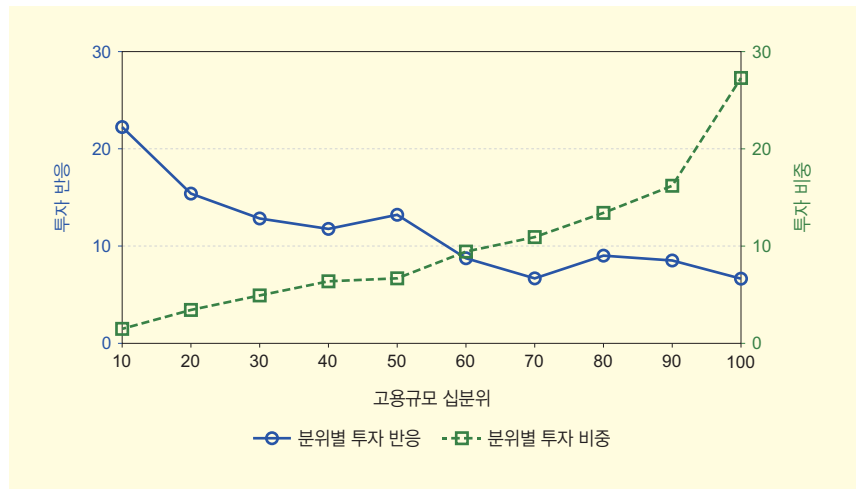
[그림 IV-6]은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모든 기업들에 균등하게 투자금액의 0.2%만큼 지원해주었을 때 기업의 고용규모 10분위별로 투자보조에 따른 분위별 투자의 증가율과 균제상태에서 각 고용규모 분위가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투자보조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기업의 고용 규모는 기업의 자본스톡과 생산성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주어진 기업의 생산성 수준에서 자본스톡이 큰 기업은 비

고용규모가 큰 기업들일수록 투자보조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거나 투자보조에 상관없이 투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투자보조에 대한 반응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교적 최근에 대규모의 투자를 실행했을 확률이 높아 자본스톡 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므로 투자보조에 대한 반응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반대로 주어진 기업의 자본스톡 수준에서 높은 생산성이 실현된 기업들은 목표 투자량이 높기 때문에 투자지원금에 상관없이 투자를 실행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즉, 고용규모가 큰 기업들일수록 투자보조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거나 투자보조에 상관없이 투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투자보조에 대한 반응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IV-6] 고용규모별 투자보조에 대한 반응

(단위: %)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고용규모별로 기업들의 투자보조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서 고용규모가 작은 기업에만 집중해서 투자보조를 지원하거나, 큰 기업에만 지원하는 경우, 모든 기업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투자지원 정책의 충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총생산성이 낮아지는 충격이 왔을 때 세 가지 서로 다른 투자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스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한해서 투자금액의 0.2%만큼 지원
- (ii) 고용규모 하위 70%의 기업들이 균제상태에서 경제의 전체 투자 중

43.2%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위 70%의 기업들에만 자본스톡을 증가시킬 경우에 한해서 투자금액의 0.46% $(=0.2 \times \frac{1}{0.432})$ 를 지원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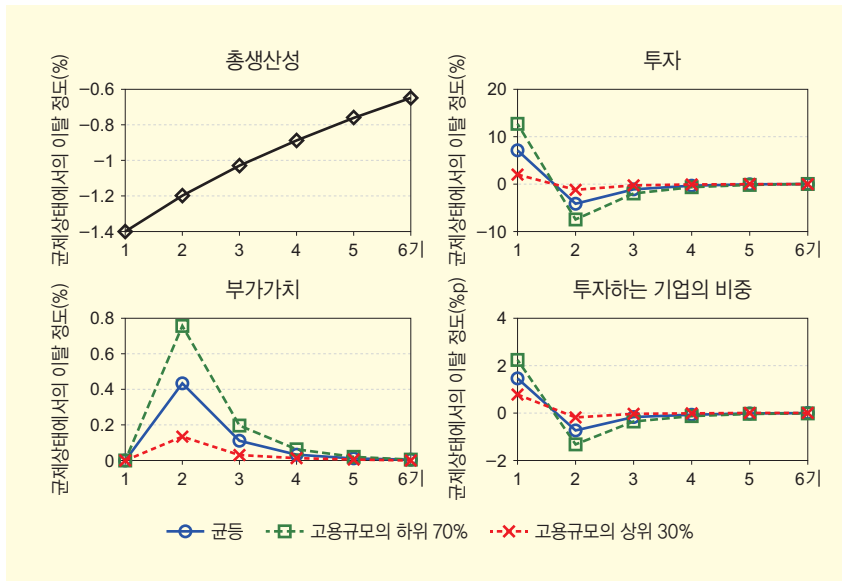
- (iii) 고용규모 상위 30%의 기업들이 균제상태에서 경제의 전체 투자 중 56.8%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30%의 기업들에만 자본스톡을 증가시킬 경우에 한해서 투자금액의 0.35% $(=0.2 \times \frac{1}{0.568})$ 를 지원하는 정책

[그림 IV-7]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투자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각 변수들의 동태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규모 하위 70% 기업들에 집중해서 지원했을 때에 총투자의 반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투자지원 정책이 시행 되었을 때 각 변수들의 동태적 움직임을 보면, 고용규모 하위 70% 기업들에 집중해서 지원했을 때에 총투자의 반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고용 규모별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

(단위: %, %p)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투자보조금 지급의 정책적 효과가 커지기 위해서는 지급된 총보조금 중에서 실제로 보조금 지급이 없었더라면 실행되지 않았을 투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이다. <표 IV-1>에서는 각 정책별로 지급된 총보조금 중에서 보조금 지급과 상관없이 실행되었을 투자에 지급된 투자보조금(준한계보조)

투자보조의 지원 방식에 상관없이 투자보조 지급 1년 후에는 투자보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전체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 실제로 보조금 지급이 없었더라면 실행되지 않았을 투자에 지급된 보조금 (한계보조)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용규모 하위 70%에 집중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한계보조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보조의 지원 방식에 상관없이 투자보조 지급 1년 후에는 투자보조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전체 투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보조금이 지원된 시점에서의 정책의 효과가 클수록 1년 후에 투자 감소효과 역시 크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투자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투자의 증가 폭이 높다는 것은, 정상적인 투자순환 주기에 따르면 1년 내지 2년 후에 투자를 해야 할 기업들이 투자보조금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투자를 앞당기는 비율이 높았음을 의미하므로 1년 내지 2년 후의 투자의 감소 폭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표 IV-1〉 고용 규모에 따른 투자지원정책의 효과

변수	정책	균등	고용규모 하위 70%	고용규모 상위 30%
총투자보조(균제상태 총투자 대비 %)		0.2	0.25	0.18
준한계(inframarginal)보조(총투자보조에서 비중 %)		93	85	96
한계(marginal)보조(총투자보조에서 비중 %)		7	15	4
투자 효과-1기(균제상태 총투자 대비 증가 %)		7.1	12.6	2.0
투자 효과-2기 누적(균제상태 총투자 대비 증가 %)		2.9	5.1	0.8
부가가치-2기(균제상태 총부가가치 대비 증가 %)		0.43	0.76	0.13
부가가치-3기 누적(균제상태 총부가가치 대비 증가 %)		0.54	0.95	0.16

출처: 모형경제를 이용해서 저자 계산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횡단면 분포에서 관찰되는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변동주기상 호황인지 불황인지에 따라서 투자지원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광업·제조업 조사」를 이용해서 한국 제조업체 사업장들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자본조정비용 문헌들에서 통상 자본조정의 고정비용과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의 증거로 제시하는 분포상의 특

징들이 명확하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에서 관찰된 한국 제조업체들의 투자율 분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경제를 이용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투자지원 정책이 단기에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총투자의 크기는 경제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에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투자율의 분포가 비대칭적이어서 특히 불황일 때에는 투자지원 정책에 반응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추가적으로 경제 전체의 투자 변동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통한 변화(extensive margin)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지원 정책을 펼 때 기업들의 투자순환주기상의 위치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결과는 모형경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가정들하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에 모형의 분석결과로 나온 구체적인 수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KIP](#)

〈참고문헌〉

오지윤,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비교』, 제7장, 우리 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4, pp. 227~282.

조태형, 「자산별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률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부동산포커스』, 통권 47호,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2012, pp. 27~36.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Bachmann, Ruediger, Caballero, Ricardo J. and Engel, Eduardo M., “Aggregate Implications of Lumpy Investment: New Evidence and a DSGE Model,”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5(4), 2013, pp. 29~67.

Castro, R., G. L. Clementi, and Y. Lee, “Cross-Sectoral Variation in The Volatility of Plant-Level Idiosyncratic Shocks,” *Journal of Indust-*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광업·제조업 조사」를 이용해서 한국 제조업체 사업장들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를 살펴본 결과 자본조정의 고정비용과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의 증거로 제시하는 분포상의 특징들이 명확하게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rial Economics, 63(1), 2015, pp. 1~29.

Cooper, Russell W. and Haltiwanger, John C., "On the Nature of Capital Adjustment Cost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3(3), 2006, pp. 611~633.

House, Christopher L., "Fixed Costs and Long-Lived Investment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8, 2014, pp. 86~100.

Khan, Aubik, and Julia K. Thomas., "Idiosyncratic Shocks and the Role of Nonconvexities in Plant and Aggregate Investment Dynamics," *Econometrica*, 76(2), 2008, pp. 395~436.

Lee, Y., "The Importance of Reallocations in Cyclical Productivity and Returns to Scale: Evidence from Plant-level Data," Working paper 0509,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2005.

〈부록〉

1. 모형경제의 모수 설정

가. 데이터에서 직접 계산 가능한 모수들

대표가계의 시간 할인율(β)은 2010~2015년 기간 동안 한국의 평균 연간 실질이자율 값인 3.2%에 대응하는 0.969로 설정하였다.¹³⁾ 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δ)은 조태형(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물 및 구축물 3.5%, 기계장치와 선박 및 차량 운반구 17.9%를 「광업·제조업 조사」의 2011~2014년 기간 동안의 해당 자본스톡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12%로 설정하였다.

생산함수에서 자본의 비중($\frac{\alpha}{\alpha+v}$)은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자본비용과 노동비용을 계산한 뒤 자본과 노동비용의 합 중에서 자본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용해서 계산된 30%로 설정하였다. 급여총액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것을 노동비용으로 간주하였고 종사자에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의 급여총액과 유급종사자 수를 이용하여 평균 급여액을 계산한 뒤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들에게도 1인당 평균 급여액만큼만 지

13) 실질이자율 값은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실질이자율 값을 이용해서 계산

급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본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오지윤(2014)을 따라서 자본재별 감가상각률과 실질이자율을 이용해서 계산하였다.

나. 모형과 데이터의 적률 일치(moment matching)를 이용한 모수들

모형의 균제상태에서의 적률을 이용한 모수들

자본조정 고정비용(\bar{F}^+ , \bar{F}^-), 투자의 부분적 비가역성(p_s), 개별 기업의 생산성 분포(ρ_x , σ_x), 생산함수의 규모 체감 정도($\alpha + \nu$), 노동공급으로부터의 비효율의 크기(θ)의 값은 모형경제의 균제상태에서의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와 대표가계의 노동공급 시간을 데이터에서의 해당 값과 가능한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투자율의 횡단면 분포의 특징을 묘사하기 위해서 선택한 모멘트들은 횡단면 분포상에서 투자율 50% 이상, 30~50%, -10~-20%, -20% 이하인 기업들의 비중을 선택했다. 데이터상에서 기업들이 유의하게 자본을 조정하지 않는 임계 투자율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상 자본조정 비용 문헌에서는 조정비용 관련 모수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투자율 분포의 양쪽 극단에 얼마나 많은 비중의 사업체들이 위치해 있는지와 함께 양(+)의 투자율과 음(-)의 투자율 사이에 기업들의 비중이 얼마나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¹⁴⁾ 정확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긴 하지만 Cooper and Haltiwanger(2006)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체의 투자율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2011~2014년 기간 한국 제조업체에서 관찰되는 투자율 분포는 극단적인 투자율 값을 가지는 기업들의 비중이나 양(+)의 투자율과 음(-)의 투자율 사이의 비대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률 일치 과정에 포함되는 투자율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포함하였다.

모형의 균제상태에서의 적률을 이용한 모수들

경기 순환에 관련된 정량적 분석에서는 총생산성 충격의 확률 과정에 대한 모수들이 필요한데 이들은 모형경제의 경기순환 측면의 적률을 이용해서 결정하였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국민계정상 제조업체의 고정자본의 형성(실질, 연간)의 1990~2014년 기간에 HP filtered 시계열의 AR(1) 계수와 변동성을 모

14) 관심있는 독자는 Cooper and Haltiwanger(2006)의 논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형경제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오는 해당 통계치의 값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총생산성 충격의 확률 과정에 대한 모수값들을 선택하였다.

적률 일치 결과

〈부표〉에서는 모수 설정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모수값에서 도출되는 모형경제에서의 적률과 데이터에서의 적률을 비교하고 있다. 선택된 모수값들을 살펴보면 한국 제조업체의 규모수확(return to scale) 정도는 0.75로 Lee(2005)에서 추정된 미국 제조업체의 규모수확(return to scale) 정도인 0.83~0.91에 비해서 규모체감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업의 생산성 충격의 지속성(AR(1) 계수)은 관련 문헌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체 생산성 충격의 지속성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정도였다.¹⁵⁾

모수추정 결과 선택된 자본조정비용의 모수값을 이용한 모형경제의 균제상태 균형(steady state equilibrium)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자본조정비용은 경제 전체의 최종재화 산출량의 0.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모형과 데이터에서의 모멘트 값들

모멘트	모형경제	데이터
투자율 -20% 이하 비중	2.7%	2.4%
투자율 -20~-10% 비중	1.7%	1.2%
투자율 30~50% 비중	6.5%	6.7%
투자율 50% 이상 비중	16.4%	24.0%
대표 가계의 노동 공급 시간	34%	34%
제조업 투자의 AR(1) 계수	0.286	0.287
제조업 투자의 변동성	0.125	0.130

15) Cooper and Haltiwanger (2006)은 미국 제조업체 데이터로 구조적인 모형을 이용한 추정 결과 (structural estimation) 0.92의 값을 얻었고, Castro et al.(2015)은 회귀분석을 이용한 추정결과 0.44의 추정값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 편성

-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2018년도 예산안
최한경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과장
-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한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2018년도 예산안 편성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2018년 예산안 편성의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편집자 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2018년도 예산안



최한경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과장

우리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는 ‘저성장 고착화·양극화 심화’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물적자본 투자를 기반으로 한 양적 성장전략은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의 확대를 야기하였다.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내 삶이 바뀌는” 2018년 예산안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I. 2018년 예산안 개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7.1% 증가한 429,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경상성장률(내년도 전망치)을 상회하는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다. 무엇보다 2018년은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되는 새 정부 정책과제를 이행하는 첫 해인만큼,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소요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훈·보상 확대 등 서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적인 정책소요도 충분히 담아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17년도 세법개정안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과 양적·질적 지출 구조 조정으로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그 결과 2018년도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1.6\%$, 국가채무 비율은 39.6%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는 SOC 등 물적 투자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재구조화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사상 최고 수준인 12.9%로 전년 대비 증가하며, 정부 총지출의 1/3 수준을 넘어선다. 국방 분야도 방위

력 개선과 장병 복지 투자 확대로 '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의 증가율을 보인다. 반면, SOC·산업·문화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를 내실화하였다.

II. 지출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성과, 집행수준, 투자 우선순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지출은 감축하거나 폐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목표를 2조원 이상 초과한 11.5조원의 구조조정 실적을 달성하였다.

그간 상당한 스톱이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성과가 부진한 복지사업 등도 구조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SOC는 '17년 예산안에 비해 감축폭이 확대되고, 문화·환경 분야는 확대 기조에서 감축 기조로 전환되는 등 재원배분 모습도 변화하였다.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첫 해 확실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추가적 정책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적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협력적 네트워크 지원 등을 통한 렌트 배분체계 개선, 대학창업·ODA 분야 융합예산 편성,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확대 등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하였다. 정부는 향후 재정지원의 공공성 제고, 수혜자 관점의 전달체계 개선 등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 실시,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재정사업 구조 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III. 투자의 중점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우리 고용시장은 연간 실업률이 3년간, 청년 실업률이 4년간 지속 상승하는 등 실업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에 일자리 예산을 12.4%,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9% 확대하여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학·구직·재직」 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000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분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추가 채용 지원제도를 2만명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도 6만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 기술인의 R&D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출산이나 육아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비정규직 고용안정에도 힘쓴다. 국민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직 공무원을 1.5만명 추가 충원하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인건비·고용

부담금 등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여 일자리의 질도 높ی겠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통상임금의 80%로 급여를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첫 아이든 둘째 아이든 상관없이 모두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및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실업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실업안전망을 강화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하여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 서민 생활비 경감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소득불평등 완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만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득 조건 없이 지급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지급하던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54만 가구를 추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일자리 7.7만명, 자활사업을 1,500명 확대하고, 청년 희망키움통장을 신규 도입하여 일하는 복지를 지원한다. 또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참전수당을 기존에 비해 월 8만원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최초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 생활비 경감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

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지원하는 등 의료비 부담도 경감한다. 또한 전국 252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을 확충(192개소)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매출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 규모를 결정하고 사후관리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2년간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투자한다. 전국에 신규 도시재생 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능을 재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동서 도로 및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물류교통망을 추가 구축한다.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우리 경제는 추격형 성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가운데, 4차산업 혁명 관련 핵심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에 머무르는 등 4차 산업혁명 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규제 전면 개선과 함께 전략적 재정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투자를 1.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AI, ICBM, 지능형 센서·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및 공용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산 협력체의 공동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네트워크·생태계 중심 지원을 통해 혁신형 생산·유통·성과가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2,100개의 스마트 공장을 추가 보급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 등을 위한 용자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ICT 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한다.

혁신성장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하여 창업저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반랩인 상상구현터 70개와 전문랩인 창업연결터 5개를 구축한다. 또한 각 지역의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한다.

각종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데에도 투자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혁신성장을 위한 자원을 공급하고 혁신성장에 따르는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 투자 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용자를 1,8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혁신형 자본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 연수를 1,200명으로 확대하고, 학교 밖 SW 교실도 기존 300개

에서 600개로 2배 확대하는 등 혁신 인적자본 확충에 힘쓴다.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북핵 등 대북리스크 확대에 의해 안보 관련 불안감이 확대되고, 가뭄·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와 AI·구제역 등 가축방역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등 안전 분야에 투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방비를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전년 대비 6.9%로 대폭 확대한다.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Kill-Chain, KAMD, KMPR의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F-35A)의 차질없는 인수를 위한 지원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를 대비하여 무인기 탐지 관련 방공 레이더 등 방공 전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병 봉급을 2배 인상하고, 급식비 단가를 끼니당 7,855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동원훈련 보상비 50% 인상, 동원 훈련장 내 온수 샤워장 및 세탁실 설치 확대에 예비군 훈련시설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수를 2배 수준인 12만대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차의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또한,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기존 2개에서 13개로 대폭 증가시키고, 종합대기 측정소 및 집중측정소를 신규 운영하여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100억원(예비비)을 신규 정부출연하고, 피해자 보건센터를 4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도 지원하겠다.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항생제 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정성 조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축사시설을 현대화하여 가축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밀집·밀식사육 환경을 개선한다. 달걀 등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도 지원한다.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수계를 연결하는 등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신규 지원하여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

5. 인적자원 개발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출생아 수가 4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바, 주거·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3만호를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신설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를 월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모성보호에 힘쓴다. 또한 국공립 450개소, 공공형 150개소 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을 확충한다.

교육이 희망사다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교육 관

련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2.1조원)하여 국가책임을 확대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교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기존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 50명 지급,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800명 신규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예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해외 유학 및 연수기회도 대폭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非대상자 등에 대한 재직자 능력개발 지원 등 평생·직업 교육도 소홀히하지 않겠다.

고등교육 질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 지원을 1.5조로 확대한다. 또한 거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1천억원 지원하여 4배 이상 확대한다.

IV. 맺음말

2018년 예산안은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 등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져 있다. 금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적기 확정되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¹⁾



한중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서론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지난 9월 1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실질적으로 처음 편성한 예산과 중기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새 정부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물적 자본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확대,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등 새 정부 정책과제와 경

제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기조를 설정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2018년 예산안」에서는 물적 자본 중심의 투자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1)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2) 소득주도 성장 지원,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5) 인적자원 개발 등 5개 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도 이와 같은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새 정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일자리, 복지, 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어 있으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위

1)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2018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문가 토론회」(2017.9.16.)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음

한 재원 마련을 위해 zero-base에서 양적·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정 운용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국민 참여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재정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II.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표 1〉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단위: 조원, %)

	'17년		'18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	
	예산	추경	예산	'17년 대비 증가율(%)		'19년	'20년		'21년
				예산	추경				
총수입	414.3	423.1	447.1	7.9	5.7	471.4	492.0	513.5	5.5
국세	242.3	251.1	268.2	10.7	6.8	287.6	301.0	315.0	6.8
세외	26.4	26.4	26.7	1.1	1.1	28.1	27.4	26.7	0.3
기금	145.6	145.6	152.2	4.5	4.5	155.7	163.6	171.8	4.2
총지출	400.5	410.1	429.0	7.1	4.6	453.3	476.7	500.9	5.8
예산	274.7	280.3	295.0	7.4	5.2	313.3	328.1	343.4	5.7
기금	125.9	129.8	133.9	6.4	3.2	140.0	148.5	157.5	5.8
의무	197.0	201.1	217.9	10.6	8.4	233.3	246.5	260.1	7.2
재량	203.5	209.0	211.0	3.7	1.0	220.0	230.2	240.9	4.3
조세부담률	18.8	19.3		19.6		19.9	19.9	19.9	
국민부담률	25.1	25.7		26.1		26.2	26.4	26.4	
관리재정수지	△28.3	△28.9		△28.6		△33.0	△38.4	△44.3	
(GDP 대비)	(△1.7)	(△1.7)		(△1.6)		(△1.8)	(△2.0)	(△2.1)	
통합재정수지	13.7	13.0		18.1		18.0	15.3	12.5	
(GDP 대비)	(0.8)	(0.8)		(1.0)		(1.0)	(0.8)	(0.6)	
국가채무	682.4	669.9		708.9		749.1	793.0	835.2	
(GDP 대비)	(40.4)	(39.7)		(39.6)		(39.9)	(40.3)	(40.4)	
명목 성장률	4.6(17.7.25)			4.5		4.9	4.9	4.9	

- 주: 1. '17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16년은 추경 기준. 단, 국가채무는 전망치 기준
 3. 연평균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
 4. 조세(국민)부담률에서 지방세부담률은 '16년 4.6% 수준과 동일 전제
 5. '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추경 확정기준으로 39.6%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8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새 정부 정책과제를 적극적·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429조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 규모는 '17년 본예산 대비 7.1%(추경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18년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5%보다 2.6%p 높은 수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지출규모의 통제 가능성 정도에 따라 재량지출과 의무지출²⁾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8년도 예산에서 재량지출은 211.0조원, 의무지출은 217.9조원으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을 처음으로 초과하였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증가율은 중기적으로 7.2%와 4.3% 수준을 유지한다. 지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증가율을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편성한 것과는 달리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두 부분의 지출 증가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³⁾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18년도에 $\Delta 28.6$ 조원(GDP 대비 $\Delta 1.6\%$)으로 전망되고, 중기적으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Delta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7년 본예산 대비 0.8%p 개선된 39.6%로 전망되고, 중기적

으로도 40% 수준에서 관리 가능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을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8년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재정수입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18년도 재정수입은 '17년도 본예산(414.3조원) 대비 7.9%, 추경(423.1조원)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8년 재정수입 확대는 국세수입 증가('18년도 국세수입은 '17년 본예산(242.3조원) 대비 10.7%, 추경(251.1조원) 대비 6.8% 증가)에서 비롯되는데, 이 같은 국세수입 호조세는 '16년과 '17년 국세수입 증가로 인한 기저 상승(base up)이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적으로도 재정수입과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7~'21년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16~'20년 중기 계획보다 0.5%p 증가한 5.5%p로 '21년에는 재정수입이 513.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동 기간 동안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1.3%p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상승 역시 '16년과 '17년 국세수입 호조와 '17년 경상성장률 개선⁴⁾ 등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추세가 '1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세수입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었다. 국세수입 증가 추세는 '19년 이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2018년

2)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의해 단가, 대상 등이 결정되므로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지출임

3) 지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13~'17	'14~'18	'15~'19	'16~'20	'17~'21
재량지출	1.3	2.0	$\Delta 0.7$	1.6	4.3
의무지출	6.9	7.1	6.1	5.5	7.2

4) 「2017년 예산안」 편성 당시 '17년 경상성장률은 3.7~3.9%로 전망했으나, 최근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면서 '17년 경상성장률은 4.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세법개정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5.5조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국세수입 증가를 뒷받침한다. 세법 개정 효과의 실현 여부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경상 GDP 성장률 하락⁵⁾ 등으로 인해 중기 세입 전망의 실현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은 중점 투자 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3) 혁신 성장 동력 확충,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5) 인적자원 개발 등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다(〈표 2〉).

〈표 2〉 2018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사람중심의 따뜻한 재정운영				
1. 일자리 창출	2. 소득주도성장	3. 혁신성장	4. 안전한 국가	5. 인적자원개발
(1) 민간일자리 창출	(1)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확충	(1) 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1) 자주국방 역량 강화	(1) 저출산 극복
(2) 공공일자리 확대	(2) 서민 생계비 경감	(2) 경제 전반 확산	(2) 생활안전 투자 확대	(2) 교육 희망사다리 마련
(3) 일자리 질 제고	(3) 소상공인 지원	(3) 규제 혁신	(3) 평화통일 기반 구축	(3) 고등교육 질 제고
(4) 한국형 고용안정 유연모델	(4) 지역 균형 발전	(4) 혁신자본 공급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표 3〉 2018년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결과

부문	복지	교육	행정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
수준(조원)	△1.4	△0.3	△0.5	△1.5	△0.1	△0.3
'17년 예산 대비	△1.1%	△0.5%	△0.8%	△3.7%	△2.2%	△1.7%
부 문	R&D	농림	산업	환경	문화	SOC
수준(조원)	△1.0	△0.6	△1.0	△0.5	△0.5	△4.4
'17년 예산 대비	△5.1%	△3.1%	△6.3%	△7.2%	△7.2%	△19.9%

출처: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5) 전문가 간담회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deflator 내의 항목 간 decoupling 현상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논의가 진행됨. 실질 성장률이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경상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세수입에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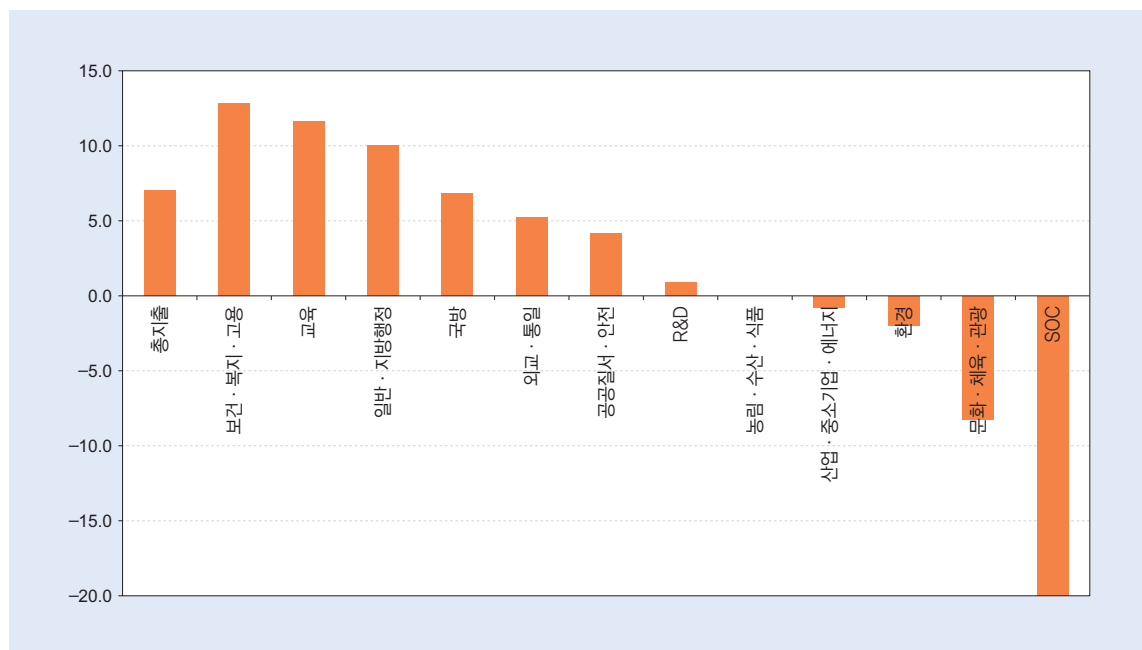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12대 분야별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11.5조원('17년 예산 대비 2.9%)의 재원을 확보하여 분야별로 재분배한다(〈표 3〉). 지출구조조정은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데,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분야 등에서 '17년 예산 대비 감축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18년 예산안에서 분야별 지출 증가율(그림 1)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교육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총 지출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편성된 반면, SOC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환경 분야 등은 감축된다. 사람 중심 지속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 재원 역시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대폭 전환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SOC 부문은 '18년

에 20% 감축을 통해서 SOC 지출수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나 교육 분야 등 인적 자본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가장 높게 편성한 것이 새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분야별 지출 증가율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수입 증가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17년 대비 5.2조원 증가한 요인도 있으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2018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 증가율

(단위: %)



〈표 4〉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가율
◆ 총지출	400.5	429.0	471.4	492.0	513.5	5.5
1. 보건·복지·노동	129.5	146.2	159.4	172.7	188.4	9.8
2. 교육	57.4	64.1	68.1	72.7	75.3	7.0
3. 문화·체육·관광	6.9	6.3	6.4	6.5	6.6	△1.0
4. 환경	6.9	6.8	6.7	6.6	6.5	△1.6
5. R&D	19.5	19.6	19.7	19.8	20.0	0.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15.7	15.4	15.1	△1.5
7. SOC	22.1	17.7	17	16.5	16.2	△7.5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19.5	19.4	19.2	△0.5
9. 국방	40.3	43.1	45.3	47.7	50.4	5.8
10. 외교·통일	4.6	4.8	4.9	5.0	5.0	2.3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19	19.2	19.5	1.9
12. 일반·지방행정	63.3	69.6	74.2	77.9	81.3	6.5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18년 예산안에 나타난 분야별 자원 배분 방향은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유지된다. 중기적으로도 12개 분야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나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는 향후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SOC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등 5개 분야는 감축 추세로 편성되었다. 분야별 지출 증감률을 중기적 시계에서 살펴보면, 지출 확대 또는 감축 분야에 대해서 2018년에 집중적으로 반영한 후 중기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이나 교육 분야 등은 '18년도에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편성하였고, 지출

감축 분야인 SOC나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18년도에 큰 폭으로 감축시킨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증가나 감축 폭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유지되도록 편성하였다. 반면, 여타 분야들은 '18년 증가율과 연평균 증가율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Ⅲ. 역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과의 비교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방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향후 운용 방안이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의 특징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과거 정부들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이나 분야별 자원 배분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⁶⁾

6)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최초로 수립되었고, 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거정부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로 국한한다. 각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표 5〉 과거 정부별 재정총량 증가율

(단위: %)

	예산년도				중기 연평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증가율								
재정수입	5.9	7.5	△0.5	7.9	7.4	7.5	4.1	5.5
국세수입	7.0	8.5	1.0	10.7	8.3	6.4	5.8	6.8
재정지출	6.0	6.5	4.6	7.1	6.3	6.2	4.0	5.8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0.1	△1.0	△1.8	△1.6	△0.6	△0.7	△0.9	1.8
통합재정수지	0.7	2.1	0.9	1.0	1.8	2.3	1.8	0.8
국가채무	28.9	32.3	36.5	39.6	28.3	31.9	35.8	40.1

주: 1. 예산년도 증가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차년도 대비 2차년도 증가율

2. 중기 평균 증가율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5년 연평균 증가율

출처: 기획재정부,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08~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새 정부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을 높은 재정지출 증가율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안 지출 증가율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도 연평균 증가율 5.8%는 과거 정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최근 경상성장률이 4% 수준으로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게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재정수입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첫 해 재정수입과 국세수입 증가율은 각각 7.9%와 10.7%로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높은 수입 증가율을 유지

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성장률이 4%대로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전망하는 연평균 증가율 5.5%는 높은 수준으로 향후 재정 지출 확대를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의미하는 국가채무 측면에서는 과거 정부보다는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취임 첫 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 결과 국가채무 수준이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 국가채무 수준을 관리해서 중기적으로는 첫 해 국가채무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중기 계획을 수립하였다. 반면, 새 정부는 국가채무가 중기 시계에서 첫 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재정운용을 적극적으로 하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정책의도가 이해되는 편성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

시에 달성하는 과정에서 매년 중기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했던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분야별 자원 배분은 각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내준다. 특히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역대 정부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표 6>과 같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하였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배분과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경기가 회복된 후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 대한 대응이 초점이 되었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과거 정부는 당시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맞춰 재정을 운용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복지 확대⁷⁾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재정운용 방향이다.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은 과거 정부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일자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복지 분야에 포함시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비해 더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 분야를 성장과 연계시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

<표 6>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배분

정부	중점 투자 분야	자원 배분 방향
노무현 정부	(1)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 인력 양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R&D, 교육 투자 초점
	(2) 국민기본생활 안정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최소한의 기본 생활보장
	(3) 공공서비스 강화	자주 국방 중점 지원, 국가 안전·위기 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이명박 정부	(1) 성장잠재력 확충	녹색성장, 소재·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2) 서민생활 안정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공 및 일자리 창출
	(3) 국가 위상 제고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 개최, ODA 사업을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박근혜 정부	(1) 성장잠재력 확충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충
	(2)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안전망을 구축, 일자리 창출에 초점
	(3) 안전 분야 자원 배분	-
문재인 정부	(1)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2) 소득주도 성장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3) 혁신성장분야 자원배분	기초연구 대한 투자 적극 지원, R&D 투자 효율화

7) 복지 관련된 방향은 정부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표 6> 참조) 그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나 방식이 달라진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기본생활 안정으로 표현하면서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명박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화로 표현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대상을 집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로 제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개념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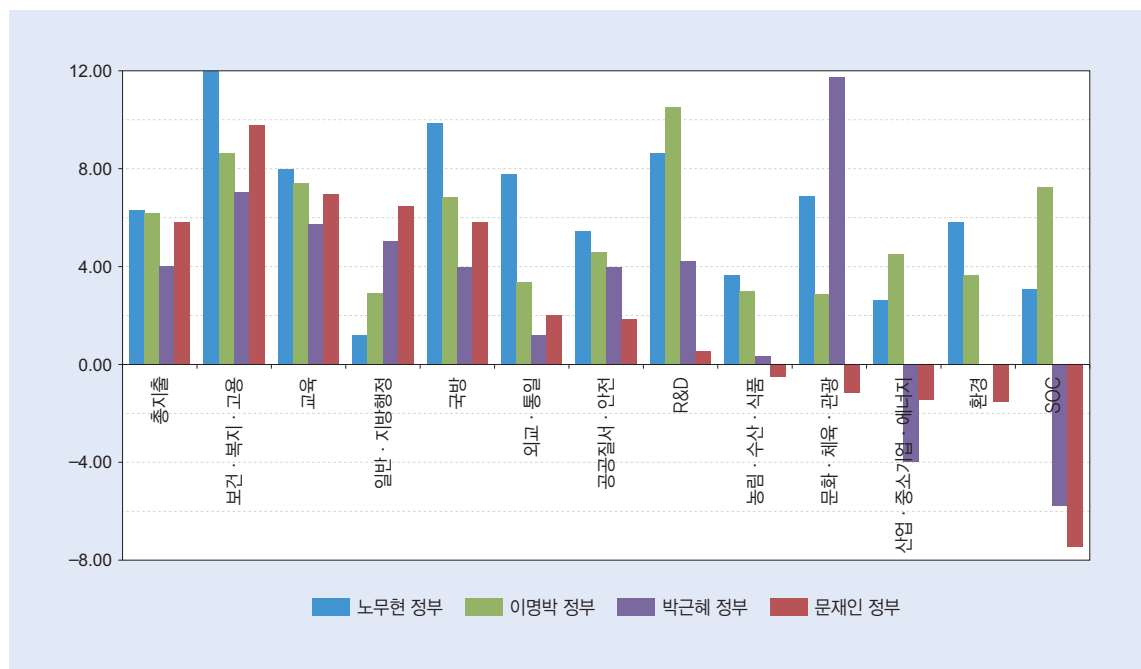
는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과거 정부들이 취했던 성장 전략과의 차별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전통적인 성장 동력 확충 방법인 물적 투자에서 탈피해 인적 투자로 전환하는 모습이 재정운용 기본 방향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각 정부들의 재정운용 기본 방향은 분야별 자원 지출 증가율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그림 2). 모든 정부에서 국민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⁸⁾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부분에서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⁹⁾ 새 정부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높게 계획하였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뿐만 아니라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조정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SOC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지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강도가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과거 정부별 분야별 자원 배분-중기 연평균 증가율

(단위: %)



8)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12.1%, 이명박 정부 8.7%, 박근혜 정부 7.0%, 문재인 정부 9.8%이다.

9) 노무현 정부는 국방 분야(9.9%)와 R&D 분야(8.7%), 이명박 정부는 R&D 분야(10.6%)와 SOC 분야(7.3%), 박근혜 정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11.8%) 등이다.

IV.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민 참여

새 정부는 재정총량이나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뿐만 아니라 재정운용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민이 예산에 직접 참여하여 제안·심사·결정하는 국민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 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자치단체들에서 운영 중인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국가예산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킨 개념으로 2018년에는 6개 사업(422억원)에 대해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서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예산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¹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준의 제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예산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국가예산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민간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키고 재정사업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책계층별로 Focus Group Interview(F

GI)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주요 예산사업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를 평가하고, 사각지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탐색하여 향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FGI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올 초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착수회의를 시작하면서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번에는 분만 취약지역의 병원 종사자, 산모 등을 상대로 FGI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2018년도 예산안의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관련 예산에 반영하였다.¹¹⁾

올해는 기존 FGI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대국민 설문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설문내용을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룹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이에 이번 에 수립된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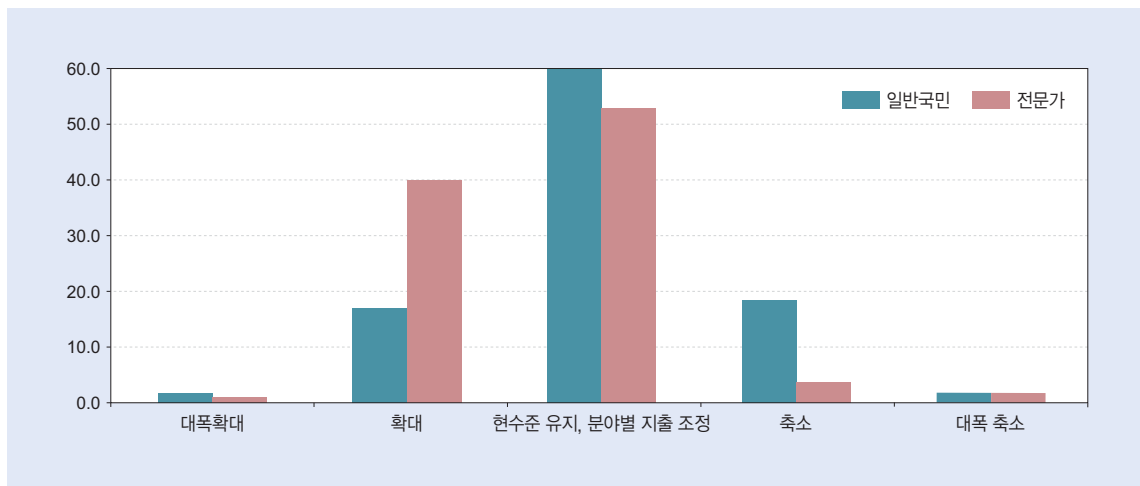
먼저,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60%, 전문가 53%는 지출 규모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분야별 지출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재정지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20%만 찬성하는 반면 전문가는 4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정지출 총량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차이가 뚜렷한 것을 볼 수 있다.

10) 국민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폭넓은 논의는 오영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7.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2018년 예산안」에서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16 → 18개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3 → 7개소) 등 취약층 출산 지원 인프라 확충”의 형태로 반영됨

[그림 3]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의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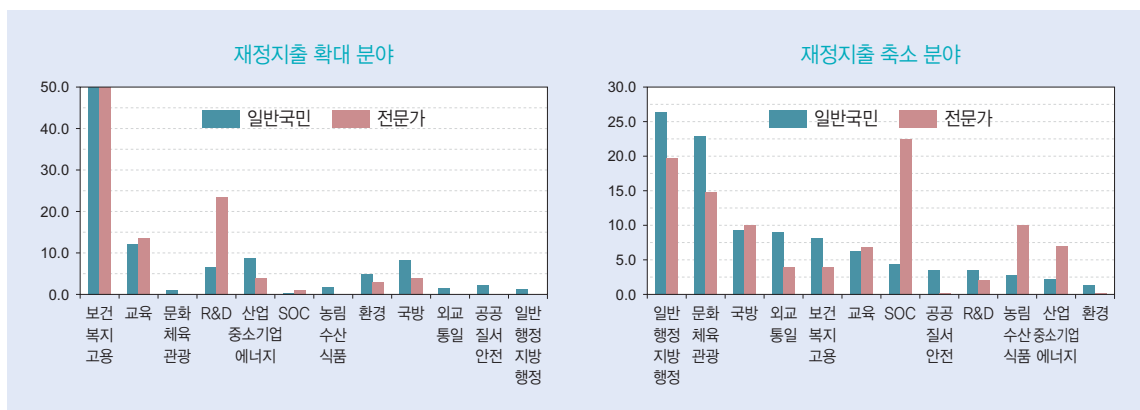


분야별 지출 조정에 대한 설문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지출 확대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 축소분야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를 꼽고 있다. 지출 확대 분야를 좀 더 살펴보면 2순위부터는 일반국민(교육-산업-국방)과 전문가(R&D-

교육-산업)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지출 감축 분야에서는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국민들은 일반·지방행정-문화-국방 순으로 감축을 대상을 꼽은 반면, 전문가는 SOC-일반·지방행정-문화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SOC 부문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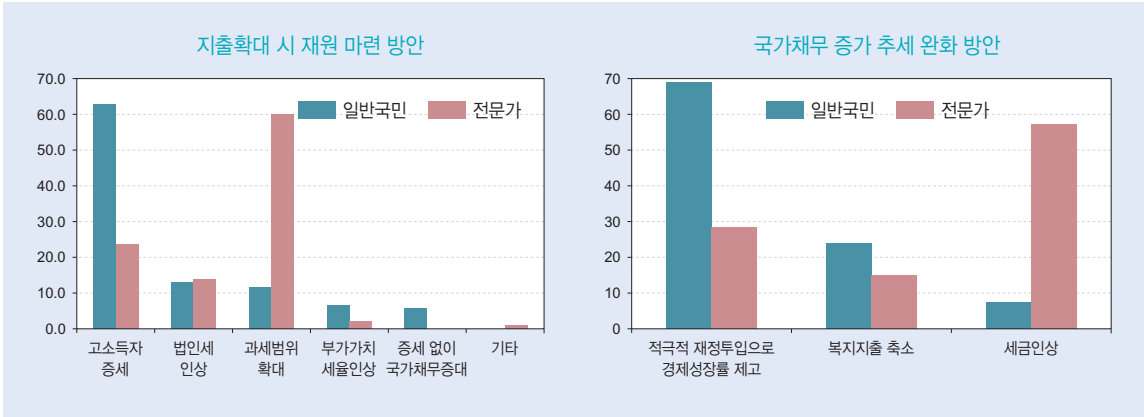
[그림 4] 지출 확대 및 축소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단위: %)



[그림 5] 재정 건전성 관련 설문 결과

(단위: %)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의견을 살펴 보기 위해 지출 확대 시 재원 확보 방안과 국가채무 증가 추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재정 건전성 관련 문항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차이가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일반국민은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선호하는 반면, 전문가는 과세범위 확대와 고소득자 증세를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국가채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반국민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를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반면, 전문가들은 증세를 1차적인 방안으로 선택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자. '18년 예산안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고, 중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은 재정지출 증가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지출 증가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분야별 지출 증가율에서는 보건·복지·고용과 교육 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대폭 높인 것은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이 모두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지출의 필요성을 선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R&D 지출 규모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R&D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출증가율 감소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R&D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출 감소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SOC 분야 감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SOC와 관련된 논란은 구조조정 정도가 너무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급격한 조정은 대부분 '18

년에 이루어지고 중기적으로는 SOC 지출 감축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SOC 분야 감축은 지난 정부 정책의 연장선에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R&D 분야와 마찬가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원 확보 방안과 국가채무 증가 완화 방안 측면에서 살펴보자.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두 질문은 현재보다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현재의 대응 방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차이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일반국민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재원 마련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세 범위 확대를 선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긴 시계에서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유사한 측면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의 시각 차이를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하더라도 성장률을 제고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다.¹³⁾ 복지지출에 대한 축소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과의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일반국민의 의견과 유사한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경제 및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중기적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재정운용이 향후 5년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재정기조가 지속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일반 국민들과 인식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장기적인 지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V. 맺음말

이번 정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 국면을 기존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토대로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다.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그 전략을 재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견

12) 과세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는 전병욱(2017)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방안」(조세재정브리프, 2017.8) 등을 참고

13) IMF는 지난 3월 "IMF Note on Global Prospects and Policy Challenges"를 통해서 현재 세계 경제가 회복 추세에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인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이 된다. 그러나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큰 투자보다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예산안과 중기계획의 방향 전환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성장으로의 선순환까지 이어지도록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 이번 예산안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7-8

> 아메리카

[미국-특정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의 시행 연기]

- 미국 재무부는 2017년 7월 28일 특수관계자 간 부채거래 시 자본거래로 간주하는 규정(Sec. 385)의 시행규칙 시행일자를 기존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 연장함¹⁾
 - 미국 재무부는 2016년 10월 13일 위 규정의 시행규칙을 최종 승인한 바 있음
 - 이번 시행일자 연기는 실무상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인해 연기된 것임
- 개정된 시행규칙(TD 9790)에서는 부채와 자본거래를 구분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로 분류되는 경우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음²⁾
 - 기존에 부채와 자본을 분류하는 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있었으나 복잡하다는 이유로 규정이

철회되었고, 'Earning Stripping' 규정에 따라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었음

- Earning Stripping 규정은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자본거래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이자비용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임

- 철회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시 발표한 것이며,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규정을 확정함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차입 거래 시 부채와 자본거래를 판단하는 일반규정, 자본조달규정(funding rule), 문서화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³⁾

- 일반규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부채거래를 자본거래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주에게 배당 지급할 목적으로 부채 발행하는 경우
 - 계열사 주식취득목적으로 부채 발행하는 경우
 - 내부 자산구조조정 목적으로 부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본조달규정에서는 일반규정에서 정한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자본거래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서화 규정은 연방세법상 부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정보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1) EY, "US IRS delays Section 385 debt-equity documentation requirements by one year,"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us-irs-delays-section-385-debt-equity-documentation-requirements-by-one-year>, 접속일자: 2017년 8월 30일

2) EY, "Final and temporary US Section 385 regulations significantly narrow the scope of earlier proposed regulations,"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final-and-temporary-us-section-385-regulations-significantly-narrow-the-scope-of-earlier-proposed-regulations>, 접속일자: 2017년 8월 30일

3) EY, "New US Section 385 regulations would treat certain related-party corporate interests as stock, rather than debt, for federal tax purposes," 접속일자: 2017년 8월 30일

금융상품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단, 2016년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로 함
- 지연제출 시 가산세 1만유로,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가산세 2만유로가 부과됨⁵⁾

▶ 유럽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그리스-국가별보고서 규정 도입]

- 그리스 정부는 2017년 8월 1일 국가별 보고서 규정의 도입을 승인함⁴⁾
 - 동 법안은 국가별보고 관련 EU지침(EU지침 2016/881)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별보고서의 최초 신고대상 사업연도, 신고의 무자, 신고 대상 정보, 신고기한 등에 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최초 신고대상 과세연도는 2016년으로 하며, 신고 의무자는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그리스 소재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법인으로 함
- 신고대상 정보는 계열사가 소재한 각 과세관할국의 종업원 수, 자본금, 누적이익, 유형자산, 사업활동 내용임
- 국가별보고서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로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함

[라트비아-세법개정안 발표]

- 라트비아 국회는 2017년 7월 28일 소득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안을 승인함⁶⁾
 - 개정된 소득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개인소득세 측면에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단일세율에서 누진세율 체계로의 개정,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임
 - 현행 23%의 단일세율에서 20%, 23%, 31.4%의 3단계 누진세율로 개정됨⁷⁾
 - 개정된 누진세율 체계에 따르면 20,000유로까지는 20%, 20,001유로부터 55,000유로까지는 23%, 55,000유로를 초과한 소득은 31.4%의 세율로 과세됨
 - 최근 소득불평등의 심화, 정부의 세수입 감소, 공제와 감면의 복잡한 과세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누진세의 필요성이 대두됨⁸⁾

4) Greece-Bills amending Income Tax Code, trade tax,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and CbC reporting-gazetted (10 Aug. 2017), News IBFD.
 5) Tax notes, "CbC Reporting Requirements Introduced," 2017.08.14.
 6) Tax Notes International Volume 87, Number 6, "Parliament Approves New Corporate Tax Regime" 및 "Progressive Personal Income Tax to Begin In 2018," 2017.8.7.
 7) 자본이득은 20%의 단일세율로 과세될 것임
 8) 라트비아는 1995년부터 개인소득세를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나 감면을 차등 적용함. 라트비아는 1994년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가 단일세율 체계로 개정한 1년 뒤 단일세율로 과세하였으며, 현재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도 누진세율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어 라트비아의 이번 개정이 이 두 국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부터 소득세 면세점을 115유로에서 200유로로 인상하고, 2019년 다시 230유로로 인상함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함
- 법인세 측면에서는 과세대상 소득을 배당한 이익으로 축소, 법인세율 인상, 소규모 기업의 적용요건 강화,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폐지함
 - 법인세법상 당기 발생한 이익 중 배당되는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축소하고 현행 15%의 세율을 20%로 5%p 인상함
 - 소규모 기업의 경우 현행 세법상 12%의 세율을 15%의 세율로 인상함
 - 또한, 재투자를 목적으로 사내 유보된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신규장비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감각상각과 조세감면을 폐지함
 - 또한, 소규모 기업의 적용요건을 강화하여 현행 매출액 십만유로 이상에서 4만유로 이상으로 매출액 기준을 하향 조정함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사업자등록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대리납부 대상을 확대함
 - 사업자 등록 기준을 현행 연간 5만유로에서 4만유로로 변경함
 - 대리납부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모든 건설용역과 건설자재, 게임 콘솔, 가정용 전자제품, 금속

제품과 관련 용역 등의 수입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용역, 모바일폰이나 태블릿 등 특정 전자제품 등의 수입을 대리납부 대상으로 규정함

-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강화하여 거래금액이 1,430유로를 초과하는 거래에서 150유로를 초과하는 거래로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라트비아-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률 확정]

- 2017년 6월 23일 라트비아 정부는 국가별보고서에 관한 법률을 확정함⁹⁾
 - 라트비아는 BEPS Action 13과 EU Directive 2016/881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신고 제도를 도입함
- 국가별보고서의 신고의무자, 신고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직전연도 연결 기업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50백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라트비아 모회사가 과세당국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임
 -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한 경우, 관련 정보를 거짓 제출한 경우 700유로까지의 가산세가 부과됨

9) E&Y,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the-latest-on-beps-14-august-2017>, 접속일자: 2017년 8월 22일

- 특히, 국가별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는 해당 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700유로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라트비아는 2016년 10월 21일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 간 다자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에 서명하였으며, 다자협정 체결국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벨기에-2018년 주요 세법개정 방향 발표]

- 벨기에 정부는 2017년 7월 26일 2018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주요 내용을 발표함¹⁰⁾
 - 공식적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며 향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발표한 것임
 - 법인세, 소득세의 개정안을 제시함
-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를 인하, 추가과세 폐지,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를 제시함
 - 2018년, 2020년에 법인세율을 현행 33%에서 29%, 25%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10만유로까지는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법인에 추가과세하는 부가세율(austerity surcharge)을 2018년에 현행 법인세액의 3%에서 2%로 인하하며, 2020년에는 폐지할 예정임
 - 재정건정성 회복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법인에

추가과세하는 것으로 1991년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음

- 스타트업 기업에 한해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성장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함
-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축계좌 비과세 허용 기준금액 인하, 소액 배당소득에 면세하는 규정을 도입함
 - 비과세저축계좌 잔액의 940유로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 현행규정에서는 비과세저축계좌의 잔액 1,880유로까지에 대한 이자소득에 면세하고 있음
 - 배당소득이 627유로 이하인 경우 면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영국-BREXIT 후 관세 제도 방향 발표]

- 2017년 8월 15일 영국 정부는 BREXIT 후 영국의 관세 제도(customs arrangements)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행함¹¹⁾
 - 영국은 EU 국가와 가능한 무역 마찰의 최소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에 물리적인 하드 보더(hard border)의 미설치, 영국의 독자적인 무역기준과 관세법 마련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관세 제도를 마련할 방침임
 - 영국은 하반기 중 관세법안(Customs Bill)을 발표할 예정임

10) Belgium-Tax reform announced(27 July 2017), News IBFD.

11) HM Government, "Future Customs Arrangements," 2017. 8. 1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37748/Future_customs_arrangements_-_a_future_partnership_paper.pdf, 접속일자: 2017년 8월 22일



- 영국은 EU를 탈퇴와 함께 EU 관세동맹(EU Customs Union)을 탈퇴한 후 EU 회원국과 무역 마찰의 최소화와 자유무역을 기조로 한 관세 협정을 체결할 방침임
 - 다만 EU 탈퇴 후 한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남아 EU 회원국과 무관세 정책을 유지하고자 함
 - EU 회원국과 새로운 관세 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경우 관세를 간소화·전산화할 것을 제안함
 - 예를 들어, 물품의 자유이동이 가능하도록 제3국에서 영국을 거쳐 EU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부과를 EU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언급함
 - 또한, 영국은 다른 국가와도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영국은 현재 물자와 인구가동이 빈번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에는 물리적 관세 장벽인 하드 보더(hard border)를 복원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아시아

[홍콩-금융정보자동교환 시스템 개설 및 금융정보협정국 확대]

- 홍콩은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을 위해 7월 3일 발효된 내국세법(Cap §112)의 501(1)절에 따라 AEOI 포털을 개설함
 - 홍콩 국세청장은 AEOI 포털을 자동정보교환 목적을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하겠다는 통지를 발표함
 - 금융기관은 금융계좌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AEOI 포털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금융계좌 정보와 관련된 자료 등을 10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함
- 홍콩은 현재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 아닌 양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금융정보자동교환 추진 중임¹²⁾
 -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에 따른 보고대상 국가가 7월 1일부터 2개국(영국, 일본)에서 75개국으로 확대됨¹³⁾
 - 보고대상 금융기관은 2018년 또는 2019년(한국)에 전년도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교환 시기는 다음과 같음¹⁴⁾
 - 일본과 영국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의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고대상 계좌의 관련 금융정보를 2018년에 보고하고, 한국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

12) Taxnotes, "HONG KONG-Hong Kong's AEOI Network Experiencing Growing Pains," 접속일자: 2017년 7월 31일

13) 홍콩 국세청, <http://www.ird.gov.hk/eng/ppr/archives/17063002.htm>, 접속일자: 2017년 7월 31일

14) 홍콩 국세청, http://www.ird.gov.hk/eng/tax/dta_aeoi.htm, 접속일자: 2017년 7월 31일

용정보를 2019년에 보고해야 함
 - 한국, 일본, 영국을 제외한 72개국의 경우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고대상
 계좌의 관련 금융정보를 2018년에 보고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BEPS 이행계획 발표]

[인도-화폐개혁 이후 소득세 신고서 제출 증가]

- 인도 재무부는 전년 대비 소득세 신고서가 6.2백만 건이 증가한 28.2백만건으로 집계되었다고 8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함¹⁵⁾
 - 2016년 11월 화폐개혁의 결과로 지하경제 세원이 노출되어 신규 납세자가 증가함
 - 소득세 신고서가 전년 대비 약 25% 정도 증가하였고, 2016/17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약 28.2백만건으로 전년 대비 6백만건 정도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함
 - 소득세 신고자 1억명 이상을 확보하여 국내총생산 규모에 대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디 정부의 개혁에 부합되는 결과임
- 인도 재무부장관은 화폐개혁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¹⁶⁾
 - 모디 정부는 2016년 11월 2개의 고액권(500INR, 1,000INR)의 사용을 중지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고액권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과세 관청은 개인과 기업의 20만INR 이상의 계좌를

- 뉴질랜드 재무부 장관은 OECD 권고안에 따른 BEPS와 관련된 이행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8월 3일 발표함¹⁷⁾
 - 이미 국제조세규정은 OECD 등의 국제적 요구사항에 부합하지만, 본 계획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뉴질랜드 내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과세되는 것이 강화될 것이라고 확인함
 - 구체적으로 고정사업장, 혼성불일치규정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소개하고, 경우에 따라 범위를 수정하거나 기술적인 세부사항(법안 초안 포함)에 대한 논의 등을 수행하여 2017년 말까지 완성할 예정임
 - 최종 규정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BEPS 규정과 관련된 예상 세수를 전망하였음
- BEPS Action7인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와 관련하여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과세지위 인위적 회피, 경제적 실체 등에 대해 검토함
 - 인위적인 계약(artificial arrangements)에 따라

15) Taxnotes, "INDIA-Return Filing Increased 25 Percent After Demonetization," 접속일자: 2017년 8월 14일

16) 인도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고액권의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등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음

17) 뉴질랜드 국세청,

<http://taxpolicy.ird.govt.nz/news/2017-08-03-govt-announces-beps-decisions>, 접속일자: 2017년 8월 22일



고정사업장 과세지위를 회피함으로써 인한 원천지국 과세를 못하게 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경고함

- 소득이 이전되는 장소가 아닌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과세하는 규정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뉴질랜드 활동을 경제적 실체(economic substance)에 따라 과세대상을 판단할 것임

- 고정사업장과 관련한 조사에 비협조적인 다국적기업의 과세관청 조사도 용이해질 것임

- 뉴질랜드에서 핵심적인 사업활동이 수행된 경우 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관련 소득에 과세가 가능해져 고정사업장 기준을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뉴질랜드는 BEPS Action2의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 해소를 위해 OECD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입법하기 위해 일부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임
- 뉴질랜드는 이미 소득면제부인규정을 마련하여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반영되지 않은 일부 권고사항을 검토 중임
- 자국의 세무처리와 외국의 세무처리 차이를 이용하여 영업거래 혹은 금융거래를 구조화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법인을 방지하고자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뉴질랜드 재무부는 BEPS 이행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예상 세수 전망을 발표함¹⁸⁾

- BEPS 최종 이행계획의 세부사항이 완료되면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2019년 5,000만호주달러, 2020년 및 2021년에 각각 1억호주달러의 세수입이 예상됨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BEPS	50	100	100	250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국제기구

[OECD-자산의 해외 간접양도 거래 과세를 위한 툴킷 발표]

- OECD는 2017년 8월 1일 자산의 해외 간접양도(offshore indirect transfers) 거래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위한 툴킷(toolkit) 초안을 발표함¹⁹⁾

- 동 툴킷은 G20의 요청으로 조세협력 플랫폼(the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문서(draft discussion)로 발표하였으며, 의견수렴 기한은 2017년 9월 25일까지임

-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해외 간접양도를 통한 원천지국에서의 조세회피가 심각한 조세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함
- 해외 간접양도란 부동산 등 양도 대상 자산을 직

18) 뉴질랜드 재무부, <http://www.treasury.govt.nz/budget/forecasts/befu2017/102.htm>, 접속일자: 2017년 8월 22일

19) IBFD

OECD(<http://www.oecd.org/tax/the-platform-for-collaboration-on-tax-invites-comments-on-a-draft-toolkit-on-the-taxation-of-offshore-indirect-transfers-of-assets.htm>), 접속일자: 2017년 8월 24일

접 양도하는 대신 자산을 간접 보유하는 해외 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자산이 소재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함

- 해외 간접양도를 통한 절세 또는 조세회피 행위는 BEPS프로젝트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사안임
- 동 틀킷은 해외 간접양도 관련 유형과 최근 사례, 원천지국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와 과세 근거, 과세 행정 등을 고려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함
 - 해외 간접양도 관련 원천지국에서의 과세대상 자산을 부동산(immovable assets)으로 하되, 그 범위를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채굴권(mining right), 통신사업 등 정부에서 허가한 사업권 등으로 폭넓게 정의함
 - 해외 간접양도 과세를 위한 입법방향으로는 (i) 거주자의 간주 직접양도(deemed direct sale)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과 (ii) 비거주 양도자(taxation of the non-resident seller)에 대한 과세방안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흥민옥 회계사)

[OECD-Action 2 관련 지점의 혼성불일치효과 해소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7년 7월 27일 BEPS프로젝트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의 후속작업으로 ‘지점의 혼성불일치효과 해소(Neutralising the Effects of Branch Mismatch Arrangements)’ 보고서를 발표함²⁰⁾
 - 2015년 발표한 Action 2의 최종보고서는 혼성단체(hybrid entities)의 혼성불일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지점의 혼성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 본 보고서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룸
 - 본 보고서 발표에 앞서 OECD는 2016년 8월 관련 협의문서를 발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음
- 지점의 혼성불일치 문제는 본점(head office) 소재 지국과 지점 소재지국의 본·지점에 대한 다른 세법규정으로 발생하며, 다른 혼성불일치 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세 가지 대표적인 혼성불일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비용공제/과세소득제외(deduction/no inclusion, “D/NI”): 대가지급이 지급자의 비용공제로 인식되나, 지급 수취자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중복비용공제(double deduction, “DD”): 동일 지급이 두 번 공제되는 경우
 - 간접적 비용공제/과세소득제외(indirect deduction/no inclusion, “indirect D/NI”): 조직화된

20) OECD(<http://www.oecd.org/tax/beps-neutralising-the-tax-effects-of-branch-mismatch-arrangements.htm>, 접속일자: 2017년 8월 28일)



거래를 통해 불일치가 이전되어 간접적 D/NI가 발생하는 경우

- 동 보고서는 지점 혼성불일치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유형과 관련 예시를 제시하고 각 혼성불일치 유형별 권고사항을 논의함
 - 인식되지 않는 지점 구조(disregarded branch structures): 특정 소득이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아 D/NI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할 것을 권고함
 - 지점의 우회소득(diverted branch payments): 특정 소득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 소재지국에서의 소득귀속 판단이 달라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D/NI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할 것을 권고함
 - 지점의 간주지급(deemed branch payments): 지점의 공제가능한 명목지급(notional payments)에 대해 본점에서는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D/NI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해당 지급에 대한 공제를 부인할 것을 권고함
 - 이중공제(double deduction branch payments): 본점과 지점 소재지국의 세법 차이로 동일한 지급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비용공제하는 경우 DD가 발생하며, 이 경우 우선적으로 본점의 비용공제를 부인할 것을 권고함
 - 이전된 지점 불일치(imported branch mismatches): 제3국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이용하여 불일치효과를 이전하는 거래로서 간접적 D/NI 문

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제3국의 특수관계자의 비용공제를 부인할 것을 권고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EU-이전가격 관련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사용에 대한 보고서 발표]

- EU이전가격포럼(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은 2017년 6월 ‘이전가격 관련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사용에 대한 보고서 초안(Draft Report on the Use of Economic Valuation Techniques in Transfer Pricing)’을 발표함²¹⁾
 - OECD는 BEPS프로젝트에 따라 2017년 이전가격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EU의 본 보고서는 개정된 OECD이전가격지침의 무형자산(제6장)과 사업양수도(제9장)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에 대해 논의함
- 본 보고서는 무형자산과 사업양수도 거래 등에 전통적인 이전가격 평가방법이 아닌 경제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한 주요 원칙과 고려사항들에 대해 논의함
 - 이전가격거래에 경제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전가격의 주요 원칙, 특히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함
 - 다양한 이전가격 상황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평가방법들과 각 평가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기술함

21) European Union—EU Joint Transfer Pricing Forum presents report on economic valuation techniques for determining transfer prices (10 Aug. 2017), News IBFD.

- 동 보고서에서 다루는 경제적 가치평가방법들로는 ‘사용료면제법(relief from royalty),’ ‘할증수익법(premium profit),’ ‘잔존가치법(residual value),’ ‘초과이익법(excess earnings),’ ‘대체원가법(replacement cost)’ 등이 있음
- 납세자가 적용한 경제적 가치평가방법의 선택 근거를 문서화할 것을 권고함
-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관련 성장률, 할인율,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 등 경제적 가치평가방법 적용 시 사용되는 주요 변수(parameter)를 소개하고 각 변수 사용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함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집행위(European Commission), 2016년도 예산 집행 실적 발표(2017.7.11.)¹⁾
 - (주요 내용) 2016년의 EU 예산은 정책적 우선순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음
 - 7백만 농부들이 직접지불 형식의 지원을 받았으며 1억 5천만유로 상당의 우유 관련 위기(milk crisis)²⁾ 시 지원됨
 - 21개국 14만 중소기업이 COSME 프로그램을 통하여 55억유로의 대출 혜택을 받음
 - 2016년 예산의 21%가 기후·환경 보존에 집행됨
 - 시리아 내전 등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진 80여개국 1억 2천만명에게 20억유로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
 - (정책제언) EU 규칙의 간소화를 통하여 지방정부, 농업 종사자 및 사업가들이 EU 기금을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음을 언급

- 이사회(European Council),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2017.7.12.)³⁾

* 이번에 채택된 예산안은 EU 의회에서 10월에 논의(negotiation)될 예정

- (규모) 승인기준(commitments)⁴⁾ 1,589억유로, 지급기준(payments)⁵⁾ 1,444억유로로 전년 예산 대비 각각 0.6%, 7.4% 증가
 - 2014-2020 EU 다년도 지출 프레임워크(MFF, EU's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의 초기단계에 가속화가 예상되어 지급기준 예산이 크게 증가함
- (우선순위) 일자리와 성장 촉진, 안보 강화, 이민 및 난민 대응
 - (일자리 창출과 성장 지속)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승인기준 765억유로(2017년 대비 2.1% 증액)와 지급기준 664억유로(2017년 대비 17.5% 증액)의 예산 편성
 - (안보) 집행위의 제안을 수용하여 승인기준 7억 2천만유로(승인기준)와 4억 8,100만유로(지급기준)의 예산을 편성
 - ☞ 국경 강화, 출입국 시스템 관리 및 유럽 여행안내 시스템 개선 등에 주력
 - (이민) 7억 1,900만유로(승인기준)와 5억 9,400만유로(지급기준)을 망명 및 이민 관련 정책에 편성

* 자료 수집 및 정리: 구윤모 전문연구원, 이소영 연구원

1) EU 집행위, http://ec.europa.eu/budget/news/article_en.cfm?id=201707111000

2) 'milk crisis' 관련 내용 링크:

<http://www.europeanmilkboard.org/en/special-content/news/news-details/article/milk-market-review-study-dairy-industry-was-unable-to-sell-additional-milk-volumes-adequately.html?cHash=071da3a8319be6871410af96d972e4af>

3)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7/07/12-eu-budget-position/>

4) Commitments: Legal promises to spend money on certain projects, contracts, research, etc—either in the same year as the commitment or late

5) Payments: The money that the EU actually expects to pay out in a given year

〈표 1〉 2018년 EU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1) 예산안(집행위 발표)		(2) 예산안 관련 이사회 입장		(2-1) 차이	
	승인	지급	승인	지급	승인	지급
스마트 · 포용적 성장	77.2	66.8	76.5	66.4	-0.8	-0.4
1a. 성장과 고용을 위한 경쟁력	21.8	20.1	21.1	19.9	-0.8	-0.2
1b. 경제 · 사회 · 지역적 통합	55.4	46.8	55.4	46.5	0	-0.2
2. 지속가능한 성장: 천연자원	59.6	56.4	59.3	56.1	-0.3	-0.3
3. 안보 및 시민권	3.5	3.0	3.4	2.9	-0.03	-0.02
4. 대외정책	9.6	9.0	9.5	8.9	-0.09	-0.02
5. 행정비용	9.7	9.7	9.6	9.6	-0.05	-0.05
소계	159.6	144.8	158.4	144.0	-1.2	-0.8
특별기금	1.1	0.6	0.6	0.4	-0.5	-0.2
합계	160.6	145.4	158.9	144.4	-1.7	-1.0

출처: EU 이사회

- (난민) 2억유로(승인기준)와 2억 2천만유로(지급기준)를 급격한 난민 유입 또는 자연재난 복구 등에 편성
- (기타 목표) 5% 직원 감축을 통하여 행정 비용 절감

- 집행위(European Commission), 2017 안정 · 수렴 프로그램(SCPs,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및 2018 유로지역 재정정책 평가(Assessment of the Euro Area Fiscal Stance) 보고서 발표(2017.7.28.)⁶⁾
 - (2016년) 개선된 경제상황으로 재정적자는 감소하였고,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alance)는 유로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EU에서는

개선되었음

- 채무 또한 감소하여 유로지역 GDP 대비 90%, EU GDP 대비 84%를 기록
- 재정수지는 SCPs 전망 대비 더욱 향상된 결과를 보임
- (2017년 및 이후) 유로지역 재정적자는 GDP 대비 1.6%, EU는 GDP 대비 1.7%, 2020년까지 균형 예산 달성을 목표로 함
 - 회원국들은 2017년까지 견고한 구조적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2018-2020년에는 재정 긴축에 들어갈 예정
 - ☞ 지출 비율의 감소는 재정수지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임
 - 채무 비율은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6) EU 집행위.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conomy-finance/overview-2017-stability-and-convergence-programmes-and-assessment-euro-area-fiscal-stance-2018_en



2020년에는 유로지역 GDP 대비 83%, EU GDP 대비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리스크) 리스크는 2017-18년과 2019-20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자는 집행위 발간 봄 경제전망(Spring 2017 Economic Forecast)에서 다루고 있음
 - (2017-18) 2017년 재정적자 목표 관련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2018년의 리스크는 여러 정책방안의 추정을 반영하기에 중요하다고 언급함
 - (2019-20) 이 기간 재정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비현실적(unrealistic)이고 지나치게 낙관적(overly optimistic)인 기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될 소지가 있음을 언급
 - ☞ 현재 구축중인 재정 조치는 경상지출의 절감에 기대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
- (지속가능성) 거시경제 시나리오, 재정 전망·계획 및 인구변화에 따른 공공재정에 관한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분석
 - (정부 채무에 관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채무

-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SCPs의 재정 계획이 전면 시행되고, 프로그램 종료 시점까지 꾸준히 지속된다면, 재정 격차는 ‘정책 변화 없는 시나리오(no-policy-change-scenario)’의 격차 전망에 비하여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 재정 관련 리스크)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지속가능성은 채무 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기초재정수지와 미래에 발생하는 고령화 관련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기초재정수지의 차이로 측정됨

-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7.8.16.)⁷⁾
 - 2017년 2분기의 유로지역(EA19)과 EU 회원국(EU28)의 GDP 성장률(계절 조정)은 전 분기 대비 각각 0.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 2분기 대비 EA19 2.2%, EU28 2.3%씩 증가

〈표 2〉 2017년 유럽 GDP 성장률 추정치

(단위: % 성장률)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6		2017		2016		2017	
	Q3	Q4	Q1	Q2	Q3	Q4	Q1	Q2
EA19	0.4	0.6	0.5	0.6	1.7	1.9	1.9	2.2
EU28	0.4	0.7	0.5	0.6	1.8	2.0	2.1	2.3

출처: EU 통계청

7) EU 통계청, <http://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8134589/2-16082017-AP-EN.pdf/dc908a55-1c6d-42d8-ac25-d20c44fc40aa>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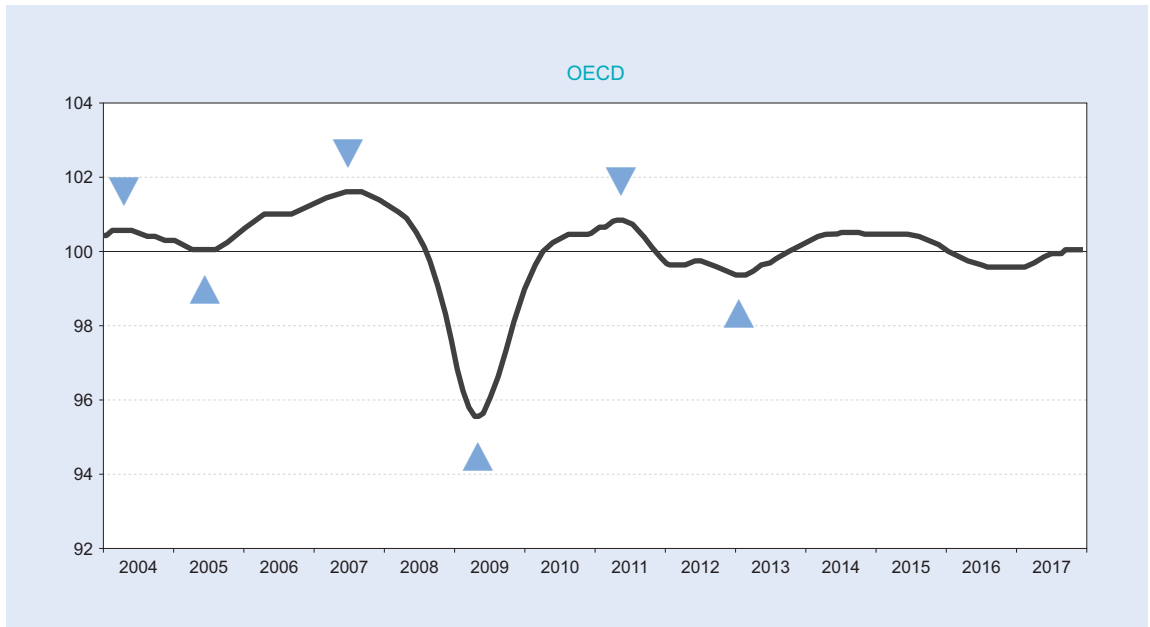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s) 발표(2017.8.8.)⁸⁾
 - OECD 통계청에서 집계한 경기선행지수 결과에 의하면 OECD 회원국들은 향후 6~9개월간 대체로 안정적인 성장 동력(momentum)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일본, 캐나다, 유로지역, 미국, 이탈리아에서 안정적 성장이 두드러짐



미국

-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발표(2017.7.28.)⁹⁾
 - 2017년 2분기 실질GDP 성장률 추정치(계절조정)는 2.6%(연이율)로 집계되었으며, 전 분기(1.2%) 대비 크게 상승하였음
 - 2분기의 성장은 민간 소비, 설비 투자, 수출 및 연방 정부 지출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민간주택투자자와 주·지방정부 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다소 상쇄되었음

[그림 1] OECD 지역의 안정적 성장 동력



출처: OECD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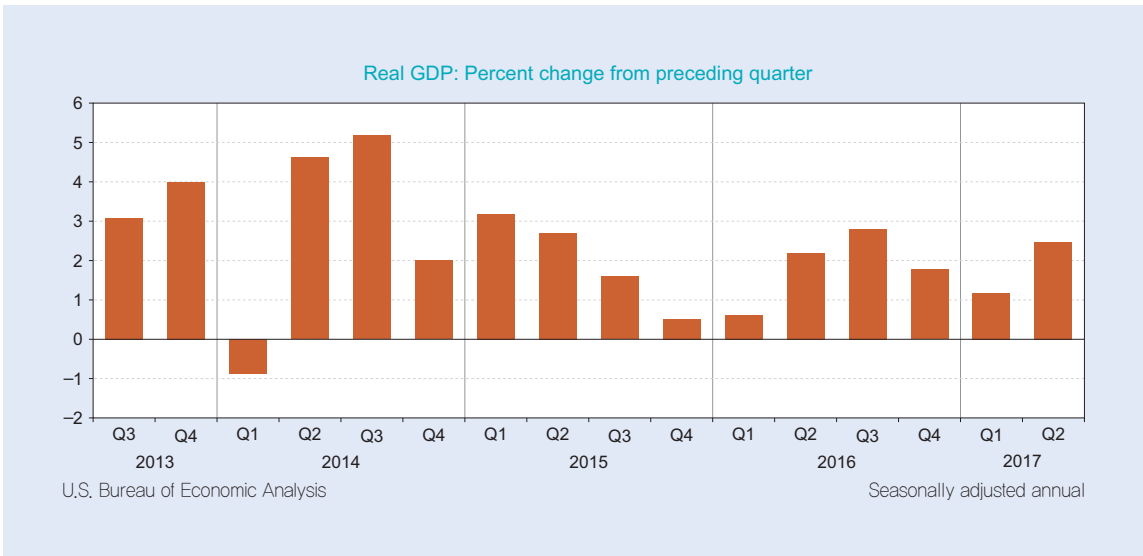
8) OECD, <http://www.oecd.org/newsroom/composite-leading-indicators-cli-oecd-august-2017.htm>

9) 미국 경제분석국, <https://www.bea.gov/newsreleases/national/gdp/gdpnewsrelease.htm>



[그림 2] 미국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

-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의지 표명(2017.8.22.)^{10) 11)}
 -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 주 피닉스를 방문하여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유마의 국경장벽 건설 이후 불법 입국이 급감하였음을 언급
 -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언급
 - 위 정책 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비난하며 지원을 호소

- FY2018의 국경 건설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의회에 압력을 넣으려는 의도로 해석¹²⁾



일본

1. 예산·결산 등

- 재무성, FY2016 결산발표(2017.7.31.)¹³⁾
 - FY2016 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02조 7,740억엔, 세출결산총액은 97조 5,417억엔 규모로 재정법 제41조에 따른 잉여금은 5조 2,322억엔

10)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7/08/2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visits-americans-frontlines>
 11) time, <http://time.com/4912055/donald-trump-phoenix-arizona-transcript/>
 12)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70825/85977359/1>
 13)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account/ty2016/ke290731.html

〈표 3〉 FY2016 일반회계 결산개요

(단위: 억엔)

구분	금액	참고
세입결산총액	1,027,740	
세출결산총액	975,417	
재정법 제41조 잉여금	52,322	(1-2)
2015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555	
신규발생잉여금	51,766	(3-4)
2017년도 이월세출 예산재원	47,389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4,377	(5-6)
일반분	3,743	((1)+(2))
(1) 세입의 순 증감	-11,588	
세수	-3,913	
세외수입	2,325	
공채금	-10,000	
(2) 세출의 불용	15,331	
국채비	2,680	
예비비	2,495	
생활 보호 등 대책비	601	
부흥분	633	((3)+(4))
(3) 세입의 증감(2011년도 1·2차 추경분)	39	
(4) 세입의 증감(2011년도 3차, 2016년 추경분)	594	
8.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으로 순잉여금 계산 공제금액	594	
9. 부흥분(2011년도 1·2차 추경분에 따른 잉여금)	39	
10.차이	3,743	(7-8-9)

출처: 일본 재무성, 平成28年度決算概要

2. 기타

- 재무성, 2018년도 개산요구 기본방침 발표(2017.7.20.)¹⁴⁾
 - 2018년도 예산은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7」에 근거해 경제 · 재정 부흥 계획하여

세출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중점화

- (연금 · 의료) 고령화에 따른 증가분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안에 6,3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경제 · 재정부흥계획’에 근거해서 요구

14)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8/sy290720.pdf



-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 과제) 예산의 중점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재 투자와 지역 경제, 중소기업 지원 및 서비스 산업 등의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는 시책을 시작
-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규제개혁 및 주요 과제 및 재원 확보에 대해 언급
 - 민간 수요와 과학 기술 혁신 등 긴급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부문을 중시
 - 1억 총 활약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안정된 영구적 재원 확보하고 중요 과제 관련 시책을 추진
- 내각부,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1차 속보치 발표(2017.8.14.)¹⁵⁾
 - 2017년 2분기의 계절조정된 GDP 성장률은 1.0%이며, 국내수요가 1.3% 성장하여 GDP 증가에 기여한 반면 재화·서비스의 순수출이 0.3% 감소하였음

〈표 4〉 일본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계절조정)

(단위: 전기 대비, %)

항목	2016			2017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분기 연율환산
GDP	0.3	0.3	0.4	0.4	1.0	4.0
국내수요	0.3	-0.1	0.1	0.2	1.3	5.2
민간수요	0.8	-0.1	0.3	0.3	1.3	5.3
민간최종소비	0.1	0.4	0.1	0.4	0.9	3.7
주택투자	3.2	2.8	0.3	0.9	1.5	6.0
설비투자	0.7	0.0	2.2	0.9	2.4	9.9
공적수요	-1.2	0.0	-0.5	0.1	1.3	5.1
정부소비	-1.3	0.2	0.0	-0.1	0.3	1.3
공적투자	-0.8	-0.8	-2.5	0.6	5.1	21.9
총고정자본형성	0.7	0.2	0.9	0.8	2.8	11.7
재화·서비스 순수출	0.1	0.4	0.3	0.1	-0.3	-
수출	-0.9	2.1	3.1	1.9	-0.5	-1.9
수입	-1.2	-0.2	1.4	1.3	1.4	5.6

주: 1. 전분기 대비 차이를 나타낸 수치임

2. 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7(平成29)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15) 일본 내각부, http://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17/qe172/pdf/gaiyou1721.pdf

 **독일**

- 통계청,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7.8.15.)¹⁶⁾
 - 독일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이며 2017년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0.6%의 성장(가격·계절·달력 조정)을 보임
 - 건설한 내수와 크게 상승한 가계 및 정부의 지출,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보임
 - 2분기 성장률은 전년 대비 1.5% 증가(+66만 4천명)하여 국내 노동자 수(4,400만명)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표 5〉 독일 분기별 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성장률)

		미조정수치	Census X-12-ARIMA 수치
			계절·달력 조정
2016	1분기	1.5	0.6
	2분기	3.3	0.5
	3분기	1.7	0.3
	4분기	1.3	0.4
2017	1분기	3.2	0.7
	2분기	0.8	0.6

출처: 독일 통계청

 **영국**

- 통계청,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7.8.24.)¹⁷⁾
 - 2017년 2분기 영국의 GDP 성장률(volume term)은 전 분기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은 1.7%)
 - 생산성 부문에서는 서비스 산업이 전 분기 대비 0.5% 상승
 - 지출 부문에서는 정부 지출·투자에서 큰 상승이 있었으나 가계 지출·투자에서 하락이 있었음

〈표 6〉 영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성장률)

	Chained volume measures			Current market prices (계절조정)
	GDP	가계지출	총고정자본형성	GDP
2016 Q1	0.2	0.7	0.0	1.1
2016 Q2	0.6	0.8	0.2	1.5
2016 Q3	0.5	0.8	0.6	0.6
2016 Q4	0.7	0.7	0.1	1.5
2017 Q1	0.2	0.4	1.0	0.7
2017 Q2	0.3	0.1	0.7	0.8

주: 전기 대비 % 변동

출처: 영국 통계청

16) 독일 통계청, https://www.destatis.de/EN/PressServices/Press/pr/2017/08/PE17_277_811.html

17) 영국 통계청,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secondestimateofgdp/apriltjune2017>



캐나다

- 의회예산처, 경제·재정 모니터(Economic and Fiscal Monitor–August) 발표(2017.8.17.)¹⁸⁾
 - (경제) 2017년 상반기의 건실한 가계 지출과 주택·기계·장비 투자로 인하여 금년 GDP 성장률은 2.8%로 예상되며, 이는 4월 전망보다 0.3%p 상승한 수치
 -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은 3.2%(연이율)로, 4월 전망이었던 1.4%에 비하여 크게 상승함

☞ 예상보다 높은 2분기의 GDP 성장률에 힘입어 2017년 명목 GDP는 2.1조캐나다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재정) FY2016–17의 재정적자는 214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1%)이며, 4월 전망치 대비 7억캐나다달러 증가함
 - FY2017–18의 재정적자는 24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이며, 4월 전망치 대비 3억캐나다달러 증가함

〈표 7〉 2016–2017 GDP 변화

(단위: % 분기별 성장률, 십억캐나다달러)

	2016 Q4	2017 Q1	2017 Q2	2017 Q3	2017 Q4
4월 전망	2.6 (2,071)	3.9 (2,107)	1.4 (2,127)	2.2 (2,149)	2.3 (2,171)
8월 전망	2.7 (2,071)	3.7 (2,113)	3.2 (2,135)	1.8 (2,155)	1.8 (2,171)

주: 1. 이탤릭체는 전망치임
 2. 성장률과 명목 GDP 모두 연이율 수치
 출처: EU 통계청

〈표 8〉 2016–2018 재정수지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추정	전망	4월 전망 비교	
	2016–17	2017–18	2016–17	2017–18
총수입	294.5	304.8	-2.6	0.2
총지출	315.9	329.6	-1.9	0.4
프로그램 지출	291.6	304.6	-2.4	0.1
이자 지출	24.4	25.0	0.5	0.3
재정수지	-21.4	-24.8	-0.7	-0.3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18)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www.pbo-dpb.gc.ca/en/blog/news/EFM_August_2017

프랑스

- 통계청,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17.7.28.)¹⁹⁾
 - 2017년 2분기 GDP 성장률 1차 추정치(계절 조정은 0.5%로 3분기 연속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

- 가계 소비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다소 상승하고(0.1%→0.3%)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은 감소함(1.4%→0.5%)
- 전 분기 대비 수입 증가율은 감소, 수출 증가율은 증가함

〈표 9〉 프랑스 분기별 성장률

(단위: % 성장률)

	2016 Q3	2016 Q4	2017 Q1	2017 Q2	2016	2017 전망치
GDP	0.2	0.5	0.5	0.5	1.1	1.4
수입	2.8	0.6	1.2	0.2	4.2	3.0
가계지출	0.0	0.7	0.1	0.3	2.1	0.9
정부지출	0.3	0.3	0.3	0.4	1.2	1.1
총고정자본형성	0.2	0.6	1.4	0.5	2.7	2.4
수출	0.9	1.1	-0.7	3.1	1.9	2.9
기여도(%p)						
내수(재고 제외)	0.1	0.6	0.4	0.4	2.0	1.2
재고 변동	0.7	-0.2	0.7	-0.6	-0.1	0.3
해외무역수지	-0.6	0.1	-0.6	0.8	-0.8	-0.1

출처: 프랑스 통계청

19) 프랑스 통계청,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2908692>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 정책 및 연구 동향: 8.10.~9.9. 세미나 등: 9.1.~9.31.

* 이 자료는 국내외 조세 · 재정과 관련한 정책 및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세미나

세미나 개요	주최(주관)기관	개최일
<p>■ 2017년 국제조세 컨퍼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9. 22.(금) 15:00~17:3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주제: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 발표: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외 • 토론: 오준석 교수(숙명영대) 외 	한국국제조세협회	17-09-22
<p>■ 2017 추계학술대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9. 22.(금)~9. 23.(토) • 장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부에서의 지방재정 • 발표: 민 기(제주대) • 토론: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외 	한국지방재정학회	17-09-22 ~09-23
<p>■ 2017 기획재정부-한국은행-IMF-PIIE 국제컨퍼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9. 7.(목)~9. 8.(금) • 장소: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 • 주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 발표: Ranil Salgado 국장보(IMF) 외 • 토론: 이상협 교수(하와이대) 외 	기획재정부	17-09-07 ~09-08
<p>■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9. 7.(목) 13:30~15: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발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 토론: 김갑수 부구청장(영등포구) 외 	국회(박완주 의원실)	17-09-07
<p>■ EDCF 30주년 기념 및 KSP 성과공유 국제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7. 9. 5.(화)~9. 6.(수) •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 주제: (Round Table) 베트남이 본 EDCF/KSP의 개도국 경제개발 기여 및 향후 기대사항 제시 외 • 발표: 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장관(베트남) 외 • 토론: Yves GUICQUERO 본부 부국장(AFD) 외 	기획재정부	17-09-05 ~09-06



▶ 정책 및 연구

(1) 정책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확정-사람 중심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 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촉진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③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기본방향으로 함 	기획재정부	17-08-30
<p>◇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17년 추경예산(251.1조원) 대비 17.1조원(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는 260.9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16.9조원(6.9%) 증가 - 특별회계는 7.3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0.2조원(2.8%) 증가 	기획재정부	17-08-30
<p>◇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 • (국세감면액) '16년 국세감면액은 37.4조원으로 '15년 35.9조원 대비 1.5조원 증가 • (국세감면율) '16년 국세감면율은 13.4%로 '15년 14.1% 대비 0.7%p 하락 	기획재정부	17-08-29
<p>◇ 2017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정·추가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 고용창출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3.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 조정 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한도 조정 	기획재정부	17-08-29
<p>◇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일자리·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뒷받침-총지출은 전년 대비 7.1%(+28.4조원) 증가한 429.0조원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강력한 양적·질적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 	기획재정부	17-08-29

(2) 국내외 연구(Papers & Briefs)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 / 강성호 · 류건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대부분은 일시금 수급을 선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이 미흡 • 우리나라의 퇴직소득은 소득공제 수준이 높아 일시금 수급 시에도 세부담이 크지 않아 연금화 유인이 약함 • 조세재정 중립적 측면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제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	17-09-11
<p>◇ 근로소득자 상위 1%, 근로소득세 34% 내고 국민연금은 2%만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 •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를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의 32.3%를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7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한국납세자연맹	17-09-05
<p>◇ OECD 정책브리핑: 아시아 7개국의 조세수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는 지난 7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2017 아시아 7개국 조세수입통계 발간 • GDP 대비 총 조세수입은(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포함) 한국(25.3%), 일본(32%) 등 OECD 회원국들이 다른 국가들(18% 미만)보다 높음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17-08-16
<p>◇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 송호신, 허준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입측면에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조세수입에 미칠 영향을 DS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한국경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입측면에서 어느 정도 재정여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세출측면에서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에 기초한 분석을 개인수준의 데이터가 아닌 정부 수준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령 인구가 선호하는 사회보호 및 보건 지출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한국은행	17-08-10



제목	발행기관	발행일
<p>◇ Tax Plans Must Not Lose Revenue and Should Focus on Raising Working-Class Incomes / by Chuck M. et 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iven stagnant wages for many workers, soaring incomes for those at the top, and strong corporate profits—as well as future fiscal pressures stemming from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rising health care costs—tax reform should adhere to these core principles: strict revenue neutrality, no net tax cuts for the most well-to-do, and a focus on ordinary working families. ... (후략) 	CBPP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17-09-08
<p>◇ The Political Economy of Fiscal Transparency and Independent Fiscal Councils / by Roel M. W. J. Beetsma et 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global surge in independent fiscal councils (IFCs) raises three related questions: How can IFCs improve the conduct of fiscal policy? Are they simultaneously desirable for voters and elected policymakers? And are they resilient to changes in political conditions? We build a model in which voters cannot observe the true competence of elected policymakers. ... (후략) 	IMF	17-09-01
<p>◇ Should Robots Be Taxed? / by Joao Guerreiro et 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 use a model of automation to show that with the current U.S. tax system, a fall in automation costs could lead to a massive rise in income inequality. This inequality can be reduced by raising marginal income tax rates and taxing robots. But this solution yields mediocre outcomes both in terms of efficiency and inequality. ... (후략) 	CEPR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17-08-24
<p>◇ Cutting Taxes and Making Future Americans Pay for it: How Trump's Tax Cuts Could Hurt Many Households / by William G. Gale et 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ax cuts often look like “free lunches” for taxpayers, but they eventually have to be paid for with other tax increases or spending cuts. We examine the distributional effects—with and without financing—of a tax plan consistent with the outline the Trump Administration produced in April. When ignoring financing, the plan would be regressive most households would be better off, but the highest income households would get the largest percentage boosts in after-tax income. ... (후략) 	Brookings	17-08-15
<p>◇ Banks in Tax Havens: First Evidence Based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 by Vincent Bouvatier et 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nce the Great Financial Crisis, several scandals have exposed a pervasive light on banks' presence in tax havens. Taking advantage of a new database, this paper provides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importance of tax havens in international banking activity. ... (후략) 	CEPR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17-08-14

정책흐름



-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본격 추진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

- 일자리 ·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 지원 -

* 본 자료는 2017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2018년도 예산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29(화) 국무회의를 거쳐 9.1(금)에 국회 제출할 계획임
-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 선제적 역할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뒷받침
 - 총지출은 전년대비 7.1%(+28.4조원) 증가한 429.0조원
- 새 정부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첫째 필요소요를 적극 반영
 -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9.4조원)를 2조원 수준 초과한 11.5조원 달성
 - 임기 첫째 추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경제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 마련
-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전망
- ‘17~’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 강력한 양적 · 질적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립

1. 2018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 ◇ 새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및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 양적 ·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1 새 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 차질없이 추진

- 공공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 집중 및 한 국형 고용안정 · 유연모델 정립
-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

2 재정 재구조화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실시

- SOC 등 물적 투자는 적정관리를 계속하고,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해 성장동력 확충
 - 재정지출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수요자 중심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 양적·질적 구조조정 실시
- ※ 상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3 재정운용 시스템 혁신

- 협력 네트워크·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보상체계 개선
- 국민 참여예산을 시범 실시하고,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

2 2018년도 예산안 모습

- ◇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등으로 전년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다소 개선

■ 사람 중심 투자로 총지출은 429.0조원(+7.1%)

-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과 서민 일자리·복지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

■ 국세수입 개선으로 총수입은 447.1조원(+7.9%)

- 총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7.9% 증가

(단위: 조원, %)

	'17예산 (A)	'18예산안 (B)	증감 (B-A)	%
◇ 총지출	400.5	429.0	28.4	7.1
◇ 총수입	414.3	447.1	32.8	7.9
- 국세	242.3	268.2	25.9	10.7

확장적 재정기조

- ① '18년 총지출 증가율(7.1%)은 '18년 경상성장을 전망(4.5%)보다 2.6%p 높은 수준
- ② 또한, 이는 '17년 총지출 증가율(3.7%) 및 중기계획('16~'20)상 '18년 증가율(3.4%)을 크게 초과하는 수준

* 총지출 증가율: ('13) 5.1 ('14) 4.0 ('15) 5.5 ('16) 2.9 ('17) 3.7%

■ 새 정부 정책과제 소요를 적극 반영

-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178조원)에 대한 첫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18년 18.7조원)
 - 국정과제 외 국민생활에 필요한 추가정책과제*도 선제적 추진
- *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 보훈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차년도 목표분(9.4조원) 대비 2.1조원 증가한 11.5조원 감축

국정과제 자원 및 지출구조조정



- 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전년보다 다소 개선
 - 재정수지는 GDP 대비 $\Delta 1.6\%$, 국가채무는 39.6% 수준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소폭 개선

(단위: 조원, %)

	'17예산(A)	'18예산안(B)	증감(B-A)
◇ 재정수지	$\Delta 28.3$	$\Delta 28.6$	$\Delta 0.3$
(GDP 대비 %)	($\Delta 1.7$)	($\Delta 1.6$)	(0.1%p)
◇ 국가채무	669.9	708.9	39.0
(GDP 대비 %)	(39.7) ¹⁾	(39.6)	($\Delta 0.1$ p)

주: 1) 추경 확정 기준으로는 국가채무 GDP 대비 39.6%

3 2018년 국정과제 추진

◇ 국정과제(178조원) 추진 첫해 주요 사업들을 예산에 적극 반영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주요 과제

- (아동)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18.7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7년 180 → '18년 450 개소),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17년 0.9 →

'18년 2.1조원) 등 보육 국가책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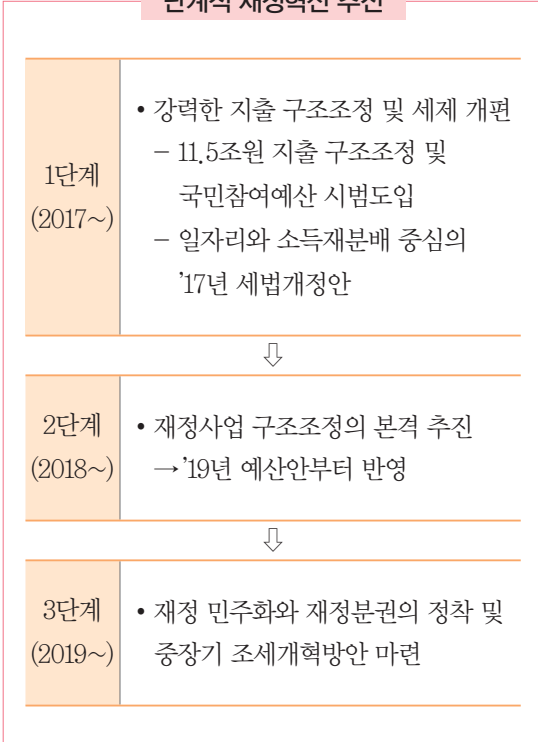
- (청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3년간 연 2천만원 한도, 2만명), 구직촉진수당(3개월간 월 30만원씩, 21.3만명) 등 민간취업지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17년 2만 → '18년 3만호), 우대대출상품(한도 +0.3억 원, 금리 $\Delta 0.3\%$ 우대) 등 주거지원
- (노인) 기초연금 인상('17년 20.6 → '18년 25만원/월), 노인일자리 확대('17년 22만원, 43.7만명 → '18년 27만원, 51.4만명) 등 노인소득 증대 - 치매안심센터(252개소) 운영지원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18.10월) 등 기초생활보장 확대
 -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인상('17년 9.5 → '18년 10.2만원), 재난적 의료비 전 질환으로 확대 등 생활비 경감
- (소상공인) 소상공인 상생자금 신설(200억원, 신규),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17년 30 → '18년 43개)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 혁신성장과 안전·평화 관련 주요 과제

-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17년 1.2 → '18년 1.5조원) 및 TIPS('17년 150 → '18년 284개팀) 등 창업 지원
- (안전·평화) 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 지원('17년 2.1 → '18년 2.3조원) 및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 강화

4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

단계적 재정혁신 추진



점검 결과 반영

- [집행부진]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실소요 등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 [선심성·소비성·관행적 지출] 연례적 행사 비용 절감, R&D 일몰제 실시
- [외부지적 등] 유사중복 정비, 국회·감사원 지적사업 등

- (결과) 11.5조원 구조조정 및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 변화
 -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 및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도 구조조정 실시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

(단위: 조원)

분야	SOC	산업	농림	환경	R&D	문화
	△4.4	△1.0	△0.6	△0.5	△1.0	△0.5
분야	복지	교육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	행정
	△1.4	△0.3	△1.5	△0.1	△0.3	△0.5

* R&D 분야는 각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과 중복 있음

■ 강도 높은 양적 지출 구조조정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 (원칙)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Zero-base에서 검토하여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구조조정

- 복지·교육 분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SOC 분야 20% 감축 및 문화·환경 분야는 감축 기조로 전환

〈양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 [정책 전환] 그간 스톡이 축적된 SOC(도로·철도 등), 농업생산시설(수리시설개보수 등), 환경기초시설(하수관로 정비 등) 구조조정
- [성과미흡]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 질적 지출 구조조정 및 참여예산 시범실시

- 렌트 배분체계 개선, 대학창업·ODA 융합예산 편성,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확대 등 질적 구조조정 일부 추진

〈질적 지출 구조조정 사례〉

- **[렌트 배분체계 개선]** 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 구현

* (예) 중소기업간(産-産) 공동 연구개발 지원 확대 (36 → 56개 과제)

- **[융합예산 편성]**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 대학창업, ODA, 관광 분야 시범실시

- **[복지 사례관리 연계]** 업무분야·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사례관리(총 7종)를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 강화

- **[수출 바우처 확대]** 수출기업이 서비스·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 대상을 확대(2개 → 6개 사업)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공급자간 경쟁 촉진

■ 2단계·3단계 재정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 재정사업 구조개혁을 위한 강력한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 (예) 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참고 분야별 자원배분

(단위: 조원)

구분	'17년 (A)	'18년 (B)	증감 (B-A)	%
◆ 총지출	400.5	429.0	28.4	7.1
1. 보건·복지·노동	129.5	146.2	16.7	12.9
※ 일자리	17.1	19.2	2.1	12.4
2. 교육	57.4	64.1	6.7	11.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2.9	49.6	6.6	15.4
3. 문화·체육·관광	6.9	6.3	△0.6	△8.2
4. 환경	6.9	6.8	△0.1	△2.0
5. R&D	19.5	19.6	0.1	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9	△0.1	△0.7
7. SOC	22.1	17.7	△4.4	△20.0
8. 농림·수산·식품	19.6	19.6	0.02	0.1
9. 국방	40.3	43.1	2.8	6.9
10. 외교·통일	4.6	4.8	0.2	5.2
11. 공공질서·안전	18.1	18.9	0.8	4.2
12. 일반·지방행정	63.3	69.6	6.3	10.0
※ 지방교부세	40.7	46.0	5.2	12.9

5 투자의 중점

[1]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

■ 민간 일자리 창출

- 청년에 대해 “재학 → 취업 → 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
 -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3,000개 확대 →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명 신규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지원대상 확대
 - * (적립금) 2년간 1,200 → 1,600만원
 - (지원대상) 50,000 → 60,000명
-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기술인 R&D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 예방

* 연구소·기업 등과 공동 연구활동 지원 확대(310 → 414명, 최대 3년)

■ 공공 일자리 확대

-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5만명을 충원(0.4조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 일자리 질 제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급여를 인상(통상 임금의 60 → 80%)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 * (현행)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 (개선) 모두 200만원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

- 청년 구직촉진수당 본격 지원(월 30만원씩 3개월 지급),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업급여 반영 등을 통해 실업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1만명, 연간 46만원 지원) 등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및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지원

[2]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 저소득층·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

- 아동수당 도입(10만원, '18.7월), 기초연금 인상(20.6 → 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등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체계 구축
- 노인일자리 확대(43.7 → 51.4만), 자활사업 확대(4.5 → 4.65만), 청년 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5,000명) 등으로 일하는 복지 지원
- * (월) 근로소득공제 10만원+정부지원 30만원 → (3년후) 1,500만원 수준
-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 월 8만원 인상(무공 28~30 → 36~38, 참전 22 → 30만원),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신규, 33.5~46.8만원)

■ 서민 생활비 경감

- (주거비)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주택기금 0.1조원 출자 → '18년 최대 1천호 매입)
- (의료비)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 확충(192개소, 977억)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 (에너지) 중증희귀질환자 포함 등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54 → 60만명)

■ 소상공인 지원

-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 원칙으로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 및 고용유지 지원
-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13억)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사후관리 지원의 소상공

인 상생자금 도입(200억)

■ 지역 균형발전

- 도시재생 지역 기반시설 정비 등 지원 확대 (0.2→1.3조) 및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교통망 구축

[3] 혁신성장 동력 확충

■ 제조업·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개편

- 스마트 공장 보급(2,100개)·확산(3,300억 용자 도입) 및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ICT융합 및 생산 프로세스 혁신
- 혁신형 생산·유통·성과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개별기업 지원에서 네트워크·생태계 중심으로 판로, R&D 지원체계 전환
- * 공동브랜드 개발(신규, 5억), 産-産 공동연구개발 지원 (72→147억) 등

■ 혁신성장 거점 구축

- 민간·공공 메이커 스페이스를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으로 설치(349억)하여 창업저변 확대
- * 상상구현터(일반랩) 70개, 창업연결터(전문랩) 5개 구축 등
- 혁신도시를 기업투자 촉진 및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신규, 200억)

■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

- 국가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 의료정보 제공 (199→415억) 등 정보공유 인프라 구축
- 제조·서비스업 융합을 기반으로 한 新비즈니스의 안정성·시장성 검증 및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지원(신규, 14억)

■ 혁신자본 공급 확대 및 혁신위험 분담

-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의 투자요소를 반영한 투융자복합금융 용자(1,500→1,800억) 등 혁신형 자본 지원 확대
- 과목간 융합형 교육 교원연수(800→1,200명) 확대, 학교밖 SW 교실 확대(300→600개) 등을 통해 혁신 인적자본 확충

[4] 국민이 안전한 나라

■ 자주국방 역량 강화

-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 지원 (21,359→22,565억)
- 병 봉급 약 2배 인상(병장기준, 21.6→40.6만원), 급식비 인상(7,481→7,855원), 민간조리원 증원(1,841→1,903명)으로 장병복지 향상

■ 환경 위해요인에 적극 대응

-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6→12만대), 저감장치 부착(324→6,395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 지원

-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정부 신규 출연(예비비 100억)*, 살생물제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 시설 조기 구축(183억)으로 재발방지 강화
- * 기업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총 225억 출연 계획

■ 먹거리 안전 강화

-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201 → 233억)
- * 기존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잔류농약검사 수행(연 1회)
-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GP 시설 4개소 구축 지원(신규, 18억)

■ 재해·재난 등 예방

- 경기 남부·충남 서북부 수계연결*, 전남 서해안 가뭄 예방 등 가뭄 상습피해지역에 항구적 대책 마련
- * 아산(평택)-금광·마둔저수지 및 아산-삽교-대호호 수계연결
-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신규, 171억원)하여 졸음운전 예방 및 대형 교통사고 방지

[5] 인적자원 개발

■ 저출산 극복 지원

- 통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 신설**
- * '18(안) 3만호(준공기준): 건설임대 1.8만호, 매입임대 0.5

만호, 전세임대 0.7만호

** (예) 전세대출 한도 최대 3천만원 인상, 금리 최대 30bp 우대 등

-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신규 설치(1개소) 및 전환(1개소)을 지원하고,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확충(13 → 17개소)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인상(월 12 → 13만원)하고 지원 연령을 만 13 → 14세 미만으로 상향
- 국공립(450개소)·공공형(150개소) 어린이집 공급을 통해 양질의 공보육 시설 확충

■ 교육의 희망사다리 마련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지원(0.9 → 2.1조)하여 국가책임 확대
- 반값 등록금 수혜대상을 확대(3분위 → 4분위)하고,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해외유학 및 연수기회 확대*
- * (드림장학금) 해외대학 진학지원, 72명 → 108명 (파란사다리) 해외연수기회 제공, 800명 신규 지원

■ 고등교육의 질 제고

- 연구자 주도형(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1.3 → 1.5조)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도전적 연구 지원
- 국립대학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저점 국립대별 강점 분야를 지원,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210 → 1,000억)

II.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 기본 방향

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저성장, 양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
- 공정경제 기반 위에 중점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구현
- 이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며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

② Zero-base에서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제개혁도 병행

- 성과 미흡,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을 새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
-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 강도 높은 질적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19년 예산부터 반영
-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세입기반 확충

③ 예산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시스템 혁신을 병행 추진

- 국민이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제안·심사·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정보 공개 확대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재정수입) '17~'21년 중 연평균 5.5% 증가('16~'20: 5.0%)
- (재정지출) '17~'21년 중 연평균 5.8% 증가('16~'20: 3.5%)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단위: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¹⁾	추경안					
■ 재정수입	414.3	423.1	447.1	471.4	492.0	513.5	5.5
○ 국세수입	242.3	251.1	268.2	287.6	301.0	315.0	6.8
■ 재정지출	400.5	410.1	429.0	453.3	476.7	500.9	5.8
(증가율)	(3.7)	(6.1)	(7.1)	(5.7)	(5.2)	(5.1)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7~'21년 중 $\Delta 2\%$ 내외에서 관리
- (국가채무)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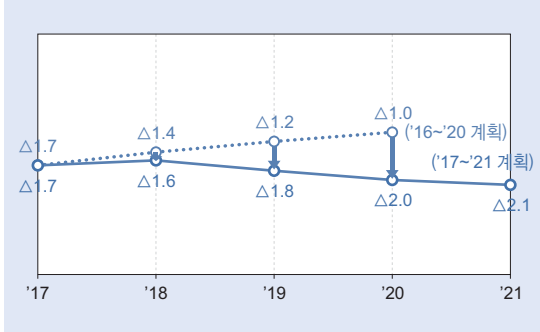
(단위: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관리재정수지	$\Delta 28.3$	$\Delta 28.6$	$\Delta 33.0$	$\Delta 38.4$	$\Delta 44.3$
(GDP 대비, %)	($\Delta 1.7$)	($\Delta 1.6$)	($\Delta 1.8$)	($\Delta 2.0$)	($\Delta 2.1$)
■ 국가채무	669.9 ¹⁾	708.9	749.1	793.0	835.2
(GDP 대비, %)	(39.7) ¹⁾	(39.6)	(39.9)	(40.3)	(40.4)

주: 1) 추경안 기준, 추경 확정기준으로 국가채무 GDP 대비 39.6%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국가채무

(단위: GDP 대비, %)



3 재정혁신 방안

1 지출 구조조정 추진 방향

기본방향

- 저성장 고착화 및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추진
-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부처·관계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 추진

양적 구조조정

- 상시·체계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5년간 62.7조원의 양적 구조조정 추진 계획

질적 구조조정

-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정기적 존치평가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보상체계 혁신: 직접지원 → 인프라·생태계 조성, 수혜 공정성 제고

전달체계 개선: 수혜자 관점의 전달체계 확충·연계 → 누수방지+편의성 제고

정기적 존치평가: 정기적(3~5년) 평가 → 재정지원 여부 재검토

2 세입 기반 확충

-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율 조정

- (과세기반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세원 투명성 강화 지속 추진

* '17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5년간 23.6조원

- (세외수입 확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전문기관을 활용한 채권 징수노력 강화 등 세외수입 확대

3 재정관리체계 개선

-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8년 예산안부터 시범 도입하고, 국민이 직접 제안·심사·결정까지 하는 방식으로 확대·강화
- **(재정정보 공개 확대)**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정보 공개창구 통합, 상세집행내역 신속 공개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노력을 지속 추진

4 국가채무 관련 위험관리

- **(위험관리)** 국가채무 포트폴리오, 만기 분석 등 자금 조달·상환 위험 모니터링 강화
- **(국고채시장 효율화)** 국고채 시장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성 제고 및 재정자금의 안정적 확보

4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 **(사회 분야)**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구현을 위해 투자 확대
 - **(일자리)**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재정투자를 총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 강화
 - 청년의 중소기업 입직·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재기펀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 실업급여 단계적 확대, 실업 중 국민연금 유

지지원 등 실업안정망 강화

- **(복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장애연금 단계적 인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
- **(교육)**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경제 분야)** 그간의 투자 스톱을 감안하여 투자 내 실화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
 - **(R&D)**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기초연구에 대한 R&D를 적극 지원하고 R&D 투자 효율화를 병행 추진
 - **(SOC)** 시설투자는 축소하고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생활밀착형 안전 강화, 성장동력 확충 등에 집중
 - **(농림)** 농업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집중
- **(안보·안전 분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환경위해요인 대응·먹거리 안전 등을 위한 투자 확대
 - **(안보)** 국방 핵심전력 확대 및 병 급여 단계적 인상 추진
 - **(안전)** 선제적 예방 투자를 확대 및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

2017~2021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구분	'17	'18	'19	'20	'21	'17~'21 연평균
총 지출	400.5 (3.7)	429.0 (7.1)	453.3 (5.7)	476.7 (5.2)	500.9 (5.1)	5.8
1. 보건·복지·고용	129.5 (4.9)	146.2 (12.9)	159.4 (9.0)	172.7 (8.3)	188.4 (9.1)	9.8
2. 교육	57.4 (7.9)	64.1 (11.7)	68.1 (6.2)	72.7 (6.8)	75.3 (3.6)	7.0
3. 문화·체육·관광	6.9 (4.0)	6.3 (△8.2)	6.4 (1.6)	6.5 (1.6)	6.6 (1.5)	△1.0
4. R&D	19.5 (1.9)	19.6 (0.9)	19.7 (0.5)	19.8 (0.5)	20.0 (1.0)	0.7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5)	15.9 (△0.7)	15.7 (△1.3)	15.4 (△1.9)	15.1 (△1.9)	△1.5
6. SOC	22.1 (△6.6)	17.7 (△20.0)	17.0 (△4.0)	16.5 (△2.9)	16.2 (△1.8)	△7.5
7. 농림·수산·식품	19.6 (1.2)	19.6 (0.1)	19.5 (△0.5)	19.4 (△0.5)	19.2 (△1.0)	△0.5
8. 환경	6.9 (0.8)	6.8 (△2.0)	6.7 (△1.5)	6.6 (△1.5)	6.5 (△1.5)	△1.6
9. 국방	40.3 (4.0)	43.1 (6.9)	45.3 (5.1)	47.7 (5.3)	50.4 (5.7)	5.8
10. 외교·통일	4.6 (△2.4)	4.8 (5.2)	4.9 (2.1)	5.0 (2.0)	5.0 (0.0)	2.3
11. 공공질서·안전	18.1 (3.7)	18.9 (4.2)	19.0 (0.6)	19.2 (1.1)	19.5 (1.6)	1.9
12. 일반·지방행정	63.3 (6.4)	69.6 (10.0)	74.2 (6.6)	77.9 (5.0)	81.3 (4.4)	6.5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

* 본 자료는 2017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발표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제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 3개(직전·해당·다음)연도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로서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2. 국세감면 일반 현황

- (국세감면액) '16년 국세감면액은 37.4조원으로 '15년 35.9조원 대비 1.5조원 증가하였으며
- '17년, '18년은 각각 38.7조원, 39.8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 국세감면액 추이(조원): ('14) 34.3, ('15) 35.9, ('16) 37.4, ('17전망) 38.7, ('18전망) 39.8

- (국세감면율) '16년 국세감면율*은 13.4%로 '15년 14.1% 대비 0.7%p 하락하였고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14.7%)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 총액/(국세수입 총액+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직전 3년 감면율 평균+0.5%p[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율은 '17년~'18년에도 13%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 국세감면율 추이(%): ('14) 14.3, ('15) 14.1, ('16) 13.4, ('17전망) 13.3, ('18전망) 12.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 14.8, ('15) 14.7, ('16) 14.7, ('17전망) 14.4, ('18전망) 14.1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2016~2018)

(단위: 억원,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A)	374,436	100.0	386,573	100.0	398,053	100.0
• 조특법상 조세지출	195,283	52.2	199,509	51.6	202,541	50.9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174,970	46.7	183,379	47.4	191,946	48.2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4,183	1.1	3,685	1.0	3,566	0.9
○ 국세수입총액(B)	2,425,617		2,510,768		2,681,947	
○ 국세감면율[A/(A+B)]	13.4		13.3		12.9	
○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14.7		14.4		14.1	

3. 조세지출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분류통계 제공

■ (분류통계 제공 목적) 정부는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통계에 추가하여 조세지출 특성에 따른 관리대상 분류 통계를 부록으로 제공합니다.

• 각 조세지출 항목을 조세지출 특성(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가능성) 보유 정도에 따라 3가지* 관리가능 수준으로 분류하고

- * 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특성을 모두 갖춘 항목
- ② 잠재적 관리대상: 일정 수준의 조세지출 특성을 갖춘 항목
- ③ 구조적 지출: 조세지출의 특성이 없어 정비가 곤란한 항목

- 분류에 해당되는 조세감면 항목과 조세감면 규모 및 추이에 대한 통계를 제공합니다.

■ (활용방안) 본 통계는 앞으로 조세지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 및 관련기관과 조세지출 정비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① 연도별 주요 증감 내역

〈'16년 대비 '17년 증감 항목〉

■ 주요 증가 항목

- 법인공장·본사 수도권박 이전 감면: +4,706억원(3,984억원 → 8,690억원)
* 공기업 등 지방이전 기업 증가
-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등: +2,336억(25,978억원 → 28,314억원)
* 대상자(근로자) 수 및 불입액 증가

■ 주요 감소 항목

-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2,561억(8,544억원 → 5,983억원)
* 임시투자세액공제('11년 폐지) 이월공제 감소
- 방위산업 물자에 대한 영세율: △1,708억원(7,297억원 → 5,589억원)
*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감소

〈'17년 대비 '18년 증감 항목〉

■ 주요 증가 항목

- 근로장려금: +2,494억원(10,704억원 → 13,198억원)
* 산정액 상향,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 하향('16~'17년 세법개정)
- 교육비 세액공제: +1,407억원(11,845억원 → 13,252억원)
* 공제대상 범위 확대('16년 세법개정)

■ 주요 감소 항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46억원(11,130억원 → 10,284억원)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축소등
-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652억원(2,125억원 → 1,473억원)
* 지역 경전철 및 지하철 연장 사업 종료

② 주요 조세특례 제도(연도별 조세지출액 상위 20개)

(단위: 억원)

2016년 (실적)		2017년 (전망)		2018년 (전망)		
1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5,978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28,314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	30,094
2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4,094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5,401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6,161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945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93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709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8,64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6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2,164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44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8,862	연금보험료공제	19,722
6	연금보험료공제	17,683	연금보험료공제	18,6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475
7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5,77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6,390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7,028
8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4,897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017	농·축·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139
9	자녀세액공제	13,085	자녀세액공제	13,174	자녀세액공제	13,810
10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2,04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2,155	교육비 세액공제	13,252
11	교육비 세액공제	11,659	교육비 세액공제	11,845	근로장려금	13,198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1,61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79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2,349
13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08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1,130	의료비 세액공제	11,591
14	근로장려금	10,529	의료비 세액공제	10,826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등	11,433
15	연금계좌세액공제	10,168	근로장려금	10,7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0,284
16	의료비 세액공제	9,419	연금계좌세액공제	10,257	연금계좌세액공제	10,175

② 주요 조세특례 제도(연도별 조세지출액 상위 20개) <계속>

(단위: 억원)

	2016년 (실적)		2017년 (전망)		2018년 (전망)	
	내역	액	내역	액	내역	액
17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546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8,690	법인공장·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감면	9,159
18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8,544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190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8,565
19	방위산업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7,297	고용창출(임시)투자 세액공제	5,983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6,369
2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5,70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5,94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5,980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 본 자료는 2017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7년 추경예산(251.1조원)대비 17.1조원(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전망

- '18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는 '17년 추경예산(251.1조원) 대비 17.1조원(6.8%) 증가한 268.2조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는 260.9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16.9조원(6.9%) 증가
 - 특별회계는 7.3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0.2조원(2.8%) 증가
- * '17년 본예산(242.3조원) 대비 총국세 25.9조원(10.7%) 증가

(단위: 조원, %)

	'16년 실적	'17년		'18년 예산안	'17년 추경예산 대비		'17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242.6	242.3	251.1	268.2	17.1	6.8	25.9	10.7
[일반회계]	235.7	235.1	244.0	260.9	16.9	6.9	25.7	10.9
[특별회계]	6.8	7.1	7.1	7.3	0.2	2.8	0.2	2.8

■ 주요 세목별 내역

- 소득세: 73.0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3.4조원(4.9%) 증가
 - 경제성장 등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증가
- 법인세: 63.1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5.8조원(10.2%) 증가
 -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증가
- 부가가치세: 67.3조원으로 '17년 추경예산 대비 4.8조원(7.7%) 증가
 - 민간소비 및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단위: 조원, %)

	'16년 실적	'17년		'18년 예산안	'17년 추경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242.6	242.3	251.1	268.2	17.1	6.8
[일반회계]	235.7	235.1	244.0	260.9	16.9	6.9
○ 소득세	68.5	65.7	69.6	73.0	3.4	4.9
○ 법인세	52.1	54.0	57.3	63.1	5.8	10.2
○ 상속증여세	5.4	5.4	6.0	6.2	0.1	2.1
○ 부가가치세	61.8	61.5	62.6	67.3	4.8	7.7
○ 개별소비세	8.9	9.0	9.0	10.1	1.1	11.9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15.4	15.4	16.4	1.0	6.6
○ 관세	8.0	9.0	9.0	9.4	0.4	4.8
[특별회계]	6.8	7.1	7.1	7.3	0.2	2.8
○ 주세	3.2	3.3	3.3	3.5	0.2	4.8
○ 농어촌특별세	3.6	3.8	3.8	3.8	0.0	0.9

참고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16년 실적	'17년		'18년 예산안	'17년 추경예산 대비		'17년본예산대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2,425,617	2,422,618	2,510,766	2,681,947	171,181	6.8	259,329	10.7
[일반회계]	2,357,160	2,351,450	2,439,598	2,608,818	169,220	6.9	257,368	10.9
◇ 내국세	2,061,926	2,042,866	2,131,014	2,280,459	149,445	7.0	237,593	11.6
○ 소득세	684,970	656,873	695,793	729,810	34,017	4.9	72,937	11.1
- 종합	143,477	144,808	150,155	166,749	16,594	11.1	21,941	15.2
- 양도	136,833	109,819	121,097	103,717	△17,380	△14.4	△6,102	△5.6
- 근로	309,938	308,592	330,887	357,069	26,182	7.9	48,477	15.7
○ 법인세	521,154	539,535	572,678	631,061	58,383	10.2	91,526	17.0
○ 상속증여세	53,501	54,422	60,262	61,519	1,257	2.1	7,097	13.0
○ 부가가치세	618,282	615,353	625,598	673,474	47,876	7.7	58,121	9.4
○ 개별소비세	88,813	90,103	90,103	100,781	10,678	11.9	10,678	11.9
○ 증권거래세	44,681	40,174	40,174	39,985	△189	△0.5	△189	△0.5
○ 인지세	9,058	8,840	8,840	9,361	521	5.9	521	5.9
○ 과년도수입	41,467	37,566	37,566	34,468	△3,098	△8.2	△3,098	△8.2
◇ 교통·에너지·환경세	153,030	153,782	153,782	163,902	10,120	6.6	10,120	6.6
◇ 관세	80,454	89,906	89,906	94,178	4,272	4.8	4,272	4.8
◇ 교육세	48,808	50,747	50,747	52,478	1,731	3.4	1,731	3.4
◇ 종합부동산세	12,939	14,149	14,149	17,801	3,652	25.8	3,652	25.8
[특별회계]	68,457	71,168	71,168	73,129	1,961	2.8	1,961	2.8
◇ 주세	32,087	33,338	33,338	34,941	1,603	4.8	1,603	4.8
◇ 농어촌특별세	36,370	37,830	37,830	38,188	358	0.9	358	0.9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본격 추진

-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Kick-off 회의 개최 -

* 본 자료는 2017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 재정전략·지출혁신과에서 발표한 「사람중심 경제구현을 위한 재정혁신 본격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개요)**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17.9.18일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17.9.18(월) 13:30~15: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참석: 기재부 2차관(주재), 재정관리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혁신국장, 과기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금융위 등 19개 부·위원회 기조실장 등

- 「재정혁신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을 부처에 공유하고, 각 부처는 이에 맞추어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하였음

- **(추진 방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뿐만 아니라,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 새 정부 정책 구현을 뒷받침하는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① 새 정부 초기부터 역량을 집중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② 특히 재정사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세제·금융·규제 등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 ③ 재정당국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관계부처·민간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음

- **(과제 발굴방향)** 정책 측면에서는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과제를 발굴·선정하기로 하였음

〈과제 발굴방향 예시〉

- **(일자리 중심 경제)** 재정지출의 고용창출 효과 강화, 근로여건 개선
- **(소득주도 성장)**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강화 및 복지지출 효과성 제고
- **(혁신성장)** 중소기업 성장동력화, 4차 산업혁명 대응
- **(공정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 정립,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 유형 측면에서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편 측면에서 전 재정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 ① 보상체계 혁신은 직접지원 방식에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생산성과 연계가 부족한 관행적 지원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며,
- ② 전달체계 개선은 재정지원 전달체계를 간소

화하고, 수혜자선택권을 강화하며, 각 부처·기관별 칸막이식 지원을 지양하고 통합·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임

③ 사업구조 개편 차원에서는 나눠주기식 소액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임

- **(향후 계획)** 먼저 각 부처에서 지출구조조정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9월말)할 계획임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10월)하여,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11월)임
 - 특히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방문·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임
- 금년 내 '지출구조조정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12월)하고, '18년 중 '18~'22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19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임

재정포럼

2017년 9월호 통권 제255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7년 9월 15일 발행 / 제21권 제9호(통권 제25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 414-2130~2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 인쇄 / (주)상일 E&P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